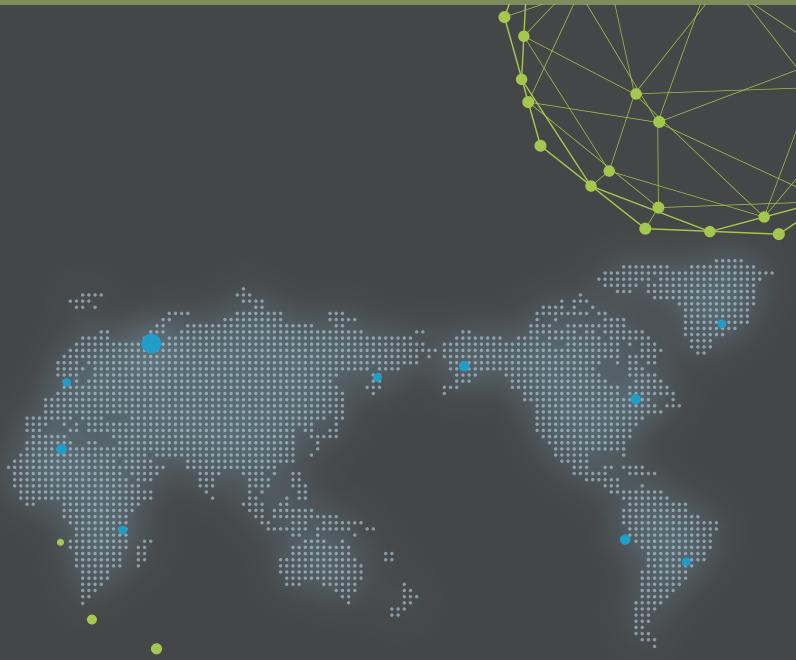


신흥국의 세정연구

필리핀



2019. 12.



신흥국의 세정연구

필리핀

2019. 12.

• 연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 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소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현영
국세청	김일국(국제협력담당관실)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 국의 세정을 이해하는 데에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I. 경제 및 사회 환경.....	3
1. 경제 환경.....	3
2. 사회 환경.....	6
II. 필리핀 진출 규모.....	8
제2장 조세제도	10
I. 역사적 배경.....	10
II. 조세체계.....	14
1. 국세.....	14
2. 지방세.....	14
III. 과세권자.....	16
1.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	16
2. 국세청의 관할 구역(Internal Revenue District).....	18
IV. 조세법의 규범체계.....	20
1. 법령 체계의 성격.....	20
2. 법원성(source of law).....	20
V. 세무행정.....	22
1. 가산세 등의 벌칙.....	22
2. 결정 및 경정.....	24

3. 세무조사..... 24
4. 조세불복제도..... 25

제3장 최신 조세동향..... 27

I. 조세정책 동향..... 27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법인소득세..... 35

I. 서론..... 35
II. 납세의무자..... 36
 1. 법인의 정의..... 36
 2. 비과세 법인..... 36
III. 과세소득..... 38
 1. 각 사업연도소득(Ordinary incomes)..... 38
 2. 자본이득과 손실..... 53
 3. 청산소득..... 57
 4. 유보소득..... 57
IV. 결손금의 처리..... 59
 1. 자본소득 외의 손실(ordinary loss)..... 59
 2. 자본손실(capital loss)의 공제..... 60

목 차

V. 세율과 세액의 계산.....	61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세액의 계산.....	61
2.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63
3. 유보소득에 대한 세율.....	63
VI. 조세혜택.....	64
1. 외국납부세액공제.....	64
2.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	65
3. 관광업에 대한 조세혜택.....	69
4.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른 조세혜택.....	70
VII. 신고와 납부.....	72
1. 신고.....	72
2. 납부.....	78
VIII. 원천징수.....	80
1. 부가급여세.....	80
2. 원천징수.....	81
제2장 개인소득세.....	92
I. 서론.....	92
II. 납세의무자.....	93
1. 거주자 판정.....	93
2. 납세자 단위.....	95
III. 과세대상 소득.....	96
1. 사업소득.....	96

2. 배당소득	97
3. 이자소득.....	98
4. 사용료소득·임대소득(자산의 이용 관련).....	99
5. 자본소득.....	100
6. 근로소득(compensation income).....	101
7. 기타소득.....	102
I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04
1. 필요경비.....	104
2. 소득공제.....	105
V.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106
1.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106
2. 세액공제.....	109
3. 최저한세	109
VI.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110
1. 신고·납부.....	110
2. 원천징수제도.....	111
제3장 국제조세.....	118
I. 국제조세의 체계.....	118
II.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119
1. 거주자 외국법인.....	119
2. 비거주자 외국법인.....	124
3. 조세조약의 적용.....	128

목 차

III.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130
1. 거주자 외국인	130
2. 비거주자 외국인	131
제4장 부가가치세	137
I. 개관	137
II. 납세의무자	138
III. 과세대상 거래	138
1. 재화의 공급	138
2. 용역의 공급	139
3. 재화의 수입	139
4. 공급시기	140
IV. 과세표준 및 세율	142
1. 과세표준	142
2. 세율	142
V. 영세율 및 면세	143
1. 영세율	143
2. 면세	145
VI. 산출세액	147
1.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계산	147
2. 공제하는 매입세액	147
VII. 신고·납부	149
1. 신고·납부 절차	149
2. 원천징수제도	149

VIII. 환급	150
IX.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50
1. 사업자등록	150
2. 세금계산서	152
제5장 기타 조세	157
I. 상속·증여세	157
1. 개괄	157
2. 상속세	157
3. 증여세	161
II. 소비세	164
1. 세금 납부와 환급	164
2. 품목별 세율	165
III. 비율세	170
1. 서론	170
2. 과세대상 및 세율	170
3. 신고 및 납부	175
IV. 인지세	176
1. 서론	176
2. 과세문서 및 세액	176
3. 비과세 문서	182
4. 납부	183

목 차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제1장 외국인 투자정책	187
I. 외국인 투자절차.....	187
1. 외국인투자법.....	187
2. 투자진출형태 및 절차.....	189
II. 외국인투자특례제도.....	192
1. 개관.....	192
2. 투자위원회(BOI) 제공 투자특례.....	193
3. 경제자유구역청(PEZA) 제공 투자특례.....	198
4. 수빅자유구역청(SBMA) 제공 투자특례.....	203
5. 클락개발공사(CDC) 제공 투자특례.....	204
III. 기타 외국 기업 특례.....	205
1. 기업의 인센티브.....	205
2. 그 외의 인센티브.....	207
제2장 진출확대 방안	209
I. 수출 및 투자진출 유의사항.....	209
1. 시장 및 소비자 특성.....	209
2. 기업환경.....	211
3. 노무.....	213
II. 법인 설립 및 개인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214
1. 법인 설립 절차.....	214
2. 지사 설립 진행 절차.....	216

3. 연락사무소 설립 진행 절차.....	219
4.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222
III. 유관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224
참고문헌.....	225

목 차

표 목 차

〈표 1-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6
〈표 1-2〉 필리핀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8
〈표 1-3〉 역대 대통령의 조세제도 개혁 내용 요약.....	12
〈표 1-4〉 필리핀 종합 세제개혁(CTRP) 내용 요약.....	13
〈표 1-5〉 TRAIN 법률 주요 개정사항.....	27
〈표 1-6〉 필리핀 세법의 개정연혁.....	28
〈표 2-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총이익.....	41
〈표 2-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총비용.....	42
〈표 2-3〉 자본자산 종류별 과세 방법.....	55
〈표 2-4〉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62
〈표 2-5〉 납부할 세액의 계산.....	72
〈표 2-6〉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방법.....	74
〈표 2-7〉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83
〈표 2-8〉 일반세율.....	107
〈표 2-9〉 자본소득세율.....	108
〈표 2-10〉 비사업자 비거주자의 세율.....	108
〈표 2-1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2018-2022).....	112
〈표 2-12〉 주요 지급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16
〈표 2-13〉 원천징수 세목별 신고서류.....	127
〈표 2-14〉 조세조약 체결 국가 현황.....	128
〈표 2-15〉 필리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연혁.....	137
〈표 2-16〉 재상속 또는 기부 후 상속 재산 공제 비율.....	159
〈표 2-17〉 증류 알코올의 소비세율.....	165
〈표 2-18〉 와인의 소비세율.....	165

〈표 2-19〉 발효주의 소비세율.....	166
〈표 2-20〉 담배제품의 소비세율.....	166
〈표 2-21〉 차량 등의 소비세율.....	167
〈표 2-22〉 광물자원 소비세율	168
〈표 2-23〉 당 음료 및 미용 시술 소비세율	169
〈표 2-24〉 운송수단별 비율세 과세대상 분기별 최소 수입금액.....	170
〈표 2-25〉 거래지분비율별 적용세율	174
〈표 2-26〉 생명보험 금액에 따른 세액	178
〈표 3-1〉 기관별 주요 투자혜택 비교.....	193
〈표 3-2〉 주요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	211
〈표 3-3〉 PEZA 등록비용.....	212
〈표 3-4〉 상업용 부지 임차료(메트로 마닐라 기준).....	212
〈표 3-5〉 상업용 부지 매매 비용(메트로 마닐라 기준).....	213
〈표 3-6〉 유관 기관 연락처 및 주소	224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1-1] 2019년 11월 필리핀 물자(commodity) 인플레이션율.....	5
[그림 2-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114

별첨 사례

[별첨 1] 법인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85
[별첨 2] 법인 부적격 유보소득세에 대한 세무신고서.....	89
[별첨 3] 연간 분리과세되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무신고서.....	91
[별첨 4] BIR Form 1601EQ 분기별 예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133
[별첨 5] BIR Form 1601FQ 분기별 완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135
[별첨 6] BIR Form 1905 등록 및 변경 신청서.....	154

• 신흥국의 세정연구 필리핀 •

제1편 총론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제2장 조세제도

제3장 최신 조세동향

제1장 | 경제 · 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I 경제 및 사회 환경

1. 경제 환경

태평양 남서쪽의 7,000여개 이상의 섬과 화산 산맥으로 이루어진 지리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필리핀은 금, 은, 크롬, 니켈, 구리, 철 그리고 석탄과 석회석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늘어나는 해외 노동자 송금 규모와 두테르테 현 정부에서 제시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필리핀은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관광 산업을 비롯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또한 필리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로 이들은 필리핀의 노동력과 농업 생산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으며, 사탕수수과 코코넛은 바이오 연료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떠오르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2018년도에 비해 저조했던 2019년도 경제성장률에 이어 2020년에 6.1% 그리고 2021년에 6.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¹⁾ 필리핀의 2019년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6.5%의 GDP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해 5.6%의 낮은 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²⁾ 2019년 상반기의 소프트 패치(soft patch)³⁾ 이후 필리핀의 GDP성장률은 2020년도 동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 계획을 늘리고 최근 재정 정책을 완화하여 필리핀 경제의 움직임을 성장세로 되돌리고 물가 상승을 목표하고 있다.⁴⁾

1) Philippines Economic Update October 2019, THE WORLD BANK, 검색일자: 2019. 12. 04.

2)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Gross Revenue Index of Industries grows by 6.5 percent in Q2 2019," 검색일자: 2019. 12. 04.

3) 경기 회복 국면에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침체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hilippines, 검색일자: 2019. 12. 04.

2019년 주요 산업 분야 성장률의 경우, 농업과 수산업 0.6%, 산업 3.7%, 서비스 분야 7.1%를 기록하였다. 전체 고용률은 1.9%이며, 고용률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은 제조업 5.4%, 부동산 5.0%, 교통 4.4%, 광업 4.1%, 무역 2.2%, 전기·가스·수자원 1.3% 그리고 금융 0.7%를 달성하였다.

소득률은 전년도의 9.6%에 비해 6.5%의 감소율을 보였다. 필리핀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리핀 개발 계획(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PDP)을 통하여 2017~2022년도의 산업과 서비스(I&S) 분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상응하는 PDP(필리핀 개발 계획) 전략으로 지역과 해외 투자를 증가시키고, 산업과 서비스(I&S)의 경쟁력, 혁신성 그리고 회복력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 소비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하며 중소기업(MSME) 간 연결과 협력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 해외 투자 기회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투자를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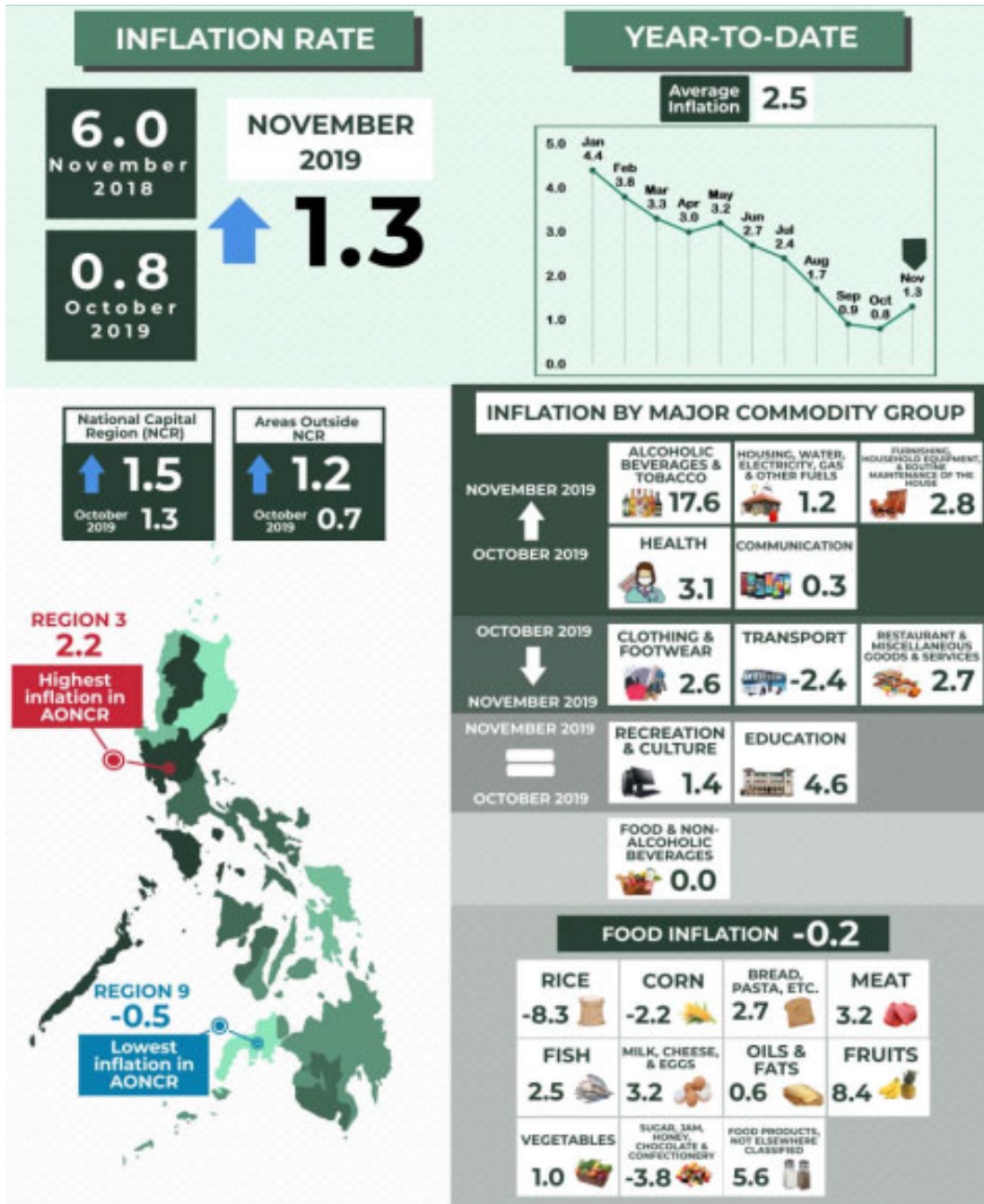
해외 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의 본국으로의 달러 송금은 필리핀 가계의 주된 소득원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비율은 10% 전후로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필리핀의 인플레이션⁶⁾ 목표수준은 2~4%였지만 2018년의 인플레이션은 2017년 평균 2.9%에서 5.2%로 증가하여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유가 상승과 쌀 가격 인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별소비세 개정에 의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석유는 배럴당 2017년 6월 기준 46달러에서 2018년 10월 81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는 특별소비세 개정에 의해 주류, 담배와 석유제품의 세금을 2018년 1월에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0.4%에서 0.7%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basket의 쌀 소비 점유율은 9.6%로 쌀 수출을 제한한 필리핀 국내 식품 공급으로 인하여 2018년 10월 쌀가격은 10.7%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5)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Philippines, neda.gov.ph

6) Decomposing the Inflation Dynamics in the Philippines, IMF Working Paper, 2019

[그림 1-1] 2019년 11월 필리핀 물자(commodity) 인플레이션율



자료: 필리핀 통계청⁷⁾

7) Philippines Inflation Rate, Philippines Statistic Authority, 검색일자: 2019. 12. 19.

75개의 프로젝트 중 2018년 11월 30일까지 44개 진행 중인 철도, 고속도로, 공항, 교량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168억달러 예산 중 680만달러를 투입한 Metro Manila Subway 건설이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동안 2022년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한 정부투자 사업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민간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비중이 59.5%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고, 공공투자는 21%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건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이 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 폐소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기대만큼 소비와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중국, 미국 각 국가 간 관세 인상에 의한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연방주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방해 요소가 전망되기도 한다.⁸⁾

필리핀 수출 개발계획(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PEDP)에 의하면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수출규모를 2017년 기준 687억달러에서 1,200억달러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표 1-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S&P 500	BBB+(2019.04)	BBB(2018.04)
Moody's	Baa2(2017.12)	Baa2(2014.12)
Fitch	BBB(2017.12)	BBB-(2017.03)

자료: TRADING ECONOMICS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은 국가의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여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등급으로 활용된다. 필리핀은 3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투자 적격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률과 낮은 외채 및 정부 채무 비율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국가로 여겨진다.

2. 사회 환경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에서 치안과 경제가 가장 취약한 민다나오(Minidanao) 섬의 수도인 다바오(Davao)의 시장으로서 22년간 지낸 경험으로 후보 당시 범죄 및 마약과의

8) 2019 국별 진출전략-필리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전쟁, 연방제 도입,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로 2016년 6월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두테르테 정부의 출현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세제개혁 법안에 의해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지만 각종 조세 인센티브 또한 줄어들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목적의 조세개혁 법안에 의해 감소되는 인센티브 영향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필리핀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 약 1억 873만 명 중 약 2,120만 명으로 노동 인구의 3분의 1은 15~24세로 구성되어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와 루손(Luzon) 섬 남부와 일부 거점 도시 이외의 주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부(Visayas 섬), 다바오(Mindanao 섬), 수빅(수빅 특별경제자유구역), 클락(Luzon섬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건설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0%에 달하지만 전자·반도체 분야와 같은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 외에 농업, 의료, 건설, 소매 유통이 발달되어 GDP의 70%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소비위주의 경제를 보여준다. 반도체·전자 분야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금액이 필리핀 전체 수출의 60%에 달하고, 특히나 화교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통·전자 분야 중심의 주요 산업으로 독과점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I 필리핀 진출 규모

경제성장률에 의한 소비지출 증가로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25% 증가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쇼핑몰, 외식, 서비스 등의 새로운 브랜드 및 제품의 꾸준한 수요가 프랜차이즈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대(對)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2018년 상반기 451억페소 대비 505억페소 상승한 956억페소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 대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전기, 가스, 스팀, 에어컨 공급 부문에 집중되었다. 제조업으로 411억 4,080만페소의 자본이 유입됐으며, 전기, 가스, 스팀, 에어컨 공급 분야에 366억 7,100만페소의 자본이 유입되어 2018년 한 해 동안의 투자 금액인 300억 4,820만페소를 2019년 상반기에 초과하였다.

한국의 직접투자 동향은 196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전체 누계 기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직접투자는 신규 법인 1,710개사가 신고내역 기준으로 4,725건의 투자를 했으며 금액은 56억 5,560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50여 개의 신규 법인이 투자하였으며 신고금액 또한 2016년을 제외하고 2억달러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9년 1분기 기준 투자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8%)으로 꾸준한 투자로 투자 강세를 보이는 건설업(34.5%), 제조업(12.9%), 부동산(10.1%) 분야에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18년도 899만달러 대비 큰 상승폭을 보였다.

〈표 1-2〉 필리핀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회사명	모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대덕 필리핀	대덕GDS(주)	1996	생산법인	제조업	전자기기
삼성전자	삼성전자	1998	판매법인	도매 및 소매업	전자기기
대상리코	대상주식회사	2013	생산법인	제조업	식품
대림필리핀	대림	1995	생산법인	건설·공사업	건설
포스코대우	포스코	1978	지점	무역업	철강제품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1983	지점	금융업	금융
PSMC	PSMC	1996	생산법인	제조업	기계전자
한전일리한(주)	한국전력공사	1995	생산법인	서비스업	발전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9)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는 필리핀투자청(BOI)과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을 통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였다. 필리핀 투자 국가는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가 상위 3개국이며 한국은 7위를 기록했다. 필리핀 재무부는 2029년까지 현재 30%인 법인세를 20%까지 완화하겠다는 초안을 발표하였고,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외국인직접 투자를 증가시키려 추진 중이다.

제2장 | 조세제도

I 역사적 배경¹⁰⁾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이전 정부들의 정책 자금 마련책과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60년대부터 경제·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세금 우호 정책들을 실시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단순하도록 조세제도를 수차례 개정했음에도 높은 세율과 국민들의 낮은 납세의식 수준 및 이를 처리하는 행정 정책이 미약함에 따라 목표한 조세수입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현행 필리핀 조세제도는 마르코스 정권이 종료된 이래 시행된 1986년 세계개혁 정책과 1997년 제정된 종합 세계개혁 정책의 영향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1985년 당시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부 후반부에 걸친 경제·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심한 경기위축과 지속적인 재정적자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중은 1979년 12.8%에 비해 10.71%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당시 국가 지출액에 비교하여 필요한 수치인 15%보다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당시 필리핀은 간접세와 해외 거래세(international trade taxes)에 의존하여 전체 세수의 70%를 충당하였다.

1986년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대통령이 재임한 후 아키노 정부는 당시 심하게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공평하며 비효율적이고 낮은 소득세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1986 세계개혁(tax reform program, 1986 TRP)은 ‘눈물 없는 세계개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 가혹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기존의 세제 중 문제가 있는 사업장려제도를 개정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¹¹⁾ 한편, 이 세계개혁의 승인 및 시행은 독특한 정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 아키노 대통령은 18개월 동안 혁명정부를 이끌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행사하였고, 의회가 없어 시

10) Comprehensive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Principles, history and recommendatio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chool of Economics, UPSE Discussion Paper, No. 2016-10, 연도

11) Philippine fiscal behavior in recent history, THE PHILIPPINE REVIEW OF ECONOMICS, 2010.

간이 소요되는 행정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1986년 6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부가가치세(10%) 도입을 포함한 29가지 세금 조치를 모두 행정명령 형태로 승인하였다.

1992년 피델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는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다. 대통령 승계가 헌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라모스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우선과제로 두었다. 라모스 행정부는 수출주도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1990년대 초중반에 국가의 투자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세율은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고, 탈세 및 조세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무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해외 거래세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국가 정책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가 필요하였다. 라모스 행정부의 1997 종합 세제개혁 정책(1997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1997 CTRP)은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행되었다. 이로써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고, 간접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세 구조의 단순화, 수입의 누락과 과다한 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용이하게 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1998년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가 대통령직을 맡았을 당시에는 필리핀 정부가 많은 국가부채를 지고 있었다.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가의 우발부채는 확정부채가 되었고 환율은 하락하고 경기는 위축되었다. 2001년 대중 시위로 인해 에스트라다는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었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가 권력을 잡게되었다.

아로요 행정부는 세금징수 조정 없이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많은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다. 그는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열악한 국가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수입원이 필요했다. 그 후 2005년 11월 부가가치세 확대 정책(expanded VAT, E-VAT)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항목에 에너지 상품(석탄과 석유제품, 전기 생산·전파·공급)과 전문 서비스를 추가하였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였다. 또한 법인세율을 기존 32%에서 2009년 35%까지 인상하였으며 이후에는 30%로 인하하였다.

아로요 행정부가 끝나고 2010년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Jr.)가 재임할 당시까지 필리핀 세수는 세계적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세수 확보는 미진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인프라 마련과 사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세수입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의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추가 수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2012년 12월 아키노 대통령은 담배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개정하는 법안

(Republic Act No. 10351), 일명 죄악세(the Sin Tax Law, STL)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아키노 정부의 주된 목표는 흡연과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최종 개정안은 담배와 알코올, 특히 증류 알코올(spirits)과 맥주(beer)의 세금을 인상시켰다.¹²⁾ 죄악세 세수 총액은 2015년 GDP의 1.1%에 이르렀으며, 이는 필리핀 신용등급 향상에 기여하였다.

〈표 1-3〉 역대 대통령의 조세제도 개혁 내용 요약

역대 대통령	년도	연혁
아키노	1986	1986 Tax Reform Program(TRP)
	1988	Executive Order 273을 통해 VAT 도입
라모스	1994	Administrative Order 112 CTRP(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1997	Tax Reform Act of 1997(1997 CTRP)
아로요	2005	VAT 부가가치세 과표 확대 및 세율 10%에서 12%로 인상, 법인세율 35%으로 인상
아키노	2012	담배,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죄악세 개정

자료: Comprehensive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Principles, history and recommendations, UPSE Discussion Paper, No. 2016-10, 연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현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President Rodrigo R. Duterte)는 필리핀 내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종합 세제개혁(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CTRP)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필리핀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정 및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필리핀 국민의 빈곤 퇴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의 세부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제1차 개혁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 1, TRAIN 1)은 2017년 12월 19일에 입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소득세 감면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제2차 개혁안(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ationalization Act, CITIRA)은 법인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전략적 성장산업에 대해 지원정책을 펼치는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제3차 개혁안(Comprehensive Tax Reform

12) "Sin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Transforming Public Finance, Health, and Governance for More Inclusive Development", WORLD BANK GROUP 2016, p17

13) 필리핀 재무부, <https://taxreform.dof.gov.ph/about-tax-reform/>, 검색일자 : 2019. 11. 29.

Program, CTRP)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부동산 평가 방법을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개혁안(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CTRP)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투자소득에 대한 세법을 단순화하며, 세율을 최대 80%에서 36%까지 조정하는 법안 등을 담고 있다. 제2, 3, 4차 개혁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의회에 계류 중이다.

〈표 1-4〉 필리핀 종합 세제개혁(CTRP) 내용 요약

CTRP Package 항목	내용
Package 1: 소득세(TRAIN)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등 불평등한 세제 개혁
Package 1B: 세금사면(Tax Amnesty)	부동산 세금감면 및 세금 연체에 대한 사면 기회 제공
Package 2: 법인세(CITIRA)	법인세 완화(20%) 및 사회 공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Package 2+: 죄악세(Sin Taxes)	주류, 담배세와 같은 특별소비세 인상
Package 2+: 광물세(Mining Taxes)	광물자원 채석 과정에 부과되는 여러 세목에 대한 합의
Package 3: 부동산 평가 (Real Property Valuation)	부동산 자산 평가 방법 조정 및 과세 표준 확대
Package 4: 투자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이자 수익, 배당금, 자본 소득의 세율 단일화 및 인지세 조정
자동차세(Motor Vehicle User's Charge)	자동차세를 통한 도로 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관리

자료: DOF of Philippines(필리핀 재무부)

II 조세체계

1. 국세

국세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고 국세청에서 관할하며 아래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목별 사항은 이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①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②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④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 ⑤ 특별소비세(Excises Tax)
- ⑥ 비율세(Percentage Tax)
- ⑦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 ⑧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2. 지방세¹⁴⁾

필리핀의 주(Province), 시(City), 군(Municipalities), 바랑가이 지방단체(Barangays)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 및 징수 권한을 갖는다.

- ①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 ② 사업세와 면허세(Business Tax and Barangay Clearance)
- ③ 주민세(Community Tax)
- ④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 수도 요금, 국도 및 부두 이용 요금, 선박 또는 통신 요금 등

14) 필리핀 지방정부, <https://dilg.gov.ph/>, Local Government Code-Book2 Local Taxation and Fiscal Matters,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검색일자: 2019. 11. 29.

필리핀 주 정부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다.

- ① 부동산 소유권 양도세
- ② 인세 및 출판세
- ③ 프랜차이즈세
- ④ 모래, 자갈 등에 대한 자원세
- ⑤ 전문직군의 소득세
- ⑥ 오락세
- ⑦ 제조업, 생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특정 제품의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고정 세금

필리핀 군 정부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다.

- ① 사업세(Business Tax)
- ② 사업상의 수수료 및 사용료
- ③ 측정에 의한 직인·허가 수수료
- ④ 양식장에 대한 렌탈료 등 수수료

더불어 주 또는 군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및 수수료를 시에서 징수할 수 있다.

바랑가이 지방단체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다.

- ① 사업장 매출에 대한 세금
- ② 바랑가이 내 지역 서비스 요금
- ③ 사업면허세(Barangay Clearance)
- ④ 기타 수수료 등

Ⅲ 과세권자¹⁵⁾

1.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¹⁶⁾

국세청은 재무부의 관리·감독하에서 내국세 및 공과금, 위약금의 처분 및 징수, 국세심판소¹⁷⁾(the Court of Tax Appeals)나 법원에서 결정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벌금 부과 권한을 지닌다.

가. 국세청의 최상위 감독자¹⁸⁾

국세청의 최상위 감독자는 국세청장(Commissioner)과 4명의 부청장(Deputy Commission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세청장의 권한 및 의무

1) 세법과 관련한 사건 판결 및 세법 해석에 관한 권한¹⁹⁾

국세청장은 법령 적용 및 세법 해석과 관련한 독점적이고 일차적인 권한을 지니며 이는 재무부 장관에 의해 검토된다. 국세청장의 권한으로는 쟁점 처분의 결정, 내국세의 환급, 공과금 및 기타 벌금 부과, 본 법령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항 및 국세청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되며, 국세심판소는 이에 관련한 독점적인 재판권을 지니게 된다.

15) TITLE 1.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NIRC of the Philippines

16)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1.

17) 「필리핀 개황」, 외교부 동남아 1과, 2019. 11., II. 정치-2. 사법부에 나온 번역에 따르며, 필리핀 내 국세심판소는 특별법원에 해당함, http://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00 pp.28~29 , 검색일자: 2020. 1. 29.

18) NIRC of the Philippines, Section 3.

19)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4.

2) 납세자 정보의 수집, 납세자 소환, 검사 및 증언에 관한 권한²⁰⁾

신고서상 신고금액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미납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① 관련 장부, 문서, 기록 등 데이터와 자료들에 대한 검사 권한
- ② 세무조사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필리핀중앙은행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매출액, 비용, 성명, 주소, 재무정보 등)를 획득할 권한
- ③ 납세의무자 혹은 신고의무자, 고용인 또는 회계장부담당자 등을 소환할 권한
- ④ 관련자의 증언을 얻을 권한
- ⑤ 납세의무자 및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3) 세무행정을 평가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²¹⁾

- ① 신고 및 납세금액 조사
- ②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재고명세서 등을 감독할 권한
- ③ 과세기간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 ④ 부동산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 ⑥ 은행 예금 계좌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관련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 ⑦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 권한
- ⑧ 추가적인 절차상-서류상의 요건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4) 국세청장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²²⁾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하급 지위의 사무관에게 감독자 혹은 더 높은 지위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법규와 규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단, 국세청장의 권리 중 아래의 사항은 위임되지 않는다.

20)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5.

21)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6.

22)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7.

- ① 재무부 장관에 의한 법규와 규정의 공표를 추천하는 권리
- ②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기존 국세청의 판결을 철회 및 변형할 권리
- ③ 납세액을 타협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권리(단,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50만페소 이하의 부족세액은 타협이 가능함)
- ④ 소비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에 국세청 사무관을 선임할 권리

5) 국세청장의 의무²³⁾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 ① 적법한 국세청 허가증명서를 만들고 배포할 의무(국세청 직인 등의 도장 및 마크를 포함)
- ② 적법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의무

2. 국세청의 관할 구역(Internal Revenue District)²⁴⁾

재무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국세청장은 행정적인 목적상 소득세 납세 구역을 나누어야 한다. 각각의 구역은 지방 국세청 사무관(Revenue District Officer)이 감독하는 관할 구역이 된다.

1) 지방 국세청 관리자(Revenue Regional Director)²⁵⁾

국세청장이 공표한 법규와 규정에 따라 지방 국세청 관리자는 담당 관할 구역에 대하여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법, 정책, 계획, 프로그램, 법규 및 규정의 실행
- ②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행정 집행 및 소득세, 공과금, 부과금 등의 평가와 징수
- ③ 납세자 조사를 위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ty) 발행
- ④ 주민에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⑤ 지역 사무소, 다른 기관 등과의 통합

23)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8.

24)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9.

25)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10.

- ⑥ 지방 정부 단위의 통합
- ⑦ 지방 사무관과 고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수행
- ⑧ 법 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수행

2) 지방 국세청 사무관의 의무²⁶⁾

모든 지방 국세청 사무관 및 고용자들은 법에 책임을 지고, 국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충실히 수행하고 따르며 납세사기 범죄를 예방, 체납자를 탐색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지방 국세청 관리자는 국세청장에게 사무관들의 의무태만, 불이행,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세청 사무관의 권한(Authority of a Revenue Officer)²⁷⁾

법규와 규정에 따라 지방 국세청 사무관이 구역별로 지명되며, 지방 국세청 관리자의 위임에 따라 지방 국세청 사무관은 정확한 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를 조사하고, 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6)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11.

27)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1. Section 13.

IV 조세법의 규범체계

1. 법령 체계의 성격

필리핀의 법률은 성문법(civil law, 로마법), 불문법(common law, 앵글로-아메리카)과 무슬림 법체계가 혼합되어 복합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⁸⁾ 이는 14세기 무슬림 말레이시아인들의 이주,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로 인한 결과이다. 특히 성문법과 불문법은 법의 분야별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관계법, 재산, 상속, 계약 등의 민사법과 형사법에서는 성문법의 체계가 적용되며, 헌법, 절차법, 회사법, 보험, 노동관계 및 금융·통화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불문법이 적용되고 있다. 조세법은 후자인 불문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속한다.²⁹⁾

2. 법원성(source of law)³⁰⁾

필리핀 법원을 구성하는 가장 큰 2가지 요소는 성문법(statutes 또는 statutory law)과 법 해석(jurisprudence 또는 case law)이다. 성문법은 헌법과 제정된 법령을 의미하는데 필리핀에서는 헌법, 조약, 제정 법률, 지방자치 헌장(municipal charters) 및 법령, 법원규칙, 행정 규칙과 명령, 하위 법령 및 대통령령 등으로 구성된다. 법해석은 판사 또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부터의 선고 또는 문서화된 의견을 의미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또는 상·하원과 같은 행정 또는 입법부의 심판에 따른 결정례도 포함된다. 필리핀 민법 제8조에서는 “법 또는 헌법에 적용되거나 해석하는 사법적 결정은 필리핀의 법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customary law)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헌법 제6조 제2항에서의 “국가는 문화, 전통 및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유 문화적 공동체의 권리를 인식, 존중, 보호해야 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³¹⁾ 한편, 샤리아와 같은 무슬림 법령의 법원성 인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28) Houser Global Law School Program, <https://www.nyulawglobal.org/globalex/Philippines1.html>, 검색일자: 2019. 12. 13.

29)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unimelb.libguides.com/c.php?g=402982&p=5443355>, 검색일자: 2019. 12. 13.

30) Houser Global Law School Program, <https://www.nyulawglobal.org/globalex/Philippines1.html>, 검색일자: 2019. 12. 13.

31)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unimelb.libguides.com/c.php?g=402982&p=5443355>, 검색일자: 2019. 12. 13.

조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을 기초로 과세관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조세법 집행을 위한 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조세법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의 선고는 법원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³²⁾

32)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KOOBH8#section\(1\)](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KOOBH8#section(1)), 검색일자: 2019. 12. 14.

V 세무행정

1. 가산세 등의 벌칙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일부로서 본세와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된다.³³⁾ NIRC에서는 행정벌적 성격으로 가산세(civil penalties), 가산금, 기타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와 형사벌 및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납세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본다.

1) 가산세 등 행정벌칙 규정

신고나 납부 의무 해태 시에는 납부세액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①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적절한 관할 과세관청 이외의 곳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고지된 기한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④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신고가 요구되는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 납부세액 전부가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신고 의무 불이행이 고의적 해태(willful neglect) 또는 거짓(false)이나 사기(fraudulent)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50%로 높아진다.³⁴⁾ 소득 신고 이외에 신고대상 정보, 명세서, 기록 등의 기타 정보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고의적 해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각 위반당 1천페소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의 한도는 과세연도 기준 2만 5천페소를 초과할 수 없다.³⁵⁾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자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에 더하여 관련 소득지급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소득 수취자의 소득신고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시기에 원천징수금액과 부가되는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³⁶⁾

가산금은 신고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는 납부세액 및 과세관청의 고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과태료 또는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가 허용되었으나 분할 납부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산금의 이자율은

33) NIRC Section 247. General Provision.

34) NIRC Section 248. Civil Penalties.

35) NIRC Section 250. Civil Penalties.

36) NIRC Section 251. Civil Penalties.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의해 기타 약정조건 없이 설정된 이자율의 2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최근인 2013년 고시에서 이를 6%로 설정하여 12%의 법적 가산금이 부과된다.³⁷⁾

2) 벌금 등의 형사벌칙 규정

NIRC에서는 행정벌칙 규정 이외에 형사벌칙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납세자는 납부세액 이외에 형사벌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체포 등의 이후에 세액의 납부는 유효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우 최대의 형이 부과되면서 파면되고 영구적으로 공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투표의 권리 박탈과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회계사인 경우 자동적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피고인 납세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벌이 집행된 후 다른 절차 없이 즉시 국외로 추방된다. 단체, 파트너십, 법인의 경우 파트너, 대표자, 관리자, 재무관리자, 담당자 및 종업원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형사벌적 벌금은 형사벌의 벌금과 세금 및 부가되는 금액의 합계 중 큰 금액보다 낮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⁸⁾

주요 형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의적인 조세회피 또는 포탈을 시도하는 경우 최소 50만페소에서 최대 1천만페소 및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³⁹⁾ 고의로 신고, 정확한 신고, 장부기록의 유지, 적정한 정보제공, 원청징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페소의 벌금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고서나 명세서를 실제로 신고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실제 신고 후 철회하는 경우 최소 1만페소에서 최대 2만페소의 벌금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⁴⁰⁾ 법인 등의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리자, 파트너 또는 종업원은 5만페소 이상 10만페소의 벌금에 처해진다.⁴¹⁾ 이 외에 법인 재무관리자 또는 회계사의 기록 유지에 대한 벌칙규정⁴²⁾, 연간등록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업의 납부불이행 벌칙규정⁴³⁾, 법인 또는 공동 파트너십의 국외로의 이자·배당 지급 시 면허 또는 규정된 절차 등을 인지하고도(knowingly)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규정⁴⁴⁾ 등이 존재한다.

37) NIRC Section 249. Civil Penalties.

38) NIRC Section 253. General Provisions.

39) NIRC Section 254. Attempt to Evade or Defeat Tax.

40) NIRC Section 255. Failure to File Return, Supply Correct and Accurate Information, Pay Tax Withhold and Remit Tax and Refund Excess Taxes Withheld on Compensation.

41) NIRC Section 254. Pe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42) NIRC Section 257. Penal Liability for Making False Entries, Records or Reports, or Using Falsified or Fake Accountable Forms.

43) NIRC Section 258. Unlawful Pursuit of Business.

2. 결정 및 경정

필리핀의 소득세, 법인세 등은 신고주의(self-assessment system)이므로 신고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자는 또한 세무조사 결과가 납세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신고 이후 3년 이내에 신고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⁴⁵⁾

그러나 과세관청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된다. 제척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며 추가과세액(deficiency tax)은 5년이다.⁴⁶⁾ 그러나 제척기한에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사기 또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10년으로 제척기한이 연장되며, 이후 5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된다. 두 번째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서면약정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이다.

3. 세무조사⁴⁷⁾

필리핀 국세청은 세법에 따른 신고일의 마지막 날 혹은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3년의 제척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적법한 세무조사 없이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짓, 고의 및 누락을 발견한 날로부터 10년간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적법하게 납세자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임장(Letter of Authority)을 송부하고 나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공식 회의(Informal Conference)를 통하여 납세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비공식 회의 공지를 수취한 후 30일을 넘을 수 없다. 납세자의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사국은 7일 이내에 위반내용을 기입한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4) NIRC Section 259. Illegal Collection of Foreign Payments.

45)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46)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47) KPMG, Philippines Tax Profile-Tax Audit Activity,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18/10/philippines-2018.pdf>, 검색일자: 2019. 12. 18.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납세금액을 계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⁴⁸⁾

- ① 책, 서류, 기록물 등 관련 자료의 조사
- ② 정기적인 제3자 정보의 수집
- ③ 신고대상자, 납세의무자, 담당 직원, 회계장부관리자 등의 소환
- ④ 증언을 얻기 위한 조사
- ⑤ 납세대상 소득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사

필리핀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우선순위를 정한다. 세금탈루의 위험이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된 납세자를 우선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필리핀 국세청은 RELIEF⁴⁹⁾(Reconciliation of Listings for Enforcement)라 불리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무 이슈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하지만 최근의 세무조사는 아래 항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① 전문직업군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 ② 해외 거래
- ③ 신고납부절차 수행
- ④ 원천징수제도

4. 조세불복제도⁵⁰⁾

국세청장 또는 이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자는 세무조사에서 발견한 항목에 대하여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에는 사전조사통지(Preliminary Assessment Notice, PAN), 조사결정통지(Final Assessment Notice, FAN)가 있다.

48)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 1.11.8. Tax audit/examination, 검색일자: 2020.1.10.

49)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제출한 제3자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

50)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NIRC 1997 As Amended by RA 10963-CHAPTER III. PROTESTING AN ASSESSMENT, REFUND, ETC. Sec 228. Protesting of Assessment, 2018.

FAN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해당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다. 재조사(Reinvestigation)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FAN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부된 경우 납세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에 심판청구(Appeal)를 할 수 있으며, (ii) 국세청장에 심사청구(Administrative appeal)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시에는 국세청의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180일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ii) 국세청장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거부된 경우 납세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i) 180일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ii) 국세청장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절차는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의 항소 절차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⁵¹⁾ 국세심판소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납세의무자는 대법원(Supreme Court)에 소송(Judicial Appeals)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51) 필리핀 국세심판소, Court of Tax Appeal, Rule 7. PROCEDURE IN THE COURT OF TAX APPEALS, SECTION 1., <http://cta.judiciary.gov.ph/>, 검색일자: 2020. 1. 10.

제3장 | 최신 조세동향

I 조세정책 동향

필리핀 현행 세법은 1997년 제정된 Tax Reform Act of 1997(Republic Act No. 8424)에 따른다. 이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의 최종 개정안은 2018년도에 시행된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Republic Act No. 10963)으로, 'TRAIN 법률'이라 불린다. TRAIN 법률은 필리핀의 조세체계를 더 단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정하여 국가의 투자 촉진, 직업창출 및 빈곤감소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소득세, 수동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인지세, 세무행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5〉 TRAIN 법률 주요 개정사항

세목	주요 개정사항
개인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25만페소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 소득이 800만페소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하여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함 - tax-exempt benefits 한도를 8만2천페소에서 9만페소로 높임 - 복권 및 로또 당첨금은 20%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됨 - 부가수당세(Fringe benefits tax)의 세율을 32%에서 35%로 높임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혹은 지역운영본부, 역외은행,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15%의 특례세율을 폐지함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거래가 확장됨 - 재화를 판매하고 중앙은행법에 따라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 거래에서 제외되었음 - 아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중앙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 •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처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 협회비, 회비 등 실비 변상으로 수급한 요금 • 합병 등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금액이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공급가액이 연간 300만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의 거래 (기존 1,919,5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상됨)

세목	주요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가 월 1만5천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의 임대(기존 12,8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상됨) • 2021년부터 거래되는 공급가격이 2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저가 부동산의 공급(기존 3,199,2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하됨)
기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기존 5구간 세율이 6%의 고정세율로 변동됨 - 증여세: 기존 7구간 세율이 6%의 고정세율로 변동됨(단, 증여금액이 25만페소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됨) -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기존 판매가격 구간별 2~60%의 한계세율 적용에서 4~50%의 증가세로 변동됨 • 탄산음료, 착향음료, 주스, 에너지드링크 등의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신설됨 • 성형수술에 대한 5%의 소비세가 신설됨 - 증권거래세: 기존 0.5% 세율에서 0.6% 세율로 인상됨

자료: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Tax Changes You Need to Know - Republic Act No. 10963 (TRAIN), 2018. 3.

현행 필리핀 세법은 Republic Act를 발표하여 법률이 개정되면, 1997년 제정된 Republic Act No. 8424에 추가 반영하여 시행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 적용할 수 있는 세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정 Act가 전부 반영되어 정리된 최종 세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필리핀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한 NIRC(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⁵²⁾ 아래의 표는 Republic Act별 개정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각 Act별로 1997년 제정 법률에 더하여 개정되거나 새로이 추가 및 삭제된 조항을 나열하였다.

〈표 1-6〉 필리핀 세법의 개정연혁

Republic Act No.	개정된 조항	발행연도 및 시행연도
10963	An Act Amending Sections 5, 6, 24, 25, 27, 31, 32, 33, 34, 51, 52, 56, 57, 58, 74, 79, 84, 86, 90, 91, 97, 99, 100, 101, 106, 107, 108, 109, 110, 112, 114, 116, 127, 128, 129, 145, 148, 149, 151, 155, 171, 174, 175,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6,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232, 236, 237, 249, 254, 264, 269, And 288; Creating New Sections 51-A, 148-A, 150-A, 150-B, 237-A, 264-A, 264-B, And 265-A; And Repealing Sections 35, 62, And 89; All Under Republic Act No. 8424, Otherwise Known As The	2017년 12월 19일

52)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http://www.ntrc.gov.ph/images/quicklinks/NIRC%20of%201997,%20as%20Amended%20by%20RA%2010963%20-%20updated.pdf>, 검색일자: 2020. 1. 9.

Republic Act No.	개정된 조항	발행연도 및 시행연도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10864	An Act Defining Raw Sugar Or Raw Cane Sugar, Amending Section 109(A) And (F)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16년 6월 10일
10653	An Act Adjusting The 13th Month Pay And Other Benefits Ceiling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Gross Income For Purposes Of Income Taxation,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32(B), Chapter Vi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2015년 2월 12일
10378	An Act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s Basis For The Grant Of Income Tax Exemptions To International Carriers And Rationalizing Other Taxes Imposed Thereon By Amending Sections 28(A)(3)(A), 109, 118 And 236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13년 3월 7일
10351	An Act Restructuring The Excise Tax On Alcohol And Tobacco Products By Amending Sections 141, 142, 143, 144, 145, 8, 131 And 288 Of Republic Act No. 8424. Otherwise Known As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By Republic Act No. 9334, And For Other Purposes	2012년 12월 19일/ 2013년 1월 1일
10026	An Act Granting Income Tax Exemption To Local Water Districts By Amending Section 27(C)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Of 1997, As Amended, And Adding Section 289-A To The Code, For The Purpose	2010년 3월 11일
10021	An Act To Allow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y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Of Tax Matters Pursuant To Internationally-Agreed Tax Standards, Amending Sections 6(F), 71 And 270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10년 3월 8일
10001	An Act Reducing The Taxes On Life Insurance Policies, Amending For This Purpose Sections 123 And 183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2010년 2월 23일

Republic Act No.	개정된 조항	발행연도 및 시행연도
9648	An Act Exempting From Documentary Stamp Tax Any Sale, Barter Or Exchange Of Shares Of Stock Listed And Traded Through The Stock Exchange, Fur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199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By Republic Act No. 9243, And For Other Purposes	2009년 6월 30일
9504	An Act Amending Section 22, 24, 34, 35, 51, And 79 Of Republic Act No. 8424,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2008년 6월 17일/ 2008년 7월 6일
9361	An Act Amending Section 110 (B)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06년 11월 21일
9337	An Act Amending Sections 27, 28, 34,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6, 117, 119, 121, 148, 151, 236, 237 And 288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05년 5월 24일
9334	An Act Increasing The Excise Tax Rates Imposed On Alcohol And Tobacco Product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s 131,141, 142, 143, 144, 145 And 288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2004년 12월 21일/ 2005년 1월 1일
9294	An Act Restoring The Tax Exemption Of Offshore Banking Units (OBUS) And 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 (FCDU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27 (D) And Section 28, Paragraphs (A) (4) And (A) (7) (B)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As Amended	2004년 4월 28일
9243	An Act Rationalizing The Provisions On The Documentary Stamp Tax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2004년 2월 17일
9238	An Act Amending Certain Sections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By Excluding Several Services From The Coverage Of The Vat And Re-Imposing The Gross Receipts Tax On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Performing Quasi-Banking Functions And Other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Beginning January 01, 2004	2004년 2월 5일
9224	An Act Rationalizing The Excise Tax On Automobiles, Amending For The Purpose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nd For Other Purposes.	2003년 8월 29일

Republic Act No.	개정된 조항	발행연도 및 시행연도
9010	An Act To Further Defer The Imposition Of The Value-Added Tax On Certain Service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5 Of Republic Act No. 8424, As Amended By Republic Act No. 8761	2001년 2월 27일
8761	An Act Imposing The Value-Added Tax On Certain Services Beginning January 1, 2001, Amending For The Purpose Section 5 Of Republic Act No. 8424 And For Other Purposes	2000년 2월 16일
8424	An Act Amending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1997년 12월 11일/ 1998년 1월 1일

자료: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http://www.ntrc.gov.ph/tax-info/tax-laws-issuances/republic-acts/amendments-to-nirc>, 검색일자: 2020. 1. 9.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법인소득세

제2장 개인소득세

제3장 국제조세

제4장 부가가치세

제5장 기타 조세

제1장 | 법인소득세

I 서론

필리핀 세법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목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인과 개인의 과세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의 'Title II. Tax on Income' 제22조부터 제59조까지, 개인과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다.

필리핀의 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총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등에 제공되는 조세특례에 따르면 총이익(gross income)의 일정비율로 과세할 수 있다.⁵³⁾

여기서는 필리핀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법인의 자본이득 과세, 원천징수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인소득세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53) NTRC, Comparative Corporate Income Taxation in ASEAN Member-Countries, p. 51, <http://www.ntrc.gov.ph/images/journal/2018/j20180102b.pdf>, 검색일자: 2019. 12. 5.

II 납세의무자

1. 법인의 정의⁵⁴⁾

필리핀의 법인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부과된다. 내국법인은 필리핀 국내법에 따라 필리핀에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외국법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거래활동을 수행⁵⁵⁾하는 외국법인(이하 '거주자 외국법인'이라 한다)과 그 외의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구분⁵⁶⁾되며, 사업이나 거래 활동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지 여부가 외국법인의 과세 방법을 결정한다.

법인은 동업기업(partnership)을 포함하나, 전문가로 구성된 합명회사(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s)⁵⁷⁾, 합작투자(joint venture), 컨소시엄(consortium) 중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석유, 석탄, 지열 및 기타 에너지 운영을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합명회사(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s) 형태의 동업기업⁵⁸⁾을 제외한 동업기업은 법인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법인소득세가 과세된다.

2. 비과세 법인⁵⁹⁾

다음 열거된 11가지 유형의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단, 열거된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54)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 - CHAPTER I DEFINITIONS-SEC. 22. Definitions SEC

55)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의 과세 방법을 결정할 때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필리핀에서는 '사업이나 거래 활동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5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5. Definition of residence, 검색일자: 2019. 10. 10.

57) 전문가가 고유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에서 설립한 회사로 다른 사업 활동이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지 않는 형태를 의미함[조세법 제22조(정의) 제B항]

58) 전문가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소득은 파트너 개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출처: Wolters Kluwer Editorial Staff, 2019, p.773.).

59)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30. Exemptions from Tax on Corporations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노동, 농업이나 원예 관련 단체
- ② 자본금 없는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과 영리 목적 없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 ③ 상호회, 공제회와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독점적인 혜택을 위해 운영하는 이익단체나 협회로서 롯지시스템(lodge system)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직원들이 조직한 공제 조합이나 비주식회사로서 해당 단체의 회원이나 그들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사망, 질병,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단체
- ④ 회원을 대상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묘지관리법인(cemetery company)
- ⑤ 비주식회사나 협회로서 종교, 자선사업, 과학, 체육 및 문화, 재향군인의 재활을 위하여 조직 및 이용되는 경우, 단체의 순이익이나 자산의 일부가 회원, 창립자, 임원이나 특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그 단체
- ⑥ 상공회의소나 무역위원회 중 개인 주주의 이익 또는 개인의 순이익이나 수익을 위해 조직되지 않은 경우, 그 단체
- ⑦ 시민단체나 조직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지 않고 사회복지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 그 단체
- ⑧ 이익분배 및 영리 목적이 없는 교육기관
- ⑨ 정부 교육기관
- ⑩ 농민, 태풍이나 화재 관련 상호보험회사, 상호관개회사(mutual ditch or irrigation company), 상호전화회사(mutual or cooperative telephone company), 지역 특유의 단체로서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회비와 수수료, 평가에서 얻은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 단체
- ⑪ 농민이나 농장주 등의 회원이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며 판매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like association)으로서, 판매수입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회원이 생산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단체

III 과세소득

내국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법인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모든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⁶⁰⁾ 여기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제3장 국제조세'에서 살펴본다.

1. 각 사업연도소득(Ordinary incomes)

가.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일반규정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taxable income)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총이익(gross income)에서 총비용(gross deductions)과 추가 면세액(personal and additional exemptions)을 뺀 금액이다.⁶¹⁾ 법인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업연도의 총이익과 총비용은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⁶²⁾ 총이익은 법인이 얻은 수입의 개념, 총비용은 법인이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지출의 개념이다.⁶³⁾

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활동에서 얻은 수익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에 따른 회계상의 수익, 비용과 이익은 손익의 귀속시기나 비용공제 한도 등과 같은 세법 규정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이나 비용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회계상의 금액과 세무 상의 금액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세무상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세법에 익숙한 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과정에서 익금과 손금, 불산입과 산입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⁶⁴⁾ 총액에서 손금⁶⁵⁾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해당

60)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 DEFINITIONS-23. General Principles of Income Taxation in the Philippines

61)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SEC. 31. Taxable Income Defined

62)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3. General Rule

63)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3. General Rule

하나 회계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계상 이익에 포함되었다면 익금불산입으로 표현한다. 또한, 회계상 손실이나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으로, 회계상 손실이나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익금대신 총이익을, 손금 대신 총비용으로 표현하였으며, 산입이나 불산입이라는 용어 대신 공제나 공제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익숙한 독자는 익금·손금, 산입·불산입과 같은 용어가 없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세무조정)

1) 총이익⁶⁴⁾

필리핀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이익이란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얻은 모든 수입의 총합으로, 총이익에 포함되는 11개의 소득이 예시 목적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다.⁶⁷⁾ 여기서 열거된 소득은 법인의 대표적인 수입 항목일 뿐이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수입도 총이익에 해당한다. 법에 예시된 11가지 소득은 다음과 같다.⁶⁸⁾

- ① 서비스수수료: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 수수료, 급여, 임금, 중개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을 포함함
- ② 거래(trade)·사업(business) 활동이나 전문(profession)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
- ③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
- ④ 이자수익

64)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서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65)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66)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 COMPUTATION OF GROSS INCOME-SEC. 32. Gross Income

67)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익금(이익)의 범위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규정하여 순자산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적용하나, 필리핀은 순자산 증가개념을 소득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8)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 COMPUTATION OF GROSS INCOME-SEC. 32. Gross Income (A) General Definition

- ⑤ 임대료 수입
- ⑥ 로열티 수입
- ⑦ 배당수입
- ⑧ 연금보험수입(Annuities)
- ⑨ 상금
- ⑩ 연금 또는 보조금(pensions)
- ⑪ 전문가 합명회사인 동업기업의 순이익 중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주식 등을 처분하고 얻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국내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자본이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본이득세율로 분리 과세된다.⁶⁹⁾

총이익의 계산 방법은 법인소득세 신고서(BIR Form No. 1702-BR)⁷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의 계산식⁷¹⁾에 따르면, 총이익은 총매출액(gross sales)에서 매출할인(sales discounts), 매출에누리(sales allowance), 매출반품(sales returns)을 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⁷²⁾를 뺀 금액이다. 용역 거래의 경우 용역매출(the sale of service)에서 용역매출원가(cost of services)⁷³⁾를 뺀 금액을 총이익으로 한다. 이때 모든 금액은 세무조정이 이미 반영된 세법에 따른 금액⁷⁴⁾을 말한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법인의 고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이하 '고유 사업 관련 총이익'이라 한다)을 먼저 계산하고, 고유 사업 관련 총이익에 자본이득과 같은 그 밖의 과세소득을 더해 총이익을 산출한다.

69)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0. Rates-1.10.1. Income, 검색일자: 2019.10.14. 및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27. Rates of Income tax on Domestic Corporations

70) 필리핀 국세청, BIR Form No. 1702-RT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2018.01.,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taxpayers_service_programs_and_monitoring_1/1702-RT%20Jan%202018%20ENC%20Final%20v3.pdf, 검색일자: 2019.10.21.

71) BIR Form No. 1702-RT 서식은 우리나라의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72) 매출원가는 상품의 생산부터 보관이나 사용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3) 용역매출원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 컨설턴트나 전문가에 대한 급여, 용역 관련 임차료나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비를 포함한다. 은행의 용역매출원가에는 이자비용이 포함된다.

74) 필리핀은 세무신고서 서식 1702-RT 중 Part V-Reconciliation of Net Income per Books Against Taxable Income 부문에서 회계상 순이익과 세무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각 세무조정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여준다.

〈표 2-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총이익

매출액(Sales/Receipts/Revenues/Fees)
(-) 매출반품(sales returns), 매출에누리(sales allowances), 매출할인(sales discounts)
(=) 순매출액(net sales/receipts/revenues/fees)
(-) 매출원가(cost of sales/services)
(=) 고유 사업 관련 총이익(gross income from operation)
(+) 그 밖의 과세소득(other taxable income not subjected to fianl tax)
(=) 총이익(total taxable income)

자료: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BIR Form No. 1702-RT 중 Part IV-Computation of Tax

2) 총비용⁷⁵⁾

법인의 총비용에 관한 공제대상과 요건은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다. 대부분의 법인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과 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표준공제 방식(Optional Standard Deduction)⁷⁶⁾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법인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기업에 한하여 표준공제가 제한된다.

소득세법 제34조는 대체로 법인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불인정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다. 소득세법 제34조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원칙에 부합하면 공제될 수 있는데, 동법에 열거된 ‘사업(business)이나 거래(trade) 관련 비용’ 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사업이나 거래 관련 비용’ 요건에 부합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총비용은 일반적·통상적 비용공제 항목, 특별공제 항목(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⁷⁷⁾과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 over)⁷⁸⁾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 중에서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챕터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일반적·통상적 비용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5)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 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34. Deductions from Gross Income

76) 필리핀 소득세법 제 34조 제L항

77) 법인소득세 신고서 BIR Form No. 1702-RT의 Part VI-Schedule 중 ScheduleII 참고

78) 법인소득세 신고서 BIR Form No. 1702-RT의 Part VI-Schedule 중 ScheduleIII 참고

〈표 2-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총비용

일반적 통상적 비용 공제 항목(Ordinary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1.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s)
2.	대손금(bad debts)
3.	기부금(charitable and other contributions)
4.	감모상각(depletion)
5.	감가상각(depreciation)
6.	접대비(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
7.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s)
8.	지급이자(interest)
9.	손실(losses) ¹⁾
10.	연금신탁(pension trust)
11.	임차료(rental)
12.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13.	급여 및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salaries, wages and allowances)
14.	기타의 기부금(SSS, GSIS, Philhealth, HDMF and other contributions)
15.	세금과 공과(taxes and licenses)
16.	운송비 및 출장비(transportation and travel)
17.	기타 ²⁾
<hr/>	
(=)	총 일반적·통상적 비용 공제액(= 1+2+ . . . +16+17)
(+)	특별 비용(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 over)
<hr/>	
(=)	실제 발생비용 기준 총비용

총비용: 납세자가 실제 발생비용 기준 총비용과 표준 공제액 중에서 선택

주: 1) 손실은 일반소득에 합산되는 자본손실 등 자산양도에 따른 손실액을 포함한다.

2) 기타에는 예를 들어 전문용역수수료(professional fees), 보안서비스(security services) 등 사업 관련 비용 중 열거되지 않은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료: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BIR Form No. 1702-RT 중 Part VI-Schedule

가) 사업이나 거래 관련 비용⁷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용공제를 위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인 법인이 부담한다.

79)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A)항

법인의 거래, 사업의 운영, 전문용역의 수행이나 개발, 관리 및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비용공제를 위한 일반원칙'이라 한다)은 총이익에서 공제된다. 이 때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동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incurred)하거나 지급된(paid) 금액을 말한다.

'비용 공제를 위한 일반원칙'을 충족하더라도 납세자가 법정 영수증이나 기록물 등의 적정 증빙을 통해 비용의 발생사실과 법인의 거래, 사업이나 전문용역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만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비용 공제를 위한 일반원칙'을 충족하더라도 정부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뇌물, 리베이트나 이와 유사한 지급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 공무원 등은 지방정부 기관의 공무원, 정부가 출자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직원, 외국 정부의 대표, 민간 법인, 전문가 합명회사나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나) 지급이자(interest)⁸⁰⁾

법인의 거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는 특별한 요건 없이 이자가 발생했거나 지급된 사업연도의 총이익에서 공제된다. 다만, 법인에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는 이자수익의 33%를 한도로 공제된다.

해당 사업연도 동안 발생했으나 미지급 이자일지라도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한편, 거래나 사업에 사용할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있는 지급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① 특수관계인⁸¹⁾에게 지급된 지급이자

80)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B)항

81) 특수관계인은 가족을 포함한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한다.

- ① 형제, 배우자, 조상과 직계비속
- ② 유통주식 총합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해당 법인 유통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이 유통주식 가치의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개인이 두 법인의 전체유통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두 법인
- ③ 신탁의 설정자(settlors),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가 다른 신탁의 설정자(settlors),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인 경우 서로 다른 신탁 내 수탁자 사이, 그 신탁의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 [출처: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1.4.5. Interest, 검색일자: 2019. 10. 14.]

② 석유 탐사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생한 지급이자

다) 세금(taxes)⁸²⁾

법인의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한 세금은 법에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비용으로 공제된다.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①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에 따라 신고하거나 납부할 소득세
- ② 외국 정부에서 부과한 법인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금액
- ③ 유산세(estate tax)와 증여세(donor's tax)
- ④ 자산 가치 상승을 이끄는 지역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
- ⑤ 벌과금(penalties)⁸³⁾과 부가금(surcharge)⁸⁴⁾

이전 사업연도 중 비용으로 공제된 세액이 이후 사업연도 내에 환급된 경우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총이익에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과거 비용으로 공제된 세액을 한도로 가산한다.

라) 대손금(bad debts)⁸⁵⁾

법인의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 중 다음의 5가지 요건⁸⁶⁾을 모두 충족한 대손금만 비용으로 공제된다.

- ① 법률상 유효한 채무인 경우
- ② 부채가 납세자의 거래, 사업이나 전문용역과 관련된 경우

82)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C)항

83)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이자로 간주하여 비용에서 공제한다.

84)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1.4.9.3.2. Taxes, 검색일자: 2019. 10. 14.

85)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E)항

8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6. Reserves and provisions-1.6.1. Bad and doubtful debts, 검색일자: 2019. 10. 14.

- ③ 채무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④ 채무가 사업연도 말까지 회계 장부에 상각(write off) 처리된 경우⁸⁷⁾
- ⑤ 채무가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회수할 수 없고 가치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사업연도 중 대손금이 환입된 경우 과거 비용으로 공제된 대손금 환입액은 공제액을 한도로 과세표준에 가산하나 과거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대손금 환입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하지 않는다.

마) 급여,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⁸⁸⁾

임직원의 급여와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급여 명목의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s)에 대한 가산금(gross-up)도 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한다. 임직원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중 고용주(법인) 부담분도 비용으로 공제된다.⁸⁹⁾

한편, 임직원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은 법인이 직·간접적인 수취인이 아닌 경우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⁹⁰⁾

바) 접대 및 오락(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 expenses) 관련 비용⁹¹⁾

접대 및 오락 관련 비용은 국세청장이 권고하고 재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Finance)이 정한 한도⁹²⁾ 내에서 비용으로 공제된다. 이때, 접대 및 오락 관련 비용도 ‘비용 공제를 위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현행 법인소득세법에 따른 접대 및 오락 관련 비용의 공제 한도는 재화(goods)나 자산(properties) 관련 매출액의 경우 매출액의 1%, 용역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0.5%이다.⁹³⁾

87) 법인이 채권 중에서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회계 장부상 채권 계정에서 차감하여 대손금으로 상각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은 법인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된다.

88)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A)항

89)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1.4.2. Employee's remuneration, 검색일자: 2019. 10. 14.

90) 필리핀 소득세법 제36조 제(A)항

91)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A)항

92) 정부는 법인의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접대 및 오락 관련 비용의 공제 한도를 정한다.

9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1.4.9.2. Entertainment costs, 검색일자: 2019. 10. 14.

다만, 한도 내에서 발생한 비용도 해당 비용이 관련 법, 공공정책이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면 전액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사) 기부금⁹⁴⁾

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공익이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과세소득의 5%를 한도로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은 기부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기부금 단체에는 정부, 정부기관, 정당, 종교·자선사업·과학·청소년과 스포츠 육성·문화·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 참전용사 지원 단체, 사회복지 단체, 비영리 단체가 포함된다.

일부 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경제 개발국(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결정된 국가 우선 개발계획(a National Priority Plan)에 따른 우선 지원 활동에 사용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이나 정당에 지급하는 기부금
- ② 특별법, 국제기구·정부 간 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기부금
- ③ 종교·자선사업·과학·청소년과 스포츠 육성·문화·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소득을 개인이나 주주의 이익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단체의 관리비가 총비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

현금이 아닌 현물(property) 기부도 비용으로 공제되며, 이때 기부금액은 현물의 취득원가로 한다.

94)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H)항

아)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⁹⁵⁾

법인의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는 비용이 발생하고 지급된 사업연도에 공제된다. 연구개발비는 자본적 지출⁹⁶⁾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자산항목으로 분류된 연구개발비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에 한하여 60개월 미만의 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를 안분하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상각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달부터 가능하다. 법인은 한 번 선택한 상각 방법을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의 승인 하에서만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연구개발비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 ① 연구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감가상각이나 감모되는 성질의 자산 개량비, 토지 개량이나 취득 비용
- ② 석유, 가스, 광석이나 기타 광물의 위치, 품질, 범위 등을 탐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발생 하거나 지출된 금액

자) 감가상각비(Depreciation)⁹⁷⁾

감가상각자산은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property)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 마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나 진부화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자산의 마모나 가치 감소 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치를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예는 특허(patents), 저작권(copyrights)이나 독점사업권(franchise)이다.⁹⁸⁾

95)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I)항

96)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 항목은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상각 기간 동안 비용으로 공제되고 비상각자산인 경우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공제될 것이다.

97)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F)항

98)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3. Valuation-1.3.2. Depreciable assets, 검색일자: 2019. 10. 15.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비상각자산은 재고자산(inventories), 매매가능한 증권(stock-in-trade), 토지(land),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automobiles)나 기타 운송장비(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주거용 건물(building), 가구(furniture or furnishings), 개인용품이나 의류(personal effects or clothing)와 영업권(goodwill)을 포함한다.⁹⁹⁾

(1) 감가상각 방법

상각방법과 상각연도를 통해 감가상각자산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결정되며, 이는 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세법에서 인정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the straight-line method), 정률법(declining-balance method), 연수합계법(the sum-of-the-years-digit method)과 그 밖에 재무부가 인정한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법에서 인정한 감가상각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연수합계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잔존 내용연수 비율(잔존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세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나 미국 재무부가 고시하는 Bulletin F를 참고하여 결정된다.¹⁰⁰⁾ 납세자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국세청과 합의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률이 적용된다.

(3)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

납세자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연수와 상각

99)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3. Valuation-1.3.3. Non-depreciable assets, 검색일자: 2019. 10. 15.

100)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5.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1.5.1. General principles, 검색일자: 2019. 10. 15.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변경된 감가상각 비율과 내용연수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4) 감가상각 관련 특례

산유(production of petroleum)에 직접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 방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며, 내용연수는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국세청이 승인한 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한편, 산유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5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채굴(mining operations)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자산의 기대수명이 10년 이하인 경우 정상적인 감가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되나, 기대수명이 10년을 초과하면 5년과 기대수명 사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차) 감모상각비(depletion)¹⁰¹⁾

유정, 가스정이나 광산 개발 관련 지출액은 원가비례법(cost-depletion method)¹⁰²⁾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치로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향후 천연자원이 실제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무형의 탐사나 개발 시추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천연자원의 생산에 실패한 경우 관련 비용은 전액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반면, 탐사나 시추와 동일한 지역의 유정, 가스정이나 광산에서 천연자원이 생산되면 법인이 발생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거나 발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 업무용 운송수단¹⁰³⁾

법인의 사업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101)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G)항

102) 원가비례법은 해당 사업연도에 추출된 천연자원을 총 추출 가능한 천연자원의 단위로 나눈 값을 비율로 자산을 감모상각하는 방법이다.

10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5.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1.5.4.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검색일자: 2019. 10. 16.

관련 세금은 비용으로 공제된다.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가치, 사용 용도, 증빙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업무용 자동차의 가치가 2,4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임직원이 자동차를 거래나 사업과 관련한 영업, 운영, 개발과 관리 목적으로 사용
- ③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의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요트, 헬리콥터, 비행기의 가치가 2.400만페소를 초과하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이용한 운송업이나 자산의 리스가 주업인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¹⁰⁴⁾

타) 기타

그 밖에 국내 및 국외 출장비, 이사회 임원에 대한 보수, 임차료 및 사용이나 향후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 로열티, 경영자문 수수료와 같은 비용도 법인의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¹⁰⁵⁾

반면, 사용 전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감모상각비(amortization allowances)¹⁰⁶⁾, 비용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충당금(reserves and provisions)¹⁰⁷⁾과 배당금¹⁰⁸⁾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파) 표준공제 방법¹⁰⁹⁾

내국법인과 거주자 외국법인은 총이익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공제 방

104)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요트, 비행기, 육상운송 등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나 관련 세금이 모두 비용으로 공제된다.

105)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 검색일자: 2019. 10. 16.

10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5.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1.5.9. Unutilized depreciation or amortization allowances, 검색일자: 2019. 10. 16.

107)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6. Reserves and provisions, 검색일자: 2019. 10. 16.

108)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4. Deductions-1.4.4. Dividends, 검색일자: 2019. 10. 16.

109) 필리핀 소득세법 제34조 제(L)항

법으로 비용을 공제받는다. 표준공제 방법을 세무신고서에 채택하지 않은 법인은 실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자산평가¹¹⁰⁾

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법인의 재고자산은 거래나 사업에서 통용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 산출이 가능하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원가법과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모두 인정되는데, 첫 사업연도에 사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후속 사업연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후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가법은 선입선출법¹¹¹⁾, 후입선출법¹¹²⁾, 이동평균법¹¹³⁾과 총평균법¹¹⁴⁾에 따라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5가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① 가격 변동이나 자산 가치의 추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 ② 적정 가격에 미달하거나 최종제품의 정상가격으로 재공품이나 재고자산의 특정 부분을 평가한 경우
- ③ 재고의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 ④ 소위 정상 수량의 물품을 정해놓고 해당 금액을 동일한 가격이나 정상가격으로 평가한 경우
- ⑤ 법인이 소유권을 양도받기 전 이미 운송 중인 재고인 경우

110)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41. Inventories 및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3. Valuation, 검색일자: 2019. 10. 16.

111)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어 기말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이다.

112) 후입선출법은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자산부터 출고되어 기말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법이다.

113)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회계상 총재고자산 금액을 총재고자산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말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114) 자산을 품종별이나 종목별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을 총액으로 하고 그 총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말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나) 부채¹¹⁵⁾

부채의 회계상 장부가치나 현재가치가 세법에서도 인정된다.

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¹¹⁶⁾

환율의 변동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화환산손실은 비용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외화환산이익은 이익에 가산되지 않는다.

다. 비과세소득¹¹⁷⁾

법인은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소득세를 부담하나, 다음의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① 거주자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¹¹⁸⁾
- ② 증여(gifts), 상속(bequests), 유증(devise or descent)으로 얻은 자산(property)의 가치
- ③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 ④ 외국정부가 얻은 수익 중 필리핀 역내에서 발생한 대출, 주식, 채권이나 기타 국내 유가증권으로부터 얻은 투자수익, 필리핀에 소재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여기서 외국정부란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금융기관, 외국정부로부터 재금융 받은 금융기관, 외국정부가 설립한 국내·외 금융기관을 말한다.
- ⑤ 정부나 정당이 얻은 소득 중 정부의 고유기능을 행사하거나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⑥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 채무증서나 그 외 차입증명서의 양도, 교환이나 상환으로 얻은 이익

115)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3.4. Debt claims and liabilities, 검색일자: 2019. 10. 16.

11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3.5. Foreign currency assets and liabilities, 검색일자: 2019. 10. 16.

117)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 COMPUTATION OF GROSS INCOME-SEC. 32. Gross Income 및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2. Taxable income-1.2.3. Exempt income, 검색일자: 2019. 10. 14.

11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된다.

⑦ 뮤추얼펀드의 주식 상황에 따른 이익

라. 과세기간¹¹⁹⁾

법인의 사업연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회계상의 사업연도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 날로 한다. 납세자가 개인이거나 회계기간 동안 회계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역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신고한다.

마. 소득의 귀속시기¹²⁰⁾

총이익과 총비용은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회계기준(the method of accounting)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총이익은 법인이 이익을 얻은(receive) 과세기간에 인식하며, 총비용이나 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accrued or incurred)하거나 지불이 확정(paid)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¹²¹⁾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¹²²⁾의 수익과 비용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건축사나 엔지니어로부터 확인 받은 공사진행률 관련 자료를 세무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본이득과 손실¹²³⁾

대부분의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다른 소득과 함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119)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3. General Rule

120)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3. General Rule부터 SEC. 50. Allocation of Income and Deductions까지

121)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4. Period in which Items of Gross Income Included. and Sec. 45. Period for which Deductions and Credits Taken.

122) 관련 내용은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II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OF ACCOUNTING-SEC. 48. Accounting for Long-term Contracts.”

123)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39. Capital Gains and Losses 및 SEC. 40. Determination of Amount and Recognition of Gain or Loss

되나, 내국법인의 주식 거래 결과 발생한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필리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내국법인 주식(listed and traded through the local stock exchange)의 자본이득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실제 분리과세되는 자본자산(capital assets)은 장외에서 거래된 내국법인의 주식뿐이다.

가. 자본자산의 소득구분¹²⁴⁾

자본이득은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판매, 이전이나 교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자본자산은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property)을 말한다. 자본자산 분류에 납세자의 사업이나 거래와의 관련성 여부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자산은 자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용 증권을 취급하는 증권사 딜러가 얻은 주식 양도소득은 해당 주식이 세법에 따른 비과세나 분리과세 자본이득에 해당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한다.¹²⁵⁾

- ① 매매용 증권(stock-in-trade)과 재고자산
- ②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 ③ 거래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
- ④ 거래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한편, 세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자본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¹²⁶⁾

- ①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 채무증서나 그 외 차입증명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② 뮤추얼펀드 주식의 상황에 따라 발생한 이익
- ③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등록 및 거래되는 내국법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124)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39. Capital Gains and Losses

125)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0. Rates-1.10.2. Capital gains, 검색일자: 2019. 10. 18.

12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7. Capital gains-1.7.5. Exempt capital gains, 검색일자: 2019. 10. 18.

이러한 자본자산 중 장외에서 거래된 내국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분리과세된다.¹²⁷⁾

자본자산의 종류별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자본자산 종류별 과세 방법

종류		소득 구분	과세 방법
매매용 증권, 재고자산		일반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
판매용 자산		일반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자산		일반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
사업용 부동산		일반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
내국법인 주식	필리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비과세	-
	그 밖의 장소에서 거래	자본이득	자본이득으로 분리과세
뮤추얼펀드 주식의 상황		비과세	-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 채무증서나 그 외 차입증명서		비과세	-
그 밖의 납세자의 자산		일반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

자료: Tax Code SEC. 39. Capital Gains and Losses 및 IBFD(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자본이득 과세표준의 결정

1) 일반원칙

필리핀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본자산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 판매, 이전이나 교환 등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만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국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필리핀에서 생산된 자본자산은 국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도 일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의 주식 거래와 필리핀 역내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¹²⁸⁾

127) 필리핀 국세청, BIR Form No. 1707 Capital Gains Tax Return 및 BIR Form No. 1707-A Annual Capital Gains Tax Return, <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income-tax-return.html#itr1707>, 검색일자: 2019. 10. 18.

128) 이 문단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자본이득은 판매, 이전이나 교환에 따른 거래가액에서 자산의 장부가액(basis or adjusted basis)을 뺀 금액이다. 장부가액은 다음의 4가지 항목을 고려한 금액을 말한다.¹²⁹⁾

- ① 매입한 자본자산을 처분한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이다.
- ② 상속받은 자본자산을 처분한 경우, 장부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날의 시가이다.
- ③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한 자의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증여한 자의 취득원가가 증여시점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한 날 자산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본다.
- ④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 시점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교환¹³⁰⁾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의 교환거래 시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인식한다. 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합병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환거래에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 ① 인수합병에 참여한 법인이 인수합병 대상 법인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② 주주가 인수합병에 참여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과 보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 ③ 인수합병에 참여한 법인의 증권(security) 소유자가 인수합병에 참여한 다른 법인의 증권을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증권과 보유 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참여하고, 그 결과 해당 법인에 대한 통제권¹³¹⁾을 갖게 된 경우 주식과 자산의 교환거래에

Income Tax-1.7. Capital gains-1.7.3. Realization, 검색일자: 2019. 10. 18.

129)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 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40. Determination of Amount and Recognition of Gain or Loss

130)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 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40. Determination of Amount and Recognition of Gain or Loss(C)

131)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소득세법 제40조)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때 거래에 참여한 개인은 4인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을 말한다.

3.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일종의 배당금에 해당한다. 배당금은 법인이 얻은 수익이나 이익을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청산이나 해산 완료 후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손실은 배당금에 해당한다.¹³²⁾

잔여재산 분배로부터 주주가 얻은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¹³³⁾

법인이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할 때 해산 및 청산의 결의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¹³⁴⁾

4. 유보소득¹³⁵⁾

법인은 부적격 유보소득(Imposition of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과는 별도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이하 '유보소득 과세'라 한다)한다.

가. 부적격 유보소득의 정의와 계산

여기서 부적격 유보소득이란 납입자본(paid-up capital)의 100%를 초과하여 법인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¹³⁶⁾ 법인의 부적격 유보소득은 필리핀 법인에 관한 법률(Corporation

132) 이 문단은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출처: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XI OTHER INCOME TAX REQUIREMENTS-SEC. 73. Distribution of Dividends or Assets by Corporations]

133) 필리핀 국세청, Section 8 of Revenue Regulations 6-2008,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39882rr%20no.%206-2008.pdf, 검색일자: 2019. 10. 17.

134)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2. Corporation Returns

135)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29. Imposition of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136) Corporation Code Sec. 43, http://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9/03/2019Legislation_RA-11232-REVISED-CORPORATION-CODE-2019.pdf, 검색일자: 2019. 10. 17.

Code)137)에 따라 금지된다.

부적격 유보소득은 법인의 순이익 총합에서 배당금이나 법인소득세의 납부를 위한 유보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에서 부적격 유보소득을 다음 항목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회계상의 이익잉여금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이해된다.

- ① 비과세대상 이익
- ② 총수입금액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차감된 금액
- ③ 법인소득세 과세대상 이익
- ④ 이월 결손금 공제액

나. 과세대상 법인

과세대상은 '사업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유보자금 이상으로 이익잉여금을 축적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인이다. 세법은 이들 법인이 주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하에 설립·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장법인(publicly-held corporations), 은행,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과 보험사는 부적격 유보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을 어떻게 누가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mere holding company)나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와 같은 법인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운영된 것으로 본다.¹³⁸⁾ 또한, 법인이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보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입증책임을 납세자인 법인에 부담시키고 있다.

137) 필리핀의 법인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 「상법」의 회사편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138) 이를 필리핀 세법에서는 Prima Facie Evidence라 한다.

IV 결손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자본손실과 그 밖의 손실로 구분하여 결손금의 과세방법을 살펴본다.

1. 자본소득 외의 손실(ordinary loss)¹³⁹⁾

가. 손실(loss)의 처리

일반적으로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화재(fire), 태풍(storms), 난파 또는 강도(shipwreck or robbery), 도난(theft)이나 횡령(embezzlement)의 사유로 거래, 사업 및 전문용역에 사용하는 자산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된다.

한편, 법인소득세 신고 시점에 유산세(estate tax)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손실액은 법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손실공제로 신고할 수 없다.

나. 이월결손금의 공제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net operating loss carry-over)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 ① 납세자가 소득세 면세를 받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② 법인이나 사업의 지배구조(ownership)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유통주식이나 납입자본 액면가액(nominal value)의 적어도 75%를 보유한 주주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¹⁴⁰⁾

139)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34. Deductions from Gross Income (D) Los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_ftn28, 검색일자: 2019. 10. 14.

2. 자본손실(capital loss)의 공제¹⁴¹⁾

자본손실은 자본자산의 양도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자본손실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자본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도 자본이득에서만 공제되고,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자본손실의 경우는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①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신탁법인
- ②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예금 수취(the receipt of deposits), 채권(bond), 유가증권(securities)이나 채무증권 등의 양도인 법인

분리과세 대상인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나 교환하고 발생한 자본손실은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¹⁴²⁾

한편, 다음과 같은 자본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①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 사이에서 양도하거나 교환한 자산
- ②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이 부족하거나 선의(bona fide)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
- ③ 주식이나 증권의 위장매매(wash sales)¹⁴³⁾

한편, 자본자산 거래에 따른 자본손실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⁴⁴⁾

140) 합병과 같이 주주의 변동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하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자료: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8. Losses-1.8.1. Ordinary losses, 검색일자: 2019. 10. 14.).

141)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 CHAPTER VII ALLOWABLE DEDUCTIONS-SEC. 34. Deductions from Gross Income (D) Loss

142)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8. Losses-1.8.2. Capital losses, 검색일자: 2019. 10. 14.

143) 위장매매는 자본손실이 발생한 주식거래일 전후 30일 이내에 그 주식이나 증권과 상당히 유사한(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이나 증권을 재매입한 경우를 말한다.

144) 소득세법에서 법인의 자본손실 이월공제 규정을 찾지 못하였으며, 법인은 자본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V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세액의 계산¹⁴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세법에서 법인이 사업연도에 최소한 부담해야 할 법인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소득세를 최저한세(minimum corporate income tax)라고 하며, 최저한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한세액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가. 일반세율

법인의 일반세율은 30%이다. 일부 조세혜택이 적용될 경우 저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나. 최저한세율

필리핀 세법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할 법인소득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한세라고 한다. 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이익(gross income)에 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법인은 최저한세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하 “법인소득세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비교하고, 이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정한다. 이 때 법인소득세의 산출세액은 모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최저한세와 법인소득세의 산출세액의 차액은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공제 신청한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커야 한다.

최저한세 계산 시 총이익은 세무상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매출반품을 뺀 세무상 순매출액에서 세무상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필리핀 세법은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노사

145)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27. Rates of Income tax on Domestic Corporations

분쟁, 불가항력, 합법적 사유에 의한 사업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재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최저한세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최저한세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4번째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¹⁴⁶⁾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다. 필리핀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이익이나 총비용에 이미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월결손금도 총비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산하므로 별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총이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필리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면서 과세표준이 된다.

〈표 2-4〉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일반세율의 적용	최저한세의 적용
총이익(Total taxable income)	총이익
(-)	
총비용(Deductions) ¹⁾	
(=)	(X)
법인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 (net taxable income or loss)	
(X)	
일반 세율 (30%)	최저한세율 2%
(=)	(=)
1. 산출세액(income tax due)	2. 최저한세액
최종 산출세액 = Max (1. 산출세액, 2. 최저한세액)	

주: 1) 총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총비용과 표준공제 비용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금액이며, 총비용에 이미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BIR Form No. 1702-RT 중 Part IV-Computation of Tax

146) 필리핀 국세청, BIR Form No. 1702-RT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2018. 01.,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taxpayers_service_programs_and_monitoring_1/1702-RT%20Jan%202018%20ENC%20Final%20v3.pdf, 검색일자: 2019. 10. 21.

법인의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인 30%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총이익의 2%를 곱한 최저한세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된다.

법인소득세의 납세자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며, 이 경우 법인은 서식 1702-RT를 사용한다. 법인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모두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bir.gov.ph>)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¹⁴⁷⁾

각 사업연도 소득과 분리 과세되는 순자본이득은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순자본이득은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뺀 금액이다.

분리과세되지 않는 순자본이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30%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3. 유보소득에 대한 세율¹⁴⁸⁾

부적격 유보소득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다.

147)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27. Rates of Income tax on Domestic Corporations

148)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V TAX ON CORPORATIONS-SEC. 29. Imposition of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VI 조세혜택

조세혜택은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비과세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빼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총이익이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일정비율로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며, 비과세는 전체 과세표준을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필리핀은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비과세의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세액감면은 여러 특별법(special law)¹⁴⁹⁾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¹⁵⁰⁾ 대표적인 특별법은 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과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에 따라 운영되는 세액감면이다.

여기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혜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인세 혜택을 제외한 조세혜택은 ‘제3편 제1장 외국인 투자정책’-‘Ⅲ. 외국인투자특례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¹⁵¹⁾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any income taxes)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형태로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비용의 형태로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사업 연도의 국외소득이 법인의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외소득 비율’이라 한다)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의 산출세액에 ‘국외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각 국가별로 계산해야 하므로, 2개 이상 국가의 소득과 한도를 통산할 수 없다.

149) 우리나라는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므로, 각 세액감면별로 별도의 특별법을 운영하는 필리핀과 차이를 보인다.

150) 필리핀 국세청, Tax Guide on Philippine Taxation, <https://www.bir.gov.ph/index.php/rulings-and-legal-matters/tax-guide-on-philippine-taxation.html>, 검색일자: 2019. 10. 21.

151) PwC, Philippines Corporate-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taxsummaries.pwc.com/ID/Philippines-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0. 21.

$$\text{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가별 국외소득}}{\text{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하지 못한다.¹⁵²⁾

2.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¹⁵³⁾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투자법(the Omnibus Investment Code 1987)에 따라 투자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s)에 등록된 법인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비과세 혜택이다. 투자법은 1987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 저개발지역(less developed areas)에 투자하는 법인, 필리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필리핀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군에 투자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세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필리핀 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투자법의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법인¹⁵⁴⁾으로 낙후 지역 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필리핀 내 지역 본사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한 다국적기업, 해외 시장에 원재료나 부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리핀 내 창고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이다. 투자청에서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지역과 산업군을 투자 우선대상으로 지정[이를 ‘투자유치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y Plan)’라 한다]하는데 이들 기업도 투자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투자청에서 2017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적용하는 투자유치우선분야가 가장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조세혜택을 받으려는 법인은 투자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투자위원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투자법의 적용대상은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개인, 동업기업, 협동조합(cooperative), 법인과 기타 단체(other association)를 모두 포함하나, 은행이나 예금

15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 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컨대 한도를 초과하여 당기 사업연도 중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그대로 소멸할 것으로 이해된다.

15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0. 14.

154) 등록법인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취(the receipt of deposits), 주식, 채권(bond), 유가증권(securities)이나 채무증권의 양도나 투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②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유통주식의 60% 이상을 필리핀 국적인 자가 보유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60% 이상이 필리핀 국민이어야 한다.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기업이나 기타 단체는 자본의 60% 이상을 필리핀 국민이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 ③ 투자유치우선분야가 확정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정된 프로젝트 수행을 제안하거나, 전체 생산물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필리핀에서 생산된 영화, 음원이나 티비 프로그램을 수출하거나 기술이나 전문용역을 해외로 제공하는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 ④ 국가의 경제와 개발을 요하는 특정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투자법에 따른 등록을 원하는 법인은 먼저 투자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청이 신고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등록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투자청으로부터 법인명, 투자선호 지역, 투자활동과 기타 조건이 기재된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가.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혜택¹⁵⁵⁾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 적용받는 조세혜택은 크게 11가지¹⁵⁶⁾이며, 이 중에서 법인 소득세와 관련한 조세혜택은 세액감면(income tax holiday), 급여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additional deduction for labour costs)가 있다.

1) 소득세 전액 감면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선도기업(pioneer enterprise), 비선도기업(non-pioneer enterprise)과 개발기업(expanding firm)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세액감면의 기간이 달라진다. 각 법인은 법에서 정한 기한 동안 법인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선도기업은 다음

155)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39.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EO-226-omnibus-investments-code.pdf>, 검색일자: 2019. 10. 22.)

156)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조세혜택 외에도 특정 수출입 물품에 대한 거래세나 관세의 면세 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의 4가지 범주에 속하는 법인을 의미한다.¹⁵⁷⁾ 비선도기업은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중에서 선도기업이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¹⁵⁸⁾

- ① 필리핀에서 기존에 생산되지 않던 상품·제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제조나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단순 조립이나 가공만 하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원재료나 제품의 성분(element), 소재(substance)나 원재료(raw materials)의 개량(transformation), 디자인, 공법, 제조 시스템이나 절차를 개선하여 필리핀에서 기존에 생산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원재료나 제품을 개발하는 법인
- ③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식품이나 농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 임업, 광업 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④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아닌 신에너지원을 생산하거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신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법인

세액감면 기간은 선도기업의 경우 6년, 비선도기업의 경우 4년, 개발기업(expanding firm)¹⁵⁹⁾은 3년이다. 세액감면은 관련 실제 사업활동이 개시된 날부터 적용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한 기업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선도기업의 감면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면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 ① 투자위원회가 정한 근로자 대비 자본설비(capital equipment) 비율에 부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체 자본설비(수입장비 및 국내장비를 모두 포함)가 근로자 1명당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투자위원회가 정한 등록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필리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장을 신청한 사업연도 동안 사용한 전체 원재료의 50% 이상이 필리핀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투자위원회가 50%보다 높은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른다.
- ③ 사업 개시 후 첫 3년 동안 순외환 저축액(savings)이나 이익(earnings)이 매년 50만달러 이상인 경우

157)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17.

158)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18.

159) 개발기업에서 '개발'은 생산의 양적·질적 향상, 생산물품의 개선과 진부화되었거나 비효율적 장비의 개선을 말한다.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기업은 분기마다 법인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 연도 종료 후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2) 급여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급여의 50%를 추가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이때 (1)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동안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저개발지역에 투자한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혜택¹⁶⁰⁾

저개발지역은 1인당 국민총생산(per capital gross domestic product)이나 투자수준(level of investments)이 낮은 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저개발지역에 투자한 등록법인은 '가.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에 따른 소득세 전액 감면과 급여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도기업에 적용된다.

전술한 조세혜택 외에 법인이 주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는 투자위원회로부터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 완공 후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title)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¹⁶¹⁾

다.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에 대한 조세혜택¹⁶²⁾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 설립한 지역본부(a regional headquarters)는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일정 요건을 만족한 특정 장비 등의 수입 관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는다. 지역본부는 필리핀에서 사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지 않으며, 감독활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계열회사나 지점을 위한 연락 및 조정의 역할만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 설립한 지역운영본부(a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의 법인

160)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40.

161) 저개발지역에 투자한 등록법인은 소득세에 대한 조세혜택 외에 통관절차 간소화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2)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58.~Article 67.

소득세는 10%의 세율로 과세되며, 지역본부에 적용되는 기타의 혜택과 유사하게 각종 지방세, 일정 요건을 만족한 특정 장비 등의 수입 관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는다.

라. 창고 운영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¹⁶³⁾

필리핀 내 국제 무역 및 공급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외국 기업이 특정 경제지구에 지역 창고(regional warehouses)를 설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원재료 및 반제품의 부품을 공급할 경우 조세혜택이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전술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나 지역운영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

해외 시장에 직접 재수출하기 위하여 창고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출세, 지방세와 관세가 면세된다. 면세대상 법인은 창고업 외의 사업활동, 계약체결이나 필리핀 시장에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이 창고업 외의 관계회사나 지점 등의 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마. 기타¹⁶⁴⁾

투자위원회가 발표하는 투자유치우선분야에 따라 국가 지원 산업활동으로 지정된 채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관련한 조세혜택이 적용된다. 투자유치우선분야는 3년에 한 번 발표되므로 발표 시 국가 지원 산업활동과 관련 조세혜택은 변경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3. 관광업에 대한 조세혜택¹⁶⁵⁾

관광법(the Tourism Act of 2009)과 국세청 지침(RR 7-2016)에 따라 정부 관광산업청(the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에 등록된 법인은 소득세 면세나 특혜세율로 과세되는 조세혜택을 적용받는다. 조세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청에서 받은 증서(certificate)를 세무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63)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Article. 68.

164)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 Regional and other incentives

165) 필리핀 국세청, RR No. 6-2016, <https://www.bir.gov.ph/index.php/revenue-issuances/revenue-regulations/2016-revenue-regulations.html>, 검색일자: 2019. 10. 23.

정부가 지정한 관광특구(Tourism Enterprise Zones)에 소재한 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년 동안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거나 5%의 저세율로 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이나 5%의 저율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다음 6년 동안 이월하여 결손금을 공제받는 조세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도 사업개시일로부터 6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해당 법인은 소득세의 저율과세는 선택할 수 없으나 6년 동안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조세혜택을 소득세 감면 대신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나 저율과세를 선택한 법인은 다른 법에 따른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른 조세혜택¹⁶⁶⁾

필리핀 정부는 1995년 특별경제구역법을 제정한 후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혜택¹⁶⁷⁾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별경제구역은 크게 산업지구(industrial estate)¹⁶⁸⁾, 수출지구(export process zone)¹⁶⁹⁾와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¹⁷⁰⁾로 구분된다.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하고 조세혜택을 받는 법인은 필리핀의 특별경제구역 담당 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법인은 총이익(gross income)의 5%에 상당하는 세금만 납부¹⁷¹⁾하며, 그 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세¹⁷²⁾된다. 5%의 세금 중 3% 세율에

166) 필리핀 특별경제구역 담당 부처, AN ACT PROVIDING FOR THE LEGAL FRAMEWORK AND MECHANISMS FOR THE CREATION, OPERATON,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PHILIPPINES, CREATING FOR THIS PURPOSE,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AND FOR OTHER PURPOSES(known as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http://122.54.71.67/index.php/about-peza/special-economic-zone-act>, 검색일자: 2019.10.23.

167)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 감면 외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적용받는다.

168) 산업지구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통합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169) 수출지구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역 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적·물리적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170) 자유무역지구는 항구나 공항 인근에 고립된 지역을 설정하고 수입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지구 내 수입된 물품이 자유롭게 저장, 물류, 유통, 무역될 수 있도록 보장한 지역을 말한다.

171) 특별경제구역의 개발자로서 토지소유주는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를 부담하며, 그 외 다른 법인은 총이익의 5%에 상당하는 세금만 부담한다.

172)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법인에 대한 과세는 총이익에 대한 5% 세율 과세로 종결되나, 신탁펀드나 이와 유사한 계약, 은행 예금 등에서 얻은 이자소득은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상당하는 금액은 중앙정부에, 나머지 2%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이 소재한 시(municipality)나 도시(city)에 귀속된다. 여기서 총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와 매출반품을 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같은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직접비용은 일반관리비, 광고비, 판매비와 영업외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 원재료비, 생산 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과 직접 관련한 임차료나 유틸리티 비용 등은 포함한다.

VII 신고와 납부

법인은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포함한 각종 공제의 이월공제액, 분기에 납부한 예납세액,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표 2-5〉 납부할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전년도 최저한세 외 이월공제 가능 항목에 대한 당기 이월공제액
(-) 이전 분기 최저한세에 따라 납부한 예납세액
(-) 이전 분기 일반세율에 따라 납부한 예납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 및 감면
(-) 원천징수세액
(-) 전년도 최저한세에 대한 당기 이월공제액
(=) 당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net tax payable or overpayment)

자료 :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BIR Form No. 1702-RT 중 Part IV-Computation of Tax

1. 신고¹⁷³⁾

가. 각 사업연도소득의 신고

내국법인(동업기업을 포함)과 거주자 외국법인은 분기마다 법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해 총 4차례 법인소득세를 신고한다. 1분기, 2분기와 3분기에 해당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누적소득을 대상으로 예납신고를 하며, 4분기가 종료된 후 전체 사업연도 소득을 대상으로 확정신고를 한다. 세무신고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납세자의 기본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고액 납세자(large taxpayer)¹⁷⁴⁾를 제외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서면이나 전산

173)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2. Corporation Returns 및 국세청 신고 납부 안내(<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검색일자: 2019. 10. 23.

중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는 컴퓨터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수기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국세청 전자신고 및 납부시스템(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eFPS)¹⁷⁵⁾을 통해 전산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확인 메시지를 받는다.¹⁷⁶⁾ 일반적으로 서면신고 시 납세자는 법인 등록지 관할 지방 국세청(Revenue District Office) 구역 내에 소재한 ‘Authorized Agent Bank¹⁷⁷⁾’에 세무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한다.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 납세자는 법인 등록지 관할 지방 국세청 내 설치된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확인서 명목으로 Authorized Agent Bank에서는 담당 직원이 예금전표(deposit slip)를, 다른 담당 기관에서는 신고확인서(Electronic Revenue Official Receipt)를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한편, 납세자가 수기로 작성한 세무신고서를 제출(manual filer)할 경우 세무신고서 복사본 3부를 지방 국세청 산하 세무신고센터(Tax Filing Center)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세무신고서를 받은 세무신고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확인서를 발급한다.

국세청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 납세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⁷⁸⁾

174) 여기서 고액 납세자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한 법인을 말한다.

- ① 한 분기(quarter)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20만페소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특별 소비세(excise tax)액이 100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③ 납부할 법인소득세액(income tax)이 100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④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이 100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⑤ 한 분기라도 납부할 비율세(percentage tax)가 20만페소 이상 발생한 경우
- ⑥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가 100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⑦ 총매출액(gross sales)이나 총현금유입액(receipts)이 10억페소 이상인 경우
- ⑧ 순재산(net worth)이 300백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⑨ 총매입액(gross purchases)이 800백만페소 이상인 경우
- ⑩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발표하는 100대 기업(top corporate taxpayer)인 경우

175) 전자신고 및 납부시스템은 필리핀 국세청이 개발한 세금의 전자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신고 및 납부 홈페이지(<https://efps.bir.gov.ph/eFPSFAQ.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6) 신고에 대한 안과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7)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bir.gov.ph/index.php/list-of-authorized-agent-banks.html>)에서 Authorized Agent Bank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Authorized Agent Bank는 필리핀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일반 은행(commercial bank)과 여러 지점을 보유한 대형 은행(universal bank)을 말한다.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와 납부를 받고 이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자료: Revenue Regulations 3-2016).

178) Revenue Regulation 17-2010(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55153rr10_17.pdf, 검색일자: 2019. 10. 23.)

〈표 2-6〉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방법

신고 종류	대상 법인	신고 방법	신고 장소
전자신고 (eFPS Filer)	고액 납세자 포함 모든 법인	국세청 전자신고 및 납부시스템(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eFPS)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	필리핀 국세청 전자신고 및 납부 홈페이지(https://efps.bir.gov.ph/) 에서 신고
서면신고 (Non-eFPS Filer)	고액 납세자 제외	세무신고서 1부를 직접 제출	Authorized Agent Bank,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은 지방국세청 소재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
수기 작성 세무신고서의 서면신고 (Manual Filer)	고액 납세자 제외	세무신고서 복사본 3부를 직접 제출	지방 국세청 산하 세무신고센터 (Tax Filing Center)

자료: 필리핀 국세청 신고안내(<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23.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예납신고

내국법인과 거주자 외국법인은 매 분기마다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분기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총수익과 총비용에 대해 예납신고하여야 한다. 개시일부터 각 분기의 종료일까지의 누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전 분기에 납부한 예납세액을 차감하여 해당 분기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예납신고 서식은 BIR Form 1702Q(Quarterly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¹⁷⁹⁾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납신고 서식은 과세표준 계산 과정, 산출세액, 세율과 예납세액과 최종 납부할 세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세자는 다음에서 열거한 서식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서식이나 부속서류를 BIR Form 1702Q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¹⁸⁰⁾

179) 필리핀 국세청, 예납신고서식 BIR Form 1702 Q,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267751702Qjuly2008.pdf, 검색일자: 2019. 10. 23.

- ① 소득별 원천징수 증명서: Certificate of Creditable Tax Withheld at Source(BIR Form 2307)
- ② 계좌 자동이체 관련 정보: Duly approved Tax Debit Memo
- ③ 수정신고 시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 Previously filed return

예납신고 시 회계 정보와 관련한 서식(Account Information Form)이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는 제출하지 않는다.¹⁸¹⁾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확정신고

납세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인소득세의 확정신고(Final Adjustment Return or Annual Income Tax Return)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전 분기에 납부한 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확정신고 서식은 BIR Form 1702(Annual Income Tax Return for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¹⁸²⁾이며, 해당 서식은 과세표준 계산 과정, 산출세액, 세율과 예납세액과 최종 납부할 세액,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식은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정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납세자만 다음의 7가지 부속서류를 BIR Form 1702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me Payments Not Subjected to Withholding Tax(BIR Form 2304)
- ②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증명서, Certificate of Creditable Tax Withheld at Source(BIR Form 2307)

180) 필리핀 국세청, 예납신고서식 BIR Form 1702 Q,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267751702Qjuly2008.pdf, 검색일자: 2018. 10. 23.

181) 필리핀 국세청, 예납신고서식 BIR Form 1702 Q Attachment Required,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267751702Qjuly2008.pdf, 검색일자: 2018. 10. 23.

182) 필리핀 국세청, 예납신고서식 BIR Form 1702-RT(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taxpayers_service_programs_and_monitoring_1/1702-RT%20Jan%202018%20ENCs%20Final%20v3.pdf) 또는 BIR Form 1702-MX(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taxpayers_service_programs_and_monitoring_1/1702-MX%20Jan%202018%20ENCs%20Final%20with%20OSDv2.pdf), 검색일자: 2018. 10. 23.

- ③ 계좌 자동이체 관련 정보, Duly approved Tax Debit Memo¹⁸³⁾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증빙, Proof of Foreign Tax Credits
- ⑤ 전년도 세무신고서가 당시 사업연도 중 수정신고된 경우 수정신고한 전년도 세무신고서와 납입증명서, Income tax return previously filed and proof of payment
- ⑥ 회계정보서식이나 독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 단, 연간 총매출액(gross annual sales), 연간순이익(earnings), 수입금액(receipts)이나 생산금액(output) 중 한 항목이 300만페소를 초과한 경우만 제출한다. Account Information Form(AIF) or the Certificate of the independent CPA with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⑦ 전기 한도 초과된 세액공제액과 관련된 증빙, Proof of prior year's excess tax credits

여기서 회계정보서식(Account Information Form)은 BIR Form 1702 AIF¹⁸⁴⁾를 말한다. 서식에서 손익계산서 항목은 비과세 금액, 특별세율 적용대상 금액과 일반세율 적용대상 금액으로 세분화하여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와 관련한 항목은 각 계정별 기초금액과 기말 금액을 기재하며, 제조나 구매와 관련한 제조원가명세서나 상품원가명세서도 각 항목을 비과세 금액, 특별세율 적용대상 금액과 일반세율 적용대상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서식에서는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항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금액, 동업기업의 경우 파트너별 지분 등 상당히 상세하게 회계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부적격 유보소득의 신고

모든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이후 1년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02년 1월 15일까지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세무신고서는 BIR Form 1704(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Return for Corporations)¹⁸⁵⁾를 말한다.

183) 세금의 자동이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 시 납부할 세금이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184) 필리핀 투자위원회 홈페이지(<http://boiown.gov.ph/wp-content/uploads/2015/06/BIR-FORM-NO.-1702aif.pdf>)를 통해 확인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 국세청 관할 Authorized Agent Bank에 BIR Form 1704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에서는 관할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서면신고만 가능하며, 아직까지는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자 신고 방법으로는 신고하지 못한다.

부적격 유보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은 등록지 소재 지방 국세청(the Revenue District Office)에 직접 BIR Form 1704를 제출한다.

다. 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의 신고

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¹⁸⁶⁾이 발생한 법인은 거래 후 30일 내에 자본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자는 세무신고서식 BIR Form No. 1707(Capital Gains Tax Return for Onerous Transfer of Shares of Stocks Not Traded Through the Local Stock Exchange)¹⁸⁷⁾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납세자는 다시 동일한 자본이득에 대해 연간 총 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제출대상 세무신고서식은 BIR Form No. 1707-A(Annual Capital Gains Tax Return for Onerous Transfer of Shares of Stock Not Traded Through the Local Stock Exchange)¹⁸⁸⁾이다.

납세자는 지방 국세청 관할 Authorized Agent Bank에 자본이득세를 신고하거나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에서는 관할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를 통해 자본이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자본이득세도 전자신고 방법으로는 신고하지 못하며, 서면신고만 가능하다.

185) BIR Form 1704 서식은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30121704%20\(MAY2001\)%20final.pdf](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old_files/pdf/30121704%20(MAY2001)%20final.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6) 법인의 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발생한다.

187) 필리핀 국세청(<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income-tax-return.html#itr1707>)에서 BIR Form 1707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188) 필리핀 국세청(<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income-tax-return.html#itr1707>)에서 BIR Form 1707-A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신고기한의 연장

세법에서는 법인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연장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meritorious cases)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¹⁸⁹⁾

2. 납부¹⁹⁰⁾

신용카드,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는 국세청의 신고 및 납부 대행기관인 Authorized Agent Bank에서 관할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Authorized Agent Bank에서 납세자에게 납부확인서를 발행하며,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는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Authorized Agent Bank에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했음에도 Authorized Agent Bank가 국세청에 이를 전달하지 못해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는 납세자가 아닌 Authorized Agent Bank가 전적으로 부담한다.¹⁹¹⁾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에서는 관할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에 직접 납부한다.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일치한다. 따라서 예납신고 세액은 매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확정신고 세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한다.

189)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3. Extension of Time to File Return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_ftn28, 검색일자: 2019. 10. 24.

190) 필리핀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6. Payment and Assessment of Income Tax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및 국세청 신고 납부 안내(<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검색일자: 2019. 10. 23.

191) 국세청 시행규칙(Revenue Regulations 2-2017),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internal_communications_1/Digest%20RR%202017/Digest%20RR%202-2017_copy.pdf, 검색일자: 2019. 10. 24.

나. 부적격 유보소득세의 납부

부적격 유보소득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15일 이후 기간까지 부적격 유보소득세를 납부한다.

다. 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세의 납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등록되거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납세자는 개별 거래 후 30일 내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한다.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연간 총분리과세 대상 자본이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기한인 과세기간 종료 후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 분납

법인 납세자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마. 환급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세액공제액이나 분기 소득에 대한 예납세액 등의 합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다.

VIII 원천징수¹⁹²⁾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득이나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대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필리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크게 4가지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 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
- ② 부가급여(fringe benefits)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급여세
- ③ 예납적 원천징수세[Expanded withholding tax(EWT) 또는 Creditable withholding tax (CWT)]¹⁹³⁾
- ④ 완납적 원천징수세[final withholding tax(FWT)]¹⁹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제2장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외국법인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제3장 국제조세 부문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와 부가급여세에 대해 살펴본다.

1. 부가급여세¹⁹⁵⁾

2018년 1월 1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자(employer)가 고용인(employee)에게 지급한 후생복지 혜택(fringe benefit) 금액에 대해 35%의 세율로 부가급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후생복지 혜택이 법인의 거래, 사업이나 전문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거나, 법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면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때 고용인 단계의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를

192)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1. Administration-1.11.9. Withholding obligations, 검색일자: 2019. 11. 6.

193) 예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추후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194)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통해 수취인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이후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195) 필리핀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VI COMPUTATION OF GROSS INCOME-SEC. 33. Special Treatment of Fringe Benefit

‘그로스업(Gross-up)’한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결국 실제 지급한 부가급여를 0.65196)로 나눈 금액이 부가급여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부가급여세란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현금, 현물이나 서비스 혜택을 말하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택(housing)
- ② 지출 경비(expense account)
- ③ 차량
- ④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가사 참여 노동자
- ⑤ 저율 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금액의 차액
- ⑥ 헬스클럽이나 유사 사교 모임의 회원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
- ⑦ 해외여행비
- ⑧ 휴가 및 여가비
- ⑨ 고용인이나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 ⑩ 법정 의무 불입액을 초과한 생명보험, 건강보험과 그 외 보험 불입액

한편, 특별법(special laws)에 따라 면세되는 부가급여,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¹⁹⁷⁾, 재무부 규정이나 규칙에서 고용인에 대한 최소 혜택으로 규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급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¹⁹⁸⁾

가.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 수취인은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최종 납부할 소득세액과 기납부된 원천징수 세액의 차

196) 1에서 35%의 부가급여세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급여세율이 변경되면 Gross-up금액도 변경된다.

197)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고용인의 퇴직, 보험(insurance), 입원(hospitalization benefit plans) 시 고용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불입분이다.

198) 필리핀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7. Withholding of Tax at Source 및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1. Administration-1.11.9. Withholding obligations-1.11.9.1.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검색일자: 2019. 11. 6.

액을 추가 부담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나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후 소득이나 대가를 수령한 자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초과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또는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다른 세금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인. 사업이나 거래활동이 없는 법인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사업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
- ③ 부동산의 양도, 교환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 사업이나 거래활동이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정부기관. 정부기관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⑤ 선거 캠페인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선거 후보나 정당,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에게 선거 캠페인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

나. 완납적 원천징수¹⁹⁹⁾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얻은 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 세액의 과소신고나 미신고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나 원천징수 대리인이 과소납부나 미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진다.

다. 원천징수세율²⁰⁰⁾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인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은 다음 표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예납적 또는 완납

199) 필리핀 Tax Code TITLE II TAX ON INCOME-CHAPTER IX RETURNS AND PAYMENT OF TAX-SEC. 57. Withholding of Tax at Source 및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1. Administration-1.11.9. Withholding obligations-1.11.9.1.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검색일자: 2019. 11. 6.

200)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0. Rates-1.10.3. Withholding taxes 검색일자: 2019. 11. 6.

적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완료되나, 채무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의 예납적 원천징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천징수 전 소득의 종류, 성격, 원천징수 방법(예납적 또는 완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이 얻은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이자소득은 2~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로열티소득은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일부 5%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존재한다.

기술지원 및 서비스 관련 소득은 발생한 총이익의 규모에 따라 72만페소를 초과하면 15%의 세율로, 그 외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임대소득은 산업적이나 상업적인 장비의 사용대가를 의미하며, 열거된 임대소득에 한하여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자본이득의 경우 자본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양도는 6%의 세율로, 사업용 일반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양도는 양도가액과 업종에 따라 1.5~6%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2-7〉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소득 종류	구분	세율 (%)	예납적 또는 완납적 원천징수
배당소득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
이자소득	일반적인 경우	-	-
	'상위 20,000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무(loan)와 관련된 이자 지급액	2	예납적
	Offshore Banking Units 이나 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에 대한 이자 지급	10	완납적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예금 대리 및 신탁 기금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에서 얻은 수익이나 기타 금전적 이익	20	완납적
	확대된 외화예치 시스템(expanded foreign currency deposit system)에 따른 외화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15	완납적
	채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20	예납적

소득 종류	구분		세율 (%)	예납적 또는 원천징수	
로열티소득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20	완납적	
	도서, 문학작품, 음원에 대한 로열티		10	완납적	
	영상물(cinematographic film)의 임대 등		5	예납적	
기술지원 및 서비스 ¹⁾	최근 사업연도의 총이익(gross income)이 72만페소 이하인 경우		10	예납적	
	최근 사업연도의 총이익(gross income)이 72만페소를 초과한 경우		15	예납적	
임대소득 ²⁾	사업용 부동산의 계속 사용이나 소유를 위한 임대, 금융리스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동산(personal property)의 사용이나 소유를 위하여 연간 1만페소를 초과한 금액으로 임대, 위성·송신장비·전력기기(pole) 임대, 광고게시판(billboard)과 영상물 임대		5	예납적	
자본이득 ³⁾	자본자산으로 분류된 토지, 건물의 양도		6	완납적	
	일반자산(ordinary asset)으로 분류된 부동산의 양도, 교환이나 이전	양도자가 부동산업(real estate business)을 영위	양도가액이 50만페소 이하인 경우	1.5	예납적
			양도가액이 50만페소 초과 200만페소 이하인 경우	3	예납적
			양도대가가 200만페소를 초과한 경우	5	예납적
양도자가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6	예납적		



주: 1) 기술지원 및 서비스 관련 소득은 필리핀 거주자로 경영자문이나 기술 분야 컨설팅을 제공한 자가 얻은 소득이며, 일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활동에 대한 대가는 로열티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임대소득은 예를 들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대가를 의미함


3) 정부 등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자료: IBFD, Philippines-Corporation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10. Rates-1.10.3. Withholding taxes, 검색일자: 2019. 11. 6.

[별첨 1] 법인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For BIR Use Only		BIR Form No. 1702-RT January 2018 (ENCS) Page 1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Internal Revenue		1702-RT 01/18ENCS P1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1 For <input type="checkbox"/> Calendar <input type="checkbox"/> Fiscal		3 Amended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Short Period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 Alphanumeric Tax Code (ATC)	
2 Year Ended (MM/20YY) ____/20____						<input type="checkbox"/> IC 055 <input type="checkbox"/>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Part I - Background Information							
6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7 RDO Code			
8 Registered Name (Enter only 1 letter per box using CAPITAL LETTERS)							
9 Registered Address (Include complete address. If the registered address is different from the owner address, go to the RDO to update registered address by using DR Form No. 1469)							
10 Date of Incorporation/Organization (mm/yyyy)						11 Contact Number	
12 Email Address						13A ZIP Code	
13 Method of Deductions <input type="checkbox"/> Itemized Deductions (Section 34 (A-J), NIRC) <input type="checkbox"/> Optional Standard Deduction (OSD) - 40% of Gross Income (Section 34(L), NIRC, as amended)							
Part II - Total Tax Payable							
14 Tax Due (From Part IV item 43)				15 Less: Total Tax Credits/Payments (From Part IV item 33)			
16 Net Tax Payable / (Overpayment) (Item 14 Less Item 15) (From Part IV item 36)				17 Surcharge			
18 Interest				19 Compromise			
20 Total Penalties (Sum of items 17 to 19)				21 TOTAL AMOUNT PAYABLE / (Overpayment) (Sum of items 16 and 20)			
If overpayment, mark one (1) box only. (Once the choice is made, the same is irrevocable)							
<input type="checkbox"/> To be refunded		<input type="checkbox"/> To be issued a Tax Credit Certificate (TCC)		<input type="checkbox"/> To be carried over as tax credit for next year/quarter			
We declare under the penalties of perjury that this return, and all its attachments, have been made in good faith, verified by us, an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are true and corre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as amended, and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authority thereof. If signed to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indicate TIN and effect authorization effect.							
Signature over Printed Name of President/Principal Officer/Authorized Representative						22 Number of Attachments	
Title of Signatory						TIN	
Signature over Printed Name of Treasurer/ Assistant Treasurer						TIN	
Part III - Details of Payment							
Particulars		Drawee Bank/Agency	Number	Date (MM/DD/YYYY)		Amount	
23 Cash/Bank Debit Memo							
24 Check							
25 Tax Debit Memo							
26 Others (specify below)							
Machine Validation/Revenue Official Receipt Details [If not filed with an Authorized Agent Bank (AAB)]						Stamp of Receiving Office/AAB and Date of Receipt (RO's Signature/Bank Teller's Initial)	


BIR Form No. 1702-RT January 2018 (ENC3) Page 2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1702-RT 0118ENC3 P2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Registered Name		
0 0 0 0 0		
Part IV – Computation of Tax <small>(Do not enter Credits, all Credits on last page. If excess credits)</small>		
27 Sales/Receipts/Revenues/Fees		
28 Less: Sales Returns, Allowances and Discounts		
29 Net Sales/Receipts/Revenues/Fees (Item 27 Less Item 28)		
30 Less: Cost of Sales/Services		
31 Gross Income from Operation (Item 29 Less Item 30)		
32 Add: Other Taxable Income Not Subjected to Final Tax		
33 Total Taxable Income (Sum of Items 31 and 32)		
Less: Deductions Allowable under Existing Law		
34 Ordinary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From Part IV Schedule I Item 18)		
35 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From Part IV Schedule II Item 5)		
36 N O L C O <small>(Only for those liable under Sec. 27(A)(1), Sec. 28(A)(1)&(2) if the Tax Code is amended) (From Part IV Schedule II Item 6)</small>		
37 Total Deductions (Sum of Items 34 to 36)		
<i>OR (in case taxable under Sec. 27(A) & 28(A)(1))</i>		
38 Optional Standard Deduction (OSD) (40% of Item 33)		
39 Net Taxable Income/(Loss) (If Itemized, Item 33 Less Item 37; If OSD, Item 33 Less Item 38)		
40 Applicable Income Tax Rate		%
41 Income Tax Due other than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Item 39 x Item 40)		
42 MCIT Due (2% of Item 33)		
43 Tax Due (Income Tax Due in Item 41 OR the MCIT Due in Item 42, whichever is higher) (To Part II Item 19)		
Less: Tax Credits/Payments (attach proof)		
44 Prior Year's Excess Credits other than MCIT		
45 Income Tax Payment under MCIT from Previous Quarters		
46 Income Tax Payment under Regular/Normal Rate from Previous Quarters		
47 Excess MCIT Applied this Current Taxable Year (From Part IV Schedule IV Item 4)		
48 Creditable Tax Withheld from Previous Quarters per BIR Form No. 2307		
49 Creditable Tax Withheld per BIR Form No. 2307 for the 4th Quarter		
50 Foreign Tax Credits, if applicable		
51 Tax Paid in Return Previously Filed, if this is an Amended Return		
52 Special Tax Credits (To Part V Item 58)		
Other Tax Credits/Payments (specify)		
53		
54		
55 Total Tax Credits/Payments (Sum of Items 44 to 54) (To Part II Item 13)		
56 Net Tax Payable / (Overpayment) (Item 43 Less Item 55) (To Part II Item 16)		
Part V – Tax Relief Availment		
57 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Item 35 of Part IV x Applicable Income Tax Rate)		
58 Add: Special Tax Credits (From Part IV Item 52)		
59 Total Tax Relief Availment (Sum of Items 57 and 58)		

BIR Form No. 1702-RT January 2018 (ENCS) Page 3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1702-RT 01/18/ENCS P3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0 0 0 0 0			Registered Name		
Part VI - Schedules (2000) (Use Section 4100 for the appropriate filing year)					
Schedule I - Ordinary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1 Amortizations					
2 Bad Debts					
3 Charitable and Other Contributions					
4 Depletion					
5 Depreciation					
6 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					
7 Fringe Benefits					
8 Interest					
9 Losses					
10 Pension Trusts					
11 Rental					
12 Research and Development					
13 Salaries, Wages and Allowances					
14 SSS, GSIS, Philhealth, HDMF and Other Contributions					
15 Taxes and Licenses					
16 Transportation and Travel					
17 Others (Deductions Subject to Withholding Tax and Other Expenses) (Specify below.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a Janitorial and Messengerial Services					
b Professional Fees					
c Security Services					
d					
e					
f					
g					
h					
i					
18 Total Ordinary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Sum of items 1 to 17) (To Part IV item 34)					
Schedule II - 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Description		Legal Basis		Amount	
1					
2					
3					
4					
5 Total Special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Sum of items 1 to 4) (To Part IV item 35)					

BIR Form No. 1702-RT January 2019 (ENCS) Page 4		Annual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Non-Individual Taxpayer Subject Only to REGULAR Income Tax Rat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000000			Registered Name		
Schedule III - Computa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 Over (NOLCO)					
1		Gross Income (From Part IV Item 32)			
2		Less: Ordinary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From Part VI Schedule I Item 18)			
3		Net Operating Loss (Item 1 Less Item 2) (To Schedule IIIA, Item 74)			
Schedule IIIA - Computation of Available Net Operating Loss Carry Over (NOLCO)					
		Net Operating Loss		B) NOLCO Applied Previous Year's	
	Year Incurred	A) Amount			
4					
5					
6					
7					
Continuation of Schedule IIIA (Item numbers continue from table above)					
		C) NOLCO Expired		D) NOLCO Applied Current Year	
		E) Net Operating Loss (Unapplied) (E = A Less (B + C + D))			
4					
5					
6					
7					
8		Total NOLCO (Sum of Items 4B to 7B) (To Part IV, Item 26)			
Schedule IV - Computation of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Year	A) Normal Income Tax as Adjusted	B) MCIT	C) Excess MCIT over Normal Income Tax	
1					
2					
3					
Continuation of Schedule IV (Item numbers continue from table above)					
D) Excess MCIT Applied/ Used in Previous Years		E) Expired Portion of Excess MCIT		F) Excess MCIT Applied this Current Taxable Year	
		G) Balance of Excess MCIT Allowable as Tax Credit for Successive Years (G = C Less (D + E + F))			
1					
2					
3					
4		Total Excess MCIT Applied (Sum of Items 1F to 3F) (To Part IV Item 47)			
Schedule V - Reconciliation of Net Income per Books Against Taxable Income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1		Net Income/(Loss) per Books			
2		Add: Non-Deductible Expenses/Taxable Other Income			
3					
4		Total (Sum of Items 1 to 3)			
5		Less: A) Non-Taxable Income and Income Subjected to Final Tax			
6					
7		B) Special Deductions			
8					
9		Total (Sum of Items 5 to 8)			
10		Net Taxable Income/(Loss) (Item 4 Less Item 9)			

자료: 필리핀 국세청, BIR Form No. 1702-RT, <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income-tax-return.html>, 검색일자: 2019. 12. 23.

[별첨 2] 법인 부적격 유보소득세에 대한 세무신고서

 Republic of the Philippines Komisyon ng Pangalaganap na Inaangkop na Kabisaminhan Ng Pantawag na Inaangkop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Return		BIR Form No. 1704 May 2001	
Fill in all applicable boxes. Mark all appropriate boxes with an "X".					
1 For the Year Ended (MM/YYYY)		2 Calendar <input type="checkbox"/> Fiscal <input type="checkbox"/>		3 Amended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No. of sheets attached		5 A.T.C.		<input type="text"/>	
Part I Background Information					
6 Taxpayer's Name		7 POC Code		8 Line of Business Occupation	
<input type="text"/>					
9 Registered Address					
<input type="text"/>					
10 Zip Code					
<input type="text"/>					
12 Date of Incorporation (MM/YYYY)		13A		Date of Registration with BIR (MM/YYY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art II Computation of Tax					
13 Taxable Income		14 Add: Income exempt from Tax		15 Income excluded from Gross Income	
<input type="text"/>		14A <input type="text"/> 14B <input type="text"/>		15A <input type="text"/> 15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C <input type="text"/> 14D <input type="text"/>		15C <input type="text"/> 15D <input type="text"/>	
16 Income subject to Final Tax		16A <input type="text"/> 16B <input type="text"/>		16C <input type="text"/> 16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NOLCO) deducted		17A <input type="text"/>		17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8 Total (Sum of Item 13 and Item 17B)		18 <input type="text"/>		19 <input type="text"/>	
19 Less: Income tax paid/payable for the taxable year		19 <input type="text"/>		20 <input type="text"/>	
20 Dividends actually or constructively paid/issued		20 <input type="text"/>		21 <input type="text"/>	
21 Amount reserved for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See Schedule I)		21A <input type="text"/>		21B <input type="text"/>	
22 Improperly Accumulated Taxable Income (Item 18 less Item 21B)		22 <input type="text"/>		23 <input type="text"/>	
23 Tax Rate		23 <input type="text"/>		24 <input type="text"/>	
24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Item 22 multiply by Item 23)		24 <input type="text"/>		25 <input type="text"/>	
25 Add: Penalties		25A <input type="text"/> 25B <input type="text"/> 25C <input type="text"/> 25D <input type="text"/>		26 <input type="text"/>	
26 Total Amount Payable (Sum of Item 24 and Item 25D)		26 <input type="text"/>		27 <input type="text"/>	
We declare, under the penalties of perjury, that this return has been made in good faith, verified by us, an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is true and corre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as amended, and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authority thereof.					
27 <input type="text"/>		28 <input type="text"/>		29 <input type="text"/>	
President/Vice-President/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over printed Name)		Treasurer/Asst. Treasurer/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over printed Name)		Tax Agent Accreditation No.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ommunity Tax Certificate Number		Place of Issue		Amoun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art III Details of Payment					
Particulars		Agency		Amount	
32 Cash/Bank		Number		Dat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4 Check		Number		Dat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5 TTY Debit Memo		Number		Dat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6 Others		Number		Dat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Stamp of Receiving Office and Date of Receipt					
<input type="text"/>					
Attach Validation/Reverse Official Receipt Details (if not filed with the bank)					

Schedule I		Schedule of amount reserved for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emanating from the covered year's taxable income)	
Allowance for the increase in the accumulation of earnings up to 100% of the paid-up capital			
Paid-up Capital as of balance sheet date (covered year)	₱	_____	
Less: Accumulated Retained Earnings as of previous year		_____	
Allowable increase considered as reasonable accumulation			₱ _____
Reserved for definite corporate expansion projects or programs		_____	
Reserved for building, plants or equipment acquisition		_____	
Reserved for compliance with any loan covenant or pre-existing obligation established under a legitimate business agreement		_____	
Earnings with legal prohibition against distribution For subsidiaries of foreign corporations, Earnings intended or reserved for investment within the Philippines		_____	
Total amount reserved for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To Item No. 21)			₱ _____

BIR FORM NO. 1704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IAET) Return
Guidelines and Instructions

자료: 필리핀 국세청, BIR Form No. 1704, <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income-tax-return.html>, 검색일자: 2019. 12. 23.

제2장 | 개인소득세

I 서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 세법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목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인과 개인의 과세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의 ‘Title II. Tax on Income’ 제22조부터 제59조까지 개인과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개인소득세도 개인의 총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나, 법인 소득세에 비교하여 소득 항목별 다른 소득 및 비용 산정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율 또한 납세자의 상황과 소득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필리핀 개인납세자의 일반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 사용료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방법과 납세절차를 기술한다.

II 납세의무자

필리핀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필리핀 시민(Filipino citizens), 비거주자 시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통상적인 다른 국가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거주자 시민은 필리핀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나머지 분류의 납세자는 필리핀 원천소득에만 과세된다.²⁰¹⁾ 그러나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의 과세방법은 거주자 시민이나 거주자 외국인과 동일하다.

필리핀 시민은 필리핀 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²⁰²⁾

- ① 1987년 헌법 채택 시 필리핀의 시민 지위가 존재하던 개인
- ② 출생 시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의 시민인 경우
- ③ 1973년 1월 17일 이전 필리핀 모계를 가진 출생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경우
- ④ 법률에 따라 귀화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이러한 필리핀 시민 판정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근원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은 헌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필리핀 시민이 될 수 있다.²⁰³⁾ 대표적인 예로 법률 9225(Republic Act 9225) 또는 시민권 보유와 재취득 법률(the 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이 있다.

1. 거주자 판정

거주자 시민의 정의는 소득세법(National Income Revenue Code, NIRC)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비거주자가 아니라면 필리핀 시민은 거주자 지위에 있다고 간주된다. 거주성 판단은

201)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202) GOVPH Official Gazette, <https://www.officialgazette.gov.ph/constitutions/1987-constitution/>, 접속일자: 2019. 10. 11.

203) Divina Law, <https://divinalaw.com/naturalization-pathway-filipino-citizenship/>, 접속일자: 2019. 10. 11.

필리핀의 거소가 단지 일시적인지, 거주 의도 및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리핀 거소가 필수적인지 등에 따라 구분된다.²⁰⁴⁾

거주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거주 기간과 성격에 대한 개인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순히 정해지지 않은 기간 내에 국외로 진출하겠다는 의도만으로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한정적인 거주 의도가 없다면 거주자로 판정된다.²⁰⁵⁾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력으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²⁰⁶⁾ 또한 2년 이상 필리핀 내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는데 업무 배치부터 종료 후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까지 지위가 유지되며, 업무 종료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이 이루어진다.²⁰⁷⁾

이 외에 비거주자 시민,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비거주자 시민은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된다.²⁰⁸⁾

- ① 필리핀 시민으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영구적 의도와 더불어 물리적 국외 소재지의 사실 관계가 과세관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② 필리핀 시민으로서 이민 또는 영속적 기준의 고용을 위해 해외로 거주를 이동한 때가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필리핀 시민으로서 국외에서 근무하고 소득이 발생하면서 고용이 과세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도록 하는 경우
- ④ 이전 비거주자 시민으로 판정되었던 시민으로 필리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거소를 옮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중 필리핀으로의 이주 이전까지 발생한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되는 경우

이러한 거주자 등의 입증을 위해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필리핀을 떠나 국외에서 영구적으

204)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KOOE18?bc=W1siRG9jdW1lbnQiLCJvcHJvZHVjdC90YXgvZG9jdW1lbnQvMjUzOTMxMTcyMjQxXV0-62c856440508470ee32f5b5d69fc5e40284747be&jcsearch=bn%2520gtg2%2520ph%2520%25286%2529%25281%2529#section\(5\)](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KOOE18?bc=W1siRG9jdW1lbnQiLCJvcHJvZHVjdC90YXgvZG9jdW1lbnQvMjUzOTMxMTcyMjQxXV0-62c856440508470ee32f5b5d69fc5e40284747be&jcsearch=bn%2520gtg2%2520ph%2520%25286%2529%25281%2529#section(5)), 검색일자: 2020. 1. 4.

20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ph_s_1, 검색일자: 2019. 10. 11.

206) Deloitte, International Tax Philippines Highlights 2019, 2019. 1. p. 3.

207)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208) NIRC Section 22 (E).

로 거주하거나 사정상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경우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하며, 반대로 비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⁹⁾ 이민국과 과세관청은 비자 재발급 등에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 기록을 과세관청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²¹⁰⁾

2. 납세자 단위

가족 단위의 과세가 없어 규정상 개인은 다른 배우자와 구분하여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배우자 간 소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배타적으로 획득·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배우자 간 배분한다.²¹¹⁾

209) NIRC Section 22 (F)&(G).

210)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211)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ph_s_1, 검색일자: 2019. 10. 11.

Ⅲ 과세대상 소득

거주자 시민은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에 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비거주자도 필리핀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²¹²⁾ 다만, 국외계약자의 지위에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필리핀 시민인 경우 필리핀 원천소득에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선박의 승무원이 필리핀 시민이면서 국제 거래에만 참여하는 선박의 승무원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외계약자로 간주된다.²¹³⁾

과세소득은 소득세법(NIRC)에서 규정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과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소득은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으로는 생명보험, 운동경기에서의 상금, 만기 5년 이상의 채권 등의 증서 양도소득 등이 있다. 특히 필리핀은 1개월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을 13번째 달에 지급(13th month pay)하는 것과 크리스마스 성과급, 생산수당, 의료 관련 수당 또는 보전금액, 기념품 또는 기념수당 등을 합하여 9만페소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²¹⁴⁾

과세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운용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용료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소득, 전문가의 파트너십 지분에 해당하는 파트너의 소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자본소득은 일부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²¹⁵⁾ 통상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²¹⁶⁾

1. 사업소득

가. 일반적인 사업소득²¹⁷⁾

납세자의 사업 또는 비사업 소득을 합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리핀 법령에는

212) NIRC Section 23 (A)~(C).

213) NIRC Section 23 (C).

214)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21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ph_s_1, 검색일자: 2019. 10. 12.

216) NIRC Section 22 (Z).

217)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사업소득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산하여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은 근로소득은 과세소득 산정시 특정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은 비용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기술목적상 사업의 수행, 전문가, 천직(vocation), 거래, 영업, 상업, 판매, 자산의 사업적 매매 등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으로 지칭한다.

개인의 사업소득 산정 방법은 총수입에서 허용되는 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트너십²¹⁸⁾

파트너십은 통상적으로 법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전문가 파트너십(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 GPP)이 전문가 사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사업 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순소득에서 자신에게 배분되었거나 배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총소득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GPP의 소득 산정은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가 사업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항목별 비용을 공제하거나 선택적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GPP단계에서 비용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파트너는 이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파트너가 GPP의 배분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공제나 선택적 표준공제는 다른 사업소득에만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소득의 72만페소를 초과하면 15%, 이외의 경우 10%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2. 배당소득

배당은 법인에 의한 이익을 기반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분으로 정의된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내국 법인이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된다.²¹⁹⁾

218)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219)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3. 이자소득²²⁰⁾

이자란 금전의 차입 사용에 의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계약상의 금액으로 정의되며, 채권의 할인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소득의 원천지 판정에서 거주자, 내국법인 등의 채권, 차입 등에서 획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의 해외 판매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거주자 및 필리핀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외국인(Non-Resident Alien Engaged in Trade or Business, NRAETB)에 대한 국내 원천 이자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거나 공제가능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이자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가 허용되며, 비용이 이자소득에 배분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자소득 중 다음과 같은 일부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① 시민, 거주자 및 NRAETB의 이자소득으로 저축, 일반적인 또는 개인 신탁펀드, 예금, 투자관리계좌 및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서 인증한 여타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장기 계좌 또는 투자로 계좌나 투자가 5년 이상 초과하여 유지하는 경우
장기 계좌 또는 투자는 5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은행에서만 발행되며, 본인 명의(법인이거나 은행의 신탁계좌 등이 아닌)로 개설되어야 하고 1만페소 단위나 필리핀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타 단위로 유지되어야 함
이자소득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환차익이나 거래이익은 비과세되지 않음. 5년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이 과세됨(아래 V.1 세율 참조)
- ② 외국 정부 및 이의 소유·통제하의 금융기관, 외국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이자소득
- ③ 비거주자와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역외은행기구나 확장된 외환예금기구 또는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국내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

220)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4. 사용료소득·임대소득(자산의 이용 관련)²²¹⁾

가. 사용료소득

시민과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은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될 시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수동적 소득이란 사용료 관련 행위가 납세자의 주요 목적 활동으로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적 성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사용료는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는 프로그램의 사용 성격에 따라 사용료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은 자산 또는 이의 지분이 필리핀에 소재하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

나. 임대소득(자산의 이용 관련 소득)

법령에서 부동산 및 임대소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진 않다. 규칙과 사법적 판단하에 민법 4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① 토지, 건물, 도로 및 토지에 부착된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
- ② 토지에 부착되거나 부동산의 일부분인 나무, 초목, 과실수
- ③ 부동산에 부착되어 이의 분리 시 주 목적을 위한 형질을 변경하거나 유의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모든 것
- ④ 토지, 건물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조각상, 그림 등
- ⑤ 토지, 건물에 연관된 산업 또는 작업 목적의 기계, 설비 등
- ⑥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영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의 집, 별집, 사육장 등
- ⑦ 지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광산, 채석장 및 지류
- ⑧ 강, 호수, 해안가에 고정되거나 유류하는 선착장 및 구조물
- ⑨ 지상권 등

221)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임대소득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임차인, 사용자, 보유자 이외의 권리가 없거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산의 사용과 연계된 모든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국내 원천소득은 임대자산인 유·무형자산의 소재지가 국내이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과세관청의 규칙(BIR regulation)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의 주요 기간 동안 대부분 상각되지 않는 자산의 임대를 의미하며, 반대로 금융리스 또는 총지급리스(full payment lease)는 의무계약기간 동안 지급액이 리스제공자의 총투자액 및 차입원가와 이익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임대료에 모든 투자원가 및 이익에 의존하지 않고 향후 자산 매각 또는 재임대를 기대한다. 금융리스의 의무계약기간은 취소불가능한 기간으로 최소한 7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리스에서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5. 자본소득²²²⁾

자본소득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서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의 주식 양도와 자본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의 항목과 산정 방법은 법인의 과세 방법과 동일하다. 자본소득은 보유기간이 적용되어 12개월 이상을 보유하면 소득의 50%만 과세되지만, 15%의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금액의 0.006%의 거래세가 적용되는 상장주식, 자본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금액의 6%가 적용되는 필리핀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보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²²³⁾

가. 부동산

자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교환·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양도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6% 분리과세한다. 다만, 정부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는 기본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222)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223)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주 거주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양도금액이 양도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 거주지의 취득 또는 건축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한다. 새로운 주 거주지에 일부분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부분만큼 자본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주 거주지 양도에 따른 자본소득 비과세는 10년에 1회만 허용된다.

나. 주식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차익은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매매업자의 자본소득은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주식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또한, 5년 이상의 만기인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권 양도, 교환, 상환과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비과세된다.

6. 근로소득(compensation income)²²⁴⁾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로 인해 근로자가 수취하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급여, 상여금, 수수료, 현물지급 등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고용에 따른 근로 대가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원 또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면 관련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수당(fringe benefits)이 부가수당세(fringe benefits tax) 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후 보수 지급 시 고용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물의 경우 사용인의 건강, 업무능력, 만족감, 효율 및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의 최소한(de minimis)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과세가 면제된다.

근로 대가를 현금 이외의 주식, 채권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상의 대가로 측정되며, 근로가 약정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가격이 수취한 보상의 대가로 인정된다. 주거 제공의 경우 지급금액, 임차료 가치 또는 제공된 사택의 감가상각 가치의 50%는 회사 사택 또는 주거 공간이 제공되면서 이러한 제공이 사용자의 사업에서 사용인의 위치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거나 주거 및 관련 비용의 보전액이 제공되는 경우 사용인의 과세소득으로 본다. 사용자의 사용인에게 자금대여

224)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는 이자율이 12%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과세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차량의 취득가액을 5로 나눈 가격의 50%를 과세소득으로 본다. 의료비 지원은 진료나 연간 검진 등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연간 1만페소까지 최소한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를 면제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3번째 월 지급과 기타 혜택으로 간주한다. 사용인에게 제공되는 생명 또는 건강보험 및 기타 보험료는 현행 법령(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험체계 및 Government Insurance Service Scheme, 정부보험서비스체계) 및 이와 유사한 규정에 의해 제공되면서 사용인 집단보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소득으로 본다. 이 외에 기타 사용자에 의해 보상되는 사용인의 비용(예, 휴대폰 비용)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여비·교통비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과세소득이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발생한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비용 지급액은 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휴가수당 또는 질병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만, 사적 사용인에 대한 연간 10일 이하의 미사용 휴가 보상 지급이나 통상적인 보상 대가는 비과세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사용인이 주식을 취득할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가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그 차액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취득한 주식에 제약이 존재하여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제약이 해지·만료 또는 주식 이전 시 과세된다.

근로소득은 노무 제공이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면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반대로 필리핀 외의 지역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소득은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적용하에서 통상적으로 국내외 원천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비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²²⁵⁾ 즉, 지급 장소나 지급 방법,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급자의 거주지는 근로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²⁶⁾

7. 기타소득²²⁷⁾

가. 퇴직소득

신퇴직법(the New Retirement Law)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나 과세관청의 적격 퇴직급여제도하의 지급은 사용인이 최소 10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점에 50세 이상인

22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ph_s_1, 검색일자: 2019. 10. 11.

226)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227)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경우 비과세한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는 1회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1회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에 불입하는 납입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적 지분 및 퇴직 계좌(Personal Equity and Retirement Account) 규정에 따른 일시적 연금 또는 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 소득은 납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나. 경품 등의 승리소득

시민, 거주자인 외국인, NRAETB가 수취하는 필리핀 원천의 경품 및 기타 승리에 따른 소득은 20%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된다. 다만, 1만페소 이하의 경품 등의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① 1만페소 이하의 필리핀 사전경품 행사(Philippine Charity Sweepstakers and Lotto)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에서 운동협회가 지급하는 상품과 상금
- ③ 종교·자선·과학·교육·예술·문학 등의 성과로 수령하는 상품과 상금으로 수상자가 경쟁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상품 등의 대가로 향후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다. 보험금 수령액

사망보험금은 비과세하나 지급받는 금액에 이자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다른 소득에 합산된다. 그러나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형태와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의 계약만료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IV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 또는 전문가 소득에 대해 8%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한 납세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 필요경비²²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업소득 산정 방법은 총수입에서 허용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상적이면서 필수적인 사업 등의 비용으로 급여, 여비, 임차료, 사용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함
- ② 이자비용으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의 일정 비율과 동등한 금액으로 차감되는 부분. 다만, 사업상 취득된 자산에 대한 이자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될 수 있음
- ③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세금을 포함한 제세공과금. 다만, 소득세, 부동산세, 증여세(donor's tax) 및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함
- ④ 통상손실과 자본손실
- ⑤ 채권 제각
- ⑥ 감가상각
- ⑦ 정부 및 이의 기관, 정치단체, 인증된 종교·자선·과학·청소년·스포츠·문화·교육 목적의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과 비정부 기관에 대한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될 수 있음(특정 조건하에서는 전액 공제됨)
- ⑧ 연구개발비. 납세자는 최소 60개월까지 이연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 ⑨ 사용인의 연금신탁 불입액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을 제외한 사업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비용공제를 표준공제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인 총수입액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총수입액의 8%의 납부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목별 공제 대신에 총수입금액의 40%를 공제하는 선택적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228)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 시 재무제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 파트너십과 파트너는 선택적 표준공제를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 단계 중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표준공제는 소득신고 시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택적 표준공제를 신청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모든 분기 및 연간 신고에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근로와 관련된 비용공제나 선택적 표준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전이나 현물로 정부 및 이의 하위기관, 정치단체, 인증된 내국 법인이나 단체로서 종교·자선·과학·청소년·운동·문화·교육 목적이나 재향군인의 갱생을 위한 인증된 내국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기구, 비정부기구로 이의 소득이 주주나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단체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개인의 사업 또는 전문가 사업에서 창출되는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공제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 ① 국가경제개발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결정된 국가우선계획(National Priority Plan)에 따라 배타적으로 우선적 활동에 사용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이의 기관 및 정치단체로의 기부
- ② 조약, 합의, 정부 및 외국 기관과의 약정 또는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특정 외국 기관과 국제기구로의 기부
- ③ 목적과 배분을 충족하는 인증된 비정부기관으로서 기부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15일 이내에 기부금을 사용하면서 관리 비용이 총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 의료비, 보험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2. 소득공제²²⁹⁾

2018년 1월 1일 이후 필리핀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어떠한 인적공제나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세율의 비과세 구간을 두고 있다. 다만, 앞서 근로소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13월 지급과 기타 혜택을 합하여 최대 9만페소까지 공제될 수 있다.

229)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V 세율 구조 및 세액 산출

1.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²³⁰⁾

가. 과세표준

보험 등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실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발생 과세연도 이후 연속되는 3개 과세기간의 총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납세자가 과세면제 또는 우대세율체계(preferential tax regime)를 적용받거나 40%의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월되지 않는다. 손실 이월 공제는 사업 소유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유지될 수 있는데 사업 명목가치의 75% 이상이 동일인에 의해 소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을 뿐더러 자본소득 내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 ① 자본자산의 양도, 교환에서 발생한 손실은 자본자산의 양도, 교환에서 발생한 이익의 한도까지 공제된다.
- ②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분류의 주식 자본소득에서만 공제된다.
- ③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순자본손실에는 보유 기간이 적용되어 자본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손실의 50%만이 인식된다. 자본손실은 다음 과세연도까지 이월될 수 있다.

나. 적용세율

거주자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실질적으로 5단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5단계 과세표준 이전의 구간인 25만페소까지는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구간이다. 누진세율은 20~35%까지이며, 다른 국가들의 매년 물가조정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30)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표 2-8〉 일반세율

(단위: 페소, %)

과세표준 구간			세율
-	~	25만	0
25만	~	40만	20
40만	~	80만	25
80만	~	200만	30
200만	~	800만	32
800만	~		35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한편, 2023년부터는 일부 구간의 세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현행 20%, 25%, 30%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5%p씩 인하하며, 32%구간은 30%로 2%p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²³¹⁾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사업자 개인과 총수입 및 기타 영업외수익이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인 총수입액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전문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누진세율 및 비율세 대신에 과세표준 25만페소를 초과하는 총수입에 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²³²⁾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납세자나 파트너십에서 이미 비용공제를 받은 소득을 분배받는 파트너 및 부가가치세 면제자를 제외한 비율세(percentage tax) 적용대상자인 납세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모두 있는 개인은 이를 구분하여 과세된다. 근로소득은 일반세율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 부분은 순수 사업자 개인과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적용되며 300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순수 사업자 외는 달리 25만페소 미만에 대한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서 기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별도과세 선택권으로 인해 필리핀의 세액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소득만이 존재하는 경우 및 두 소득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과거 다국적 기업, 이의 지역본부, 역외 은행, 정유계약자 등의 사용인에게 제공되는 우대세율 체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일반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다.

231) Senate of the Philippines,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dication (TRAIN) Law, 2018, p.2.

232)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자본소득 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5~20%의 별도 세율로 과세된다.

〈표 2-9〉 자본소득세율

(단위: %)

소득 항목	세율
통상적 이자소득	20
도서, 문학, 작곡 등의 사용료	10
통상적인 사용료	20
상금(1만페소 이하)	누진세율
상금(1만페소 초과)	20
일반적인 도박·복권 등 소득	20
1만페소 이하의 도박·복권 소득	면제
확장외환예금 체계하의 소매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10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20
파트너십, 합작회사 등의 소득 배분액	10
비거주자에 대한 배분액	20
자본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 부동산 소득	6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15
비거주자 소득 1십만페소 이하	5
비거주자 소득 1십만페소 초과	10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장기 투자 이자소득(5년 이상)	면제
4~5년	5
3~4년	12
3년 미만	20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필리핀 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 개인은 일반적인 소득에 25%의 단일세율로, 이외의 양도소득은 5~10%로 과세된다.

〈표 2-10〉 비사업자 비거주자의 세율

(단위: %)

소득 구분	세율
모든 필리핀 원천소득	25
부동산 양도소득	6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
1십만페소 미만	5
1십만페소 초과	10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11.

2. 세액공제²³³⁾

시민은 사업소득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정한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지분과 퇴직계좌(Personal Equity and Retirement Account, PERA)의 납입자는 총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 세액으로 공제된다.

3. 최저한세

개인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33)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VI 신고·납부 및 징수 체계

1. 신고·납부²³⁴⁾

과세소득이 산정되는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연간 회계기간을 기초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 월력(1/1~12/31 기준)이 적용되는데 납세자가 선택한 12개월의 다른 회계기간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과 신탁은 회계기간을 월력으로 정하도록 한다.²³⁵⁾

따라서 원칙적으로 NRANETB 이외의 개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을 신고(BIR Form 1700 또는 Form 1701)해야 한다. 신고와 더불어 납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페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10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²³⁶⁾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① 근로소득만 존재하며 소득이 연간 25만페소 이하인 경우
- ② 과세기간 동안 한 사용자에게만 고용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 ③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④ 소득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또한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은 대체신고(substituted filing)에 해당하여 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²³⁷⁾

- ① 근로소득만 존재함
- ② 과세기간 동안 한 사용자에게만 고용됨
- ③ 과세기간 말 사용인의 납부세액이 사용자에게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동일함
- ④ 사용인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함

234)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23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ph_s_1, 검색일자: 2019. 10. 11.

236)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237)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 ⑤ 사용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세액의 정보(BIR Form 1604CF)를 신고함
- ⑥ 사용자가 각 사용인에게 근로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의 확인서(BIR Form 2316)를 발행함

다만, 필리핀에서 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인은 총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8%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과세연도의 최초 분기 또는 신규 사업 등의 개시 후 최초 사업연도 최초 분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8%의 세율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에 취소하거나 다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는 과세연도 최초 분기에 등록정보 갱신의 신청 양식(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Update, BIR Form 1905)을 통해 이루어지며, 적시에 이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비율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고 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목적상 최초 분기에 8%의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원천징수제도²³⁸⁾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수취인의 납세를 위해 소득 지급 시 일정 세액을 공제하고, 수취인을 대신하여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필리핀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자발적 협력의 증진, 징수 비용의 절감, 조세포탈과 세원손실의 방지, 과세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의 세수 균등화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은 사업 또는 전문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한다.²³⁹⁾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등에 적용되는 공제가능한 원천징수(또는 예납적 원천징수, creditable withholding tax)와 특정 소득에 적용되는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tax)로 나뉘는데, 전자는 소득의 수취인이 소득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238)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239)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withholding-tax.html>, 검색일자: 2020. 1. 3.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개인의 공제, 비과세 등을 고려한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예로 월마다 지급되는 급여 및 부가되는 고정 지급액과 보충적으로 수수료, 시간외수당, 이사보수를 포함한 보수, 이익배분액, 1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 보상액, 병가 보상액, 위험수당, 부가급여(fringe benefits),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13월 급여와 기타 혜택 등 고용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된다. 따라서 농업근로에 따른 소득, 사용인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소득, 손해배상, 생명보험, 재해보상, 비과세되는 13월 급여와 기타 혜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²⁴⁰⁾ 또한 연간 25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 및 최저임금 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과세기간 동안 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사용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신고가 원천징수를 통해 대체될 수 있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비업무집행사용인의 보수는 과세기간 총소득이 300만페소 미만일 경우 5%, 300만페소 이상이거나 수취자가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10%로 원천징수한다.

〈표 2-1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2018~2022)

(단위: 페소)

일별소득(Y) 지급 시							
급여 구간	685 미만	685~1,095	1,096~2,191	2,192~5,478	5,479~21,917	21,918 이상	
원천징수액	0.00	0.00+ (Y-685)×20%	82.19+ (Y-1,096)×25%	356.16+ (Y-1,096)×30%	1,342.47+ (Y-5,479)×32%	6,602.74+ (Y-21,918)×35%	
월별소득(Y) 지급 시							
급여 구간	20,833 미만	20,833 ~33,332	33,333 ~66,666	66,667 ~166,666	166,667 ~666,666	666,667 이상	
원천징수액	0.00	0.00+ (Y-20,833)×20%	2,500.00+ (Y-33,333)×25%	10,833.33+ (Y-66,667)×30%	40,833.33+ (Y-166,667)×32%	200,833.33+ (Y-666,667)×35%	

주: 일별로 1일을 기준으로 주별, 반월별, 월별은 각각 7, 15, 30을 곱하여 산정됨.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withholding-tax.html>, 검색일자: 2020. 1. 3.

240)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withholding-tax.html>, 검색일자: 2020. 1. 3.

한편, 필리핀 과세관청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주는 안내를 하고 있다(withholding tax calculator). 이는 기본급여, 여비, 생활비 등의 금액과 이의 지급시기(일별, 주별, 반월별, 월별, 연별)를 기재하고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해당 기간의 원천징수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된다. 다만, 이 계산은 사용자의 정보제공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인이 사용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될 수 없다.²⁴¹⁾

사업자는 매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매달 말일 이후 10일 내(12월의 경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 금액을 지정된 대리은행이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신고 납부체계(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를 이용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한이 5일간 더 연장된다.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1월 31일)이전에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BIR Form 1604CF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Income Tax Withheld on Compensation and Final Withholding Taxes).²⁴²⁾

나. 배당소득

시민과 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배당소득은 10%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부과된다.

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과세관청에 고지한 20,000순위의 기업이나 정부가 은행에 발행한 증권화, 공동대출, 구매대출이 아닌 대출에 대한 총이자지급에 대해 2%의 원천징수
- ② 역외은행기구 또는 외환예금기구에 거주자의 이자지급은 10%의 완납적 원천징수
- ③ 확장된 외환예금 체계하의 외환예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완납적 원천징수
- ④ 증권화, 공동대출, 구매대출인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에 대해 20%의 원천징수

시민과 거주자가 수취한 장기 예치금 또는 투자증서에 의한 이자소득이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중단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되며,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간에 따라 5~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241)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withholding-tax-calculator.html>, 검색일자: 2019. 10. 25.

242)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 10. 25.

[그림 2-1]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WITHHOLDING TAX CALCULATOR
For Employees Earning Purely Compensation Income
(Labels with asterisk(*) displays descriptions of each by pointing your mouse on said *)

Payroll Period: Daily

Gross Compensation Income:

Taxable Compensation Income

REGULAR*

Basic Salary:

Representation Allowance:

Transportation Allowance:

Cost of Living Allowance:

Fixed Housing Allowance:

Other Taxable Regular Compensation*:

SUPPLEMENTARY*

Commission:

Profit Sharing:

Fees including Director's Fee:

Taxable 12th Month Pay & Other Benefits*:

Hazard Pay:

Overtime Pay:

Other Taxable Supplementary Compensation*:

Non-Taxable/Exempt Compensation Income *

Basic Salary/Statutory Minimum Wage Earner (MWE):

Holiday Pay (MWE):

Overtime Pay (MWE):

Night Shift Differential (MWE):

Hazard Pay (MWE):

12th Month Pay & Other Benefits*:

De Minimis Benefits*:

SSS, GSIS, PAG-IBIG Contributions and Union Dues (Employee's Share Only):

Salaries and Other Forms of Compensation *:

Other Non-Taxable/Exempt Compensation Income*:

Total Non-Taxable/Exempt Compensation Income:

Net Taxable Compensation Income:

Your Withholding Tax for the Period: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mages/tax_calculator/wt_calculator.html, 검색
일자: 2019. 10. 23.

라. 사용료

일반적인 사용료소득은 20%, 도서와 기타 문학작품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마. 전문가 및 용역 소득

- ①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홍보, 의료용역 수수료, 통관·보험·증권·부동산·이민·상업적 중개인·전문 연예인·독립 판매대행·홍보대리인 등의 수수료는 과세기간 동안 총소득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으면 5%, 300만페소를 초과하거나 수취인이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이면 10% 원천징수
- ② 일반적인 전문가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72만페소를 초과하지 않으면 10%, 이외의 경우에는 15% 원천징수

201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율은 1%보다 작을 수 없고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세기간 연간 총수익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이 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년 1월 15일 이전 또는 전문가 소득 등의 최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득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대리인에게 등록증서의 사본을 포함한 선언 확인서(sworn declar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충족하였더라도 소득 지급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면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단일의 지급자로부터 과세기간 동안 25만페소 이하의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확인서를 매년 1월 15일 또는 최초 지급 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필리핀 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술적 조력 수수료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바. 기타

시민, 거주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외국인의 필리핀 소재 부동산 매각 등에 의한 자본소득은 양도가액이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공정가액 중 큰 금액에 6%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보유에 대한 임대료, 사업에 이용되는 사적 자산의

사용 또는 부유에 대한 연간 1만페소 미만의 임대료, 위성·전송 설비, 전광판, 영화필름 등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6%의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표 2-12〉 주요 지급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소득 종류	구분	수취인	세율 (%)	예납적 또는 완납적
전문가소득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연예인, 작곡가, 운동선수, 경영관리인, 컨설턴트, 장부기장대리인 등에 지급하는 소득	-	-	예납적
	총소득이 300만페소 이하	개인	5	
	총소득이 300만페소 초과 또는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개인	10	
	총소득이 72만페소 이하	법인	10	
	총소득이 72만페소 초과	법인	15	
전문가소득	고용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지급수수료	-	-	
	총소득이 300만페소 이하	개인	5	
	총소득이 300만페소 초과 또는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개인	10	
임대소득	연간 1만페소를 초과하는 지급 임차료	모두	5	
사업소득	특정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모두	2	
-	신탁 등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개인	15	
사업소득	통관, 보험, 주식, 이민, 상업중개인 등의 용역수수료 및 의사 등에 지급하는 의료비용	-	-	
	총소득이 300만페소 이하	개인	5	
	총소득이 300만페소 초과 또는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개인	10	
	총소득이 72만페소 이하	법인	10	
	총소득이 72만페소 초과	법인	15	
이자소득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출 이자	법인	20	완납적
	역외은행 또는 외화예금기관에서 외환대출에 의해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지급	법인	10	
사용료소득	시민, 거주자 외국인, 법인 등 모든 종류의 사용료소득	모두	20	
기타소득	1만페소를 초과하는 상품과 기타 승리 수당	개인	20	

자료: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withholding-tax.html>, 검색일자: 2020. 1. 3.

사례1 근로소득계산사례²⁴³⁾

2명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필리핀 외국인 거주자의 2019년 근로소득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은 필리핀 원천소득이며, 상여는 매년말 지급되고, 이자소득은 필리핀으로 송금되지 않았으며, 업무용 차량은 사업과 사적 용도로 모두 사용되는데 취득원가는 3만페소(PHP)이다.

기본급 5,000,000 PHP, 상여금 1,000,000 PHP, 생활지원비 500,000 PHP, 주거비 600,000 PHP, 업무용 차량 300,000 PHP, 이사비용 1,000,000 PHP, 교육지원비 150,000 PHP, 국외원천이자소득 300,000 PHP

과세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생활지원비
6,470,000	=	5,000,000	+	970,000	+	500,000
납부세액	=	과세소득	×	누진세율		
1,888,400	=	6,470,000	×	0~35%		

* 주거비, 이사비용, 차량 등은 현물혜택세(FBT)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과세됨

**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은 외국인에게 과세되지 않음

243)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philippines-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1. 3.)의 사례를 수정함

제3장 | 국제조세

I 국제조세의 체계

필리핀 세법상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²⁴⁴⁾ 국제거래의 정의에 따라 필리핀 소득세법상 언급된 국제거래 규정을 정리한다.

필리핀의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외국법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무역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며, 외국인은 필리핀 내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외국인,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나누어 과세 체계를 달리한다.²⁴⁵⁾

24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45)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DEFINITIONS-SEC. 22.,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18.

II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1. 거주자 외국법인

가. 과세소득

1)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방법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므로 앞서 기술한 '제2편 제1장. 법인소득세'를 참고하면 된다.²⁴⁶⁾

거주자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 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여야 한다.²⁴⁷⁾ 지점의 비용은 필리핀 내 원천소득에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필리핀 소득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공통 비용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련된(effectively connected) 비율만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율은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 시 다음 사업연도에도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① 필리핀 내 발생 수입과 전체 수입 비율
- ② 필리핀 내 발생 순매출액과 전체 순매출액 비율
- ③ 서면 승인 받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은 필리핀 내 운영되는 방 개수 대비 전 세계 방 개수 비율을 적용하여 본사 운영비용을 배분할 수 있다.)

필리핀 국세청은 세무조사 수행 시 지점에 배분된 비용의 기능적 분석을 통해 관계사들 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를 검토할 수 있다.

246)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V-TAX ON CORPORATIONS-SEC. 28.,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18.

247)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2. Taxation of resident companies 7.2.1. Taxable foreign income, 검색일자: 2019. 10. 23.

2) 국외원천소득²⁴⁸⁾

필리핀 세법상 내국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이란 아래와 같은 소득을 의미한다.

- ① 필리핀 내 원천이 아닌 이자소득
- ② 외국법인 또는 이전 3년간 필리핀 원천 소득이 총수입의 50% 이하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 ③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으로 얻은 수입
- ④ 필리핀 외부에 소재한 자산 또는 필리핀 외부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통하여 얻은 임대료 혹은 사용료 소득
- ⑤ 필리핀 외부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 소득

나. 세율²⁴⁹⁾

거주자 외국법인의 표준 법인세율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30%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내국법인의 규정과 동일하게 총수입의 2%가 적용된다. 단, 거주자 외국법인이 아래와 같은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제운송업

필리핀 내에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필리핀 내 발생한 매출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248)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2. Taxation of resident companies 7.2.1. Taxable foreign income, 검색일자: 2019. 10. 18.

249)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V-TAX ON CORPORATIONS-SEC. 28.,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18.

2) 역외은행지점(Offshore Banking Units, OBU)의 소득²⁵⁰⁾

필리핀 중앙은행이 승인한 OBU가 비거주자, 다른 OBU, 국내상업은행, 은행 해외지사 등과 거래하여 발생한 외화소득은 재무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과세가 면제된다. 단, OBU, 국내상업은행이 아닌 거주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외화 이자소득은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3) 필리핀 내 다국적기업의 소득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²⁵¹⁾인 경우 비과세되며, 지역운영본부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4) 거주자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가) 은행예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 및 로열티소득

은행 예금, 펀드 및 유사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 및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원천으로부터 얻은 로열티소득은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거주자 외국법인이 외화 예금체계(the expanded foreign currency deposit system) 하의 외화예금은행(FCDU)²⁵²⁾에서의 예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7.5%의 세율로 과세한다.

나) FCDU의 소득

FCDU가 비거주자, 다른 역외은행지점, 국내상업은행, 은행 해외지사 등과 거래하여 발생한 외화소득은 재무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과세가 면제된다.

단, FCDU가 OBU나 다른 FCDU가 아닌 거주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외화대여금의 이자소득은 10% 세율로 과세한다.

250) 필리핀 중앙은행법에 따르면 역외은행지점(Offshore Banking Unit)이란 필리핀과 역외 거래를 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은행의 지사 혹은 관계회사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곳을 말한다. 필리핀 중앙은행, <http://www.bsp.gov.ph/regulations/regulations.asp?type=1&id=1563>, 검색일자: 2019. 10. 24.

251) 필리핀 소득세법 SEC. 22. 정의에 따르면 지역본부는 다국적기업의 필리핀 내 지사로서 아시아 및 해외 지역 내 자회사, 관계사, 지사 등을 감독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할 뿐, 이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반면, 지역운영본부는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필리핀 내 지사를 의미한다.

252) 필리핀 중앙은행법에 따르면 외화예금체계란 외화예금은행(FCDU)에 관한 법으로 FDU란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지사 등이 외화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승인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필리핀 중앙은행, <http://www.bsp.gov.ph/regulations/regulations.asp?type=1&id=1563>, 검색일자: 2019. 10. 24.

다) 비상장주식의 자본이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국내법인 주식의 판매, 이전이나 교환 등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10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과세한다.

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

거주자 외국법인이 필리핀 법인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중과세조정²⁵³⁾

1) 외국납부세액 비용공제

일반적으로 내국법인 및 거주자 외국법인은 법인의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한 세금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²⁵⁴⁾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필리핀 내 원천소득만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인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²⁵⁵⁾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²⁵⁶⁾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아래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된다.

- ①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5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2. Taxation of resident companies 7.2.6. Double taxation relief, 검색일자: 2019. 10. 18.

254) 제1편 제1장 법인소득세, 3.과세소득, 가.각사업연도소득, 2). 나). 참조

255)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VII-ALLOWABLE DEDUCTIONS-SEC. 34.,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18.

256) 외국납부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한다.

- ②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전체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에서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기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를 할 수 없다.

라. 지점세(Branch tax)²⁵⁷⁾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하는 지점이익(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이익)의 15%가 과세된다. 단, 필리핀경제구역(PEZA)에 등록된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는 제외한다. 지점세의 징수 및 납부 절차는 필리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방법²⁵⁸⁾에 따라 이루어진다.

필리핀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된(effectively connected) 소득만 과세대상 지점이익으로 보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로열티소득, 각종 보수, 자본이득 등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필리핀 내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지점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란 지점이 필리핀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실제 운영을 통하여 얻는 소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외국법인이 투자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외국법인이 브랜드명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로열티소득을 받는다면, 해당 로열티소득은 사업과 관련된 수동소득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지점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57)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 7.3.5. Branch Tax, 검색일자: 2019. 10. 23.

258) 필리핀 소득세법 SEC. 57-8, 본문 2. 비거주자 외국법인 라. 원천징수 참조

2. 비거주자 외국법인

가. 과세소득²⁵⁹⁾

필리핀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사업이나 무역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법인으로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닌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법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모든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법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다.

- ① 이자소득
- ② 배당소득
- ③ 임대소득
- ④ 로열티소득
- ⑤ 근로소득
- ⑥ 보험료소득
- ⑦ 연금보험수입(Annuities)
- ⑧ 일시적·정기적 보수
- ⑨ 기타소득
- ⑩ 자본이득(비상장주식 양도 제외)

나. 세율²⁶⁰⁾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로열티소득 등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단,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259)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 7.3.3. Taxable domestic income, 검색일자: 2019. 10. 23.

260)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V-TAX ON CORPORATIONS-SEC. 28. Rates of Income Tax on Foreign Corporation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23.

1) 영화 배급 및 임대 사업 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영화필름을 소유하고 배급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리핀 내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 선박 임대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선박을 소유하고 필리핀 해양당국에 승인을 받아 거주자 개인 및 법인에 임대하거나 전세를 내는 경우 해당 소득은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3) 항공기, 기계 등 임대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항공기, 기계 및 기구 등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7.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4)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기타소득

가) 외화대여금²⁶¹⁾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외화대여금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나)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수취자인 비거주자의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즉,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본국에서 필리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15% 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비상장주식의 자본이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국내법인 주식의 판매, 이전이나 교환 등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261) 외화대여금이란 필리핀 거주자인 개인 및 법인이 비거주자와 채무계약을 체결하여 외화 또는 현물로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이득이 10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양도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거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말 이후 4월 15일 까지 연간 거래 내역에 대한 통합 신고를 수행하여야 한다.²⁶²⁾

다. 이종과세조정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비용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원천징수²⁶³⁾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으므로 본 절에서는 원천징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외국법인이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 지급자인 내국법인에게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족세액 혹은 미납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2)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된다. 그러나 아직 소득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소득 지급자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배당소득 등의 경우 소득 지급이 회계상 발생(accrual)하거나, 실제 지급하게 되는 시점 중 빠른 날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신고기간 마지막 달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62)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 7.3.9. 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19. 10. 23.

26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companies 7.3.4. Withholding taxes, 검색일자: 2019. 10. 23.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및 첨부서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신고서 종류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원천징수 세목별 신고서류

신고서 번호	제목
BIR Form 1601EQ	분기별 예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Creditable Income Taxes Withheld (Expanded))
BIR Form 1602Q	분기별 예금이자 등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Final Taxes Withheld on Interest Paid on Deposits and Deposit Substitutes/Trusts/Etc.)
BIR Form 1603Q	분기별 복리후생비 관련 소득세 완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Final Income Taxes Withheld on Fringe Benefits Paid to Employees Other Than Rank and File)
BIR Form 1601FQ	분기별 완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Final Income Taxes Withheld)

자료: 필리핀 국세청 신고서류(<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 검색일자: 2019. 10. 2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월별 원천징수 납부신고서인 BIR Form 0619E or 0619F(Monthly Remittance Form)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 시스템(eFiling 및 Payment System facility²⁶⁴)을 사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소득 지급자는 매 분기 말 2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내용이 담긴 서류를 3통 제공하여야 한다. 단, 소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소득 지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는 적시에 발급한 BIR Form 2307(Certificate of Creditable Tax Withheld at Source)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소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BIR Form 2307에는 월별 소득 지급액, 분기별 총액, 원천징수 세액의 총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64) Payment System이란 필리핀 내 금전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서 만든 송금 간소화 시스템이다.

3. 조세조약의 적용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원천징수세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있다면 그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필리핀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는 보고서일 기준 43개국이며,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은 1987년 체결되었다. 필리핀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²⁶⁵⁾

〈표 2-14〉 조세조약 체결 국가 현황

국가	시행일자	체결일자/장소
호주	1980.1.1.	1979.5.11./마닐라
오스트리아	1983.1.1.	1981.4.4./비엔나
바레인	2004.1.1.	2001.11.7./마닐라
방글라데시	2004.1.1.	1997.9.8./마닐라
벨기에	1981.1.1. 2000.1.1.	1976.10.2./마닐라 1996.5.11./마닐라
브라질	1992.1.1.	1983.9.29./브라질리아
캐나다	1977.1.1.	1976.3.11./마닐라
중국	2002.1.1.	1999.11.18./베이징
체코	2004.1.1.	2000.11.13./마닐라
덴마크	1998.1.1.	1995.6.30./코펜하겐
핀란드	1982.1.1.	1978.10.13./마닐라
프랑스	1978.1.1. 1998.1.1.	1976.1.9./킹스톤 1995.6.26./파리
독일	2016.1.1.	2013.9.9./베를린
헝가리	1998.1.1.	1997.6.13./부다페스트
인도	1995.1.1.	1990.2.12./마닐라
인도네시아	1983.1.1.	1981.6.18./마닐라
이스라엘	1997.1.1.	1992.6.9./마닐라
이탈리아	1990.1.1.	1980.12.5./로마
일본	1981.1.1. 2009.1.1.	1980.2.13./도쿄 2006.12.9./마닐라
한국	1987.1.1.	1984.2.21./서울
쿠웨이트	2014.1.1.	2009.11.3./쿠웨이트 시티

265) 필리핀 국세청, <https://www.bir.gov.ph/index.php/international-tax-matters/international-tax-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19. 12. 13.

국가	시행일자	체결일자/장소
말레이시아	1985.1.1.	1982.4.27./마닐라
멕시코	2019.1.1.	2015.11.17./마닐라
네덜란드	1992.1.1.	1989.3.9./마닐라
뉴질랜드	1981.1.1. 2008.12.2.	1980.4.29./마닐라 2002.2.21./웰링턴
나이지리아	2014.1.1.	1997.9.30./마닐라
노르웨이	1998.1.1.	1989.5.22./마닐라
파키스탄	1979.1.1.	1980.2.22./마닐라
폴란드	1998.1.1.	1992.9.9./마닐라
카타르	2016.1.1.	2008.12.14./도하
루마니아	1998.1.1.	1994.5.18./부쿠레슈티
러시아	1998.1.1.	1995.4.26./마닐라
싱가포르	1977.1.1.	1977.8.1./마닐라
스리랑카	2019.1.1.	2000.12.11./마닐라
스페인	1994.1.1.	1989.3.14./마닐라
스웨덴	2004.1.1.	1998.6.24./마닐라
스위스	2002.1.1.	1998.6.24./마닐라
태국	1983.1.1. 2019.1.1.	1982.7.14./마닐라 2013.6.21./마닐라
터키	2017.1.1.	2009.3.18./앙카라
아랍에미리트	2009.1.1.	2003.9.21./두바이
영국	1979.1.1.	1976.6.10./런던
미국	1983.1.1.	1976.10.1./마닐라
베트남	2004.1.1.	2001.11.14./마닐라

자료: 필리핀 국세청, <https://www.bir.gov.ph/index.php/international-tax-matters/international-tax-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19. 12. 13.

Ⅲ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1. 거주자 외국인

필리핀 소득세법상 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필리핀 내 파견 근로자가 파견근무 기간의 제한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외국인에 해당된다.²⁶⁶⁾ 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²⁶⁷⁾ 과세 체계는 필리핀 거주자 내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앞서 설명한 '2장. 소득세법'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아래 나열하는 특정근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거주자 내국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특례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다.²⁶⁸⁾

- ①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혹은 지역운영본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② OBU(Offshore Business Units)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③ 석유회사(Petroleum Servic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그러나 TRAIN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특례세율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²⁶⁹⁾ 기존의 적용대상 회사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이 필리핀 헌법상 차별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기존 특례세율을 적용받던 고용인에게도 일 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²⁷⁰⁾

266) PWC, <http://taxsummaries.pwc.com/ID/Philippines-Individual-Residence>, 검색일자: 2019. 10. 23.

267)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I-GENERAL PRINCIPLES -SEC. 23. General Principles of Income Taxation in the Philippin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23.

268)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II-TAX ON INDIVIDUALS-SEC. 25. Tax on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23.

269)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IRC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2018, p. 34.

270)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IRC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2018, p. 34. 각주내용

2. 비거주자 외국인

필리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하, NRAETB²⁷¹⁾)과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인(이하, NRANETB²⁷²⁾)으로 나뉘어 다르게 과세한다.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연간 총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필리핀 내에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서 2년 반의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수행한 외국인인 경우 NRAET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²⁷³⁾

가.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외국인(NRAETB)

1) 과세소득²⁷⁴⁾

필리핀 세법상 NRAETB는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 공제 요건 및 소득세율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2장. 소득세법'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면제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계산할 시 필리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납세절차²⁷⁵⁾

NRAETB의 신고·납부 절차는 거주자와 동일하므로, 과세연도 말 종료 이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71) Non-Resident Alien Engaged in Trade or Business의 줄임말

272) Non-Resident Alien Not Engaged in Trade or Business의 줄임말

273) 필리핀 국세청, 소득세법 Tax Code TITLE II-TAX ON INCOME-CHAPTER III-TAX ON INDIVIDUALS-SEC. 25. Tax on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2>, 검색일자: 2019. 10. 23.

274) IBFD,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s 7.3.1. Taxable domestic income, 검색일자: 2019. 10. 25.

275) IBFD,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s 7.3.6. 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19. 10. 25.

나.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 외국인(NRANETB)²⁷⁶⁾


필리핀 세법상 NRANETB는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니며, 소득세 신고 의무는 따로 없이 모든 납세 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료소득, 보험료소득, 연금소득, 자본이득이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

276) IBFD,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Country Tax Guides-7. International Aspects-7.3. Tax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s 7.3.2. Withholding taxes, 검색일자: 2019. 10. 25.

BIR Form No. 1601-EQ January 2018 Page 2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Creditable Income Taxes Withheld (Expanded)		 1601-EQ 01/18 P2			
TIN		Withholding Agent's Name (Last Name for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for Non-Individual)					
Schedule of Alphabetic Tax Codes (ATC)							
Nature of Income Payment	Tax Rate	ATC		Nature of Income Payment	Tax Rate	ATC	
		Individual	Corporation			Individual	Corporation
Professionals (Lawyer, CPA, Engineer, etc.)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D10 WD11		Professional fees paid to medical practitioners (includes doctors of medicine, doctors of veterinary science & dentists) by hospitals & clinics or paid directly by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and/or similar establishments	15% 15%	WC151 WC152	
Professionals (Lawyer, CPA, Engineer, etc.)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10 WC11	Payment by the General Professional Franchise (GPF) to its partner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F12 WF13	
Professional entertainers such as, but not limited to actors and actresses, singers, lyricists, composers, emce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20 WE21		Income payments made by credit card companies	1% or 7%	WF35	WC198
Professional entertainers such as, but not limited to actors and actresses, singers, lyricists, composers, emce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20 WC21	Additional income payments to government personnel from importers, shipping and airline companies or their agents for overtime services Income payments made by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 (GOCCs) to its local resident suppliers of good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other rates of withholding tax	15% 1%	WF59	WC540
Professional athletes including basketball players, wrestlers and jockey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30 WE31		Income payments made by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 (GOCCs) to its local resident suppliers of servic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other rates of withholding tax	2%	WF57	WC157
Professional athletes including basketball players, wrestlers and jockey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30 WC31	Income payments made by top withholding agents to their local resident supplier of good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other rates of withholding tax	1%	WF58	WC158
All directors and producers involved in movies, stage, radio, television and musical production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40 WE41		Income payment made by top withholding agents to their local resident supplier of servic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other rates of withholding tax	2%	WF60	WC180
All directors and producers involved in movies, stage, radio, television and musical production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40 WC4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5% 15%	WF15 WF16	
Management and technical consultant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50 WE5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Management and technical consultant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50 WC5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Business and bookkeeping agents and agenci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60 WE6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Business and bookkeeping agents and agenci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60 WC6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adjuster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70 WE7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adjuster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70 WC7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Other recipients of talent fe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80 WE8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Other recipients of talent fee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80 WC8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Fees of directors who are not employees of the company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E90 WE9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Fees of directors who are not employees of the company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700,000 If gross income exceeds ₱ 700,000	10% 15%		WC90 WC91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15%	WF15 WF16	
Merch: For gross rents or lease for the continued use or possession of personal property in excess of Ten thousand pesos (₱ 10,000) annually and not properly used in business which the payer or obligor has not taken title or is not taking title, or in which he or she has no equity, interest, permission, franchise and sublease	5%	WH10	WC10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1	WC61
Cinematographic film rentals and other payments to resident individuals and corporate cinematographic film owners, lessors or distributors	5%	WH10	WC11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2	WC62
Income payments to certain contractors	2%	WH20	WC12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3	WC63
Income distribution to the beneficiaries of estates and trusts	15%	WH3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4	WC64
Gross commissions or service fees of customs, insurance, stock, immigration and commercial brokers, fees of agents of professional entertainers and real estate service practitioners (RESPs), (i.e. real estate consultants, real estate appraisers and real estate brokers)	5%	WH3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5	WC65
Gross commissions or service fees of customs, insurance, stock, immigration and commercial brokers, fees of agents of professional entertainers and real estate service practitioners (RESPs), (i.e. real estate consultants, real estate appraisers and real estate brokers)	10%	WH4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6	WC66
Gross commissions or service fees of customs, insurance, stock, immigration and commercial brokers, fees of agents of professional entertainers and real estate service practitioners (RESPs), (i.e. real estate consultants, real estate appraisers and real estate brokers)	15%		WC130 WC14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7	WC67
Gross commissions or service fees of customs, insurance, stock, immigration and commercial brokers, fees of agents of professional entertainers and real estate service practitioners (RESPs), (i.e. real estate consultants, real estate appraisers and real estate brokers)	15%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8	WC68
Professionals fees paid to medical practitioners (includes doctors of medicine, doctors of veterinary science & dentists) by hospitals & clinics or paid directly by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and/or similar establishments If gross income for the current year did not exceed ₱ 3M If gross income is more than ₱ 3M or VAT Registered regardless of amount	5% 10%	WH51 WH50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69	WC69
				Commissions, rebates, discou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s paid granted to independent and/or exclusive sales representatives and marketing agents and sub-agents of companies, including multi-level marketing companies	10%	WF70	WC70

[별첨 5] BIR Form 1601FQ 분기별 완납적 원천징수 신고서

For BIR BCS/ Use Only Item: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Form No. 1601-FQ
 January 2018
 Page 1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Final Income Taxes Withheld

1601-FQ 0118 P1

Enter all required information in CAPITAL LETTERS using BLACK INK. Mark all applicable boxes with an "X". Two copies MUST be filed with the BIR and one held by the Taxpayer.

1 For the Year	2 Quarter <input type="checkbox"/> 1st <input type="checkbox"/> 2nd <input type="checkbox"/> 3rd <input type="checkbox"/> 4th	3 Amended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Any Taxes Withhel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 No. of Sheets Attached
Part I - Background Information				
6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7 RDO Code
8 Withholding Agent's Name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for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for Non-individual)				
9 Registered Address (Indicate complete address. If branch, indicate the branch address. If the registered addres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address, go to the RDO to update registered address by using BIR Form No. 1905)				
				9A ZIP Code
10 Contact Number	11 Category of Withholding Agent <input type="checkbox"/> Private <input type="checkbox"/> Government			
12 Email Address				
13 Are there payees availing of tax relief under Special Law or International Tax Treat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3A If yes, specify				
Part II - Computation of Tax				
ATC	Tax Base (Consolidated for the Quarter)	Tax Rate	Tax Withheld (Consolidated for the Quarter)	
14		%		
15		%		
16		%		
17		%		
18		%		
19		%		
20 Taxes Withheld for the Quarter Based on Regular Rates (Sum of items 14 to 19)				
21 Taxes Withheld for the Quarter Based on Tax Treaty Rates (from Part IV-Schedule 1)				
22 Total Taxes Withheld for the Quarter (Sum of items 20 and 21)				
23 Less: Remittances Made: 1 st Month of the Quarter				
24 2 nd Month of the Quarter				
25 Tax Remitted in Return Previously Filed, if this is an amended return				
26 Total Remittances Made (Sum of items 23 to 25)				
27 Tax Still Due (Over-remittance) (Item 22 Less item 26)				
Add: Penalties				
28 Surcharge				
29 Interest				
30 Compromise				
31 Total Penalties (Sum of items 28 to 30)				
32 TOTAL AMOUNT STILL DUE (Over-remittance) (Sum of items 27 and 31)				
<small>I/We declare under the penalties of perjury that this remittance return, and all its attachments, have been made in good faith, verified by me/us, and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belief, is true and corre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as amended, and the regulations issued under authority thereof. Further, I/We are in my/our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my information as contemplated under the "Data Privacy Act of 2012 (R.A. No. 10173) for legitimate and lawful purposes. (If Authorized Representative, attach authorization letter)</small>				
For individual:		For Non-individual:		
Signature over Printed Name of Taxpayer/Authorized Representative/Tax Agent (Indicate Title/Designation and TIN)		Signature over Printed Name of President/Vice President/Authorized Officer or Representative/Tax Agent (Indicate Title/Designation and TIN)		
Tax Agent Accreditation No./Attorney's Roll No. (if applicable)	Date of Issue (MM/DD/YYYY)	Date of Expiry (MM/DD/YYYY)		
Part III - Details of Payment				
Particulars	Drawee Bank/Agency	Number	Date (MM/DD/YYYY)	Amount
33 Cash/Bank Debit Memo				
34 Check				
35 Tax Debit Memo				
36 Others (specify below)				
Machine Validation/Revenue Official Receipt Details (if not filed with an Authorized Agent Bank)			Stamp of Receiving Office/AAS and Date of Receipt (RO's Signature/Bank Teller's Initial)	

*NOTE: Please read the BIR Data Privacy Policy found in the BIR website (www.bir.gov.ph)

BIR Form No. 1601-FQ January 2018 Page 2		Quarterly Remittance Return of Final Income Taxes Withheld			 1601-FQ 01/18 P2		
TIN		Withholding Agent's Name (Last Name for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for Non-Individual)					
Part IV - Schedules							
Schedule 1 – Details of Final Tax Based on Tax Treaty Rates							
Ser. No. (A)	Treaty Code/Country (B)	ATC (C)	Nature of Income Payment (Refer to Schedule 3) (D)	Amount of Income Payment (E)	Tax Rate (F)	Amount of Tax Withheld (not creditable) (G) = (E x F)	
1							
2							
3							
4							
5							
Total Taxes Withheld (Sum of Items 1 to 5) (To Part II Item 21)							
Schedule 2 – Tax Treaty Code							
Treaty Code	Country	Treaty Code	Country	Treaty Code	Country	Treaty Code	Country
AU	Australia	FI	Finland	KW	Kuwait	SG	Singapore
AT	Austria	FR	France	MY	Malaysia	ES	Spain
BH	Bahrain	DE	Germany	NL	Netherlands	SE	Sweden
BD	Bangladesh	HU	Hungary	NZ	New Zealand	CH	Switzerland
BE	Belgium	IN	India	NG	Nigeria	TH	Thailand
BR	Brazil	ID	Indonesia	NO	Norway	UAE	United Arab Emirates
CA	Canada	IL	Israel	PK	Pakistan	GB	United Kingdom
CN	China	IT	Italy	PL	Poland	US	United States of America
CZ	Czech Republic	JP	Japan	RO	Romania	VN	Vietnam
DK	Denmark	KR	Korea	RU	Russia		
Schedule 3 – Nature of Income Payment							
Particulars			Tax Rate	ATC			
Interest on foreign loans payable to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NRFCs)			20%	Individual	WC180		
Interest and other income payment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loans payable to Offshore Banking Units (OBUs)			10%		WC190		
Interest and other income payment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loans payable to 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 (FCDUs)			10%		WC191		
Cash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citizens and resident aliens/NRFCs			10%	WI202			
			30%		WC212		
Property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citizens and resident aliens/NRFCs			10%	WI203			
			30%		WC213		
Cash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NRFCs whose countries allowed tax deemed paid credit (subject to tax sparing rule)			15%		WC222		
Property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NRFCs whose countries allowed tax deemed paid credit (subject to tax sparing rule)			15%		WC223		
Cash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Non-resident Alien engage in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Philippines (NRAETB)			20%	WI224			
Property dividend payment by domestic corporation to NRAETB			20%	WI225			
Share of NRAETB in the distributable net income after tax of a partnership (except 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 of which he is a partner, or share in the net income after tax of an association, joint account or a joint venture taxable as a corporation of which he is a member or a co-venturer			20%	WI226			
On other payments to NRFCs			30%		WC230		
Distributive share of individual partners in a taxable partnership, association, joint account or joint venture or consortium			10%	WI240			
All kinds of royalty payments to citizens, residents aliens and NRAETB (other than WI380 and WI341), domestic and 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20%	WI250	WC250		
On prizes exceeding ₱10,000 and other winnings paid to individuals			20%	WI260			
Branch profit remittances by all corporations except PEZA/SBMA/CDA registered			15%		WC280		
On the gross rentals, lease and charter fees derived by non-resident owner or lessor of foreign vessels			4.5%		WC290		
On the gross rentals, charters and other fees derived by non-resident lessor or aircraft, machineries and equipment			7.5%		WC300		
On payments to oil exploration service contractors/sub-contractors			8%	WI310	WC310		
Payments to Non-resident alien not engage in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Philippines (NRAETB) except on sale of shares in domestic corporation and real property			25%	WI330			
On payments to non-resident individual foreign corporate cinematographic film owners, lessors or distributors			25%	WI340	WC340		
Royalties paid to NRAETB on cinematographic films and similar works			25%	WI341			
Final tax on interest or other payments upon tax-free covenant bonds, mortgages, deeds of trust or other obligations under Sec. 57C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30%	WI350			
Royalties paid to citizens, resident aliens and NRAETB on books, other literary works and musical compositions			10%	WI380			
Informers Cash Reward to individuals/juridical persons			10%	WI410	WC410		
Cash or property dividend paid by 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10%	WI700	WC700		

제4장 | 부가가치세

I 개관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제공·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필리핀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본다.

필리핀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1988년 1월 1일 Executive Order 273을 도입한 이래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²⁷⁷⁾

〈표 2-15〉 필리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연혁

Republic Act No.	주요 내용	발행연도 및 시행연도
10963	TRAIN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금액을 1,919,500 페소에서 300만페소로 높임	2017년 12월 19일
9337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높이고,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함	2005년 5월 24일
8241	개선된 부가가치세법(Improved VAT)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제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단순화함	1997년 1월 1일
7716	1994년의 확대된 부가가치세법(Expanded VAT)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를 부동산의 공급 및 리스로 확장하고, 세무행정절차를 발전시킴	1996년 1월 1일

자료: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3. Value Added Tax, 검색일자: 2020. 2. 12.

277)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http://www.ntrc.gov.ph/images/journal/2017/j20170506b.pdf>, 검색일자: 2020. 2. 12.

II 납세의무자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재화를 판매 및 교환, 용역을 제공, 재화를 수입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상업적,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업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 기업 신탁,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²⁷⁸⁾

III 과세대상 거래

1. 재화의 공급²⁷⁹⁾

가. 대상 재화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는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을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품, 특허권 및 상표권, 영업권, 사업상의 권리, 라디오 및 위성방송 송출권을 포함한다.

나. 간주공급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거래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정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하여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와 유사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용도로 구매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주식으로 배분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78)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5. Persons Liable,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79)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6. Value-Added Tax on Sale of Goods or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위탁판매상품을 위탁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6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과세대상 재고자산 및 투자설비를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한다.

2. 용역의 공급

가. 대상 용역²⁸⁰⁾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건설 용역,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창고업, 영화배급업, 숙박업, 요식업, 방송 송출업, 프랜차이즈 사업, 손해보험업 및 기타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 용역은 아래와 같다.

- ①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영업권, 상표권, 브랜드 등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임대 및 사용권 부여
- ②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술의 사용 권한 임대
- ③ 과학, 기술 및 산업 지식과 정보의 공급
- ④ 위 재산 및 권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공급
- ⑤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직원이 위 재산 및 권리의 사용을 위한 보조, 설치 등의 서비스
- ⑥ 과학·산업·상업적 프로젝트의 관리, 행정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 용역
- ⑦ 만화영화, 영화, 음반 등의 대여
- ⑧ 라디오, TV, 위성방송 및 케이블 송출업

3. 재화의 수입²⁸¹⁾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재화는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

280)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8. Value-added Tax on Sale of Services and Use or Lease of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81)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7. Value-Added Tax on Importation of Good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25.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²⁸²⁾ 면세사업자인 개인 및 기업이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재화의 구매자가 수입 재화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된다.

4. 공급시기

가. 일반적인 공급시기²⁸³⁾

납세의무자는 과세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및 간주공급에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 부동산의 공급에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 혹은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재산의 임대 및 용역의 공급에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 혹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하기 직전이 공급시기가 된다.

나. 공급시기 특례²⁸⁴⁾

1) 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 및 선급금을 제공한 경우 특정 공급 행위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선급금이 선급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급임대료를 수령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선급금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속적인 용역의 공급

연속적인 용역을 제공할 경우 매 대가가 지급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동의조건부판매

위탁상품은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82)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822.

283)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822.

284)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822.

단, 위탁상품이 위탁된 이후 60일 이내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탁품이 회수되지 않는 한 위탁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아 60일째가 공급시기가 된다.

4) 대리납부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5) 리스자산

임대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 혹은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IV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gross selling price) 및 용역의 공급가액(gross receipts)으로,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다. 공급가액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포함된다.²⁸⁵⁾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통관 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특별소비세 등을 가산하여 정한다.²⁸⁶⁾

2. 세율

과세표준에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²⁸⁷⁾

285)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6. Value-Added Tax on Sale of Goods or Properties & 108. Value-added Tax on Sale of Services and Use or Lease of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86)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7. Value-Added Tax on Importation of Good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25.

287)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6. Value-Added Tax on Sale of Goods or Properties & 108. Value-added Tax on Sale of Services and Use or Lease of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V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가. 재화의 수출²⁸⁸⁾

필리핀 세법상 열거한 재화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에서 열거한 재화의 수출거래는 아래와 같다.²⁸⁹⁾

- ①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은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공급
- ②-1 특례법에 따라 관세 지역에 등록된 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 ②-2 관광인프라 및 기업관리청(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 ③ 국내 수출업자에 판매할 목적으로 원재료 및 포장 재료를 비거주자에게 인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④ 연간 생산량의 70%를 초과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 ⑤ 필리핀 중앙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
- ⑥ 226호 시행령(Executive Order No. 226²⁹⁰⁾)에 따라 수출로 보는 재화의 공급
- ⑥ 국제운송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료 및 물품에 대한 공급

단, 상단에 기술한 ③, ④, ⑤의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될 시 12%의 세율로 과세한다.

- a. 강화된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신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288)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6. Value-Added Tax on Sale of Goods or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89)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IRC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2018, p. 152-155.

290) 226호 시행령이란 Executive Order No.226(또는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이라고 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분야의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 및 외국인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b. 2017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환급되는 경우

더불어 기타 특례법, 국제 합의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 역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ADB, the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다.

나. 용역의 공급²⁹¹⁾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은 아래와 같다.

- ① 국외 사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재화의 가공·제조 및 포장 등의 용역을 필리핀 내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 ② 국외 사업자나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필리핀 외부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 ③ 특례법 및 국제 합의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 ④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송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리스업 등의 용역
- ⑤ 연간 생산량의 70%를 초과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하도급을 제공하는 경우
- 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⑦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 ⑧-1 특례법에 따라 관세 지역에 등록된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
- ⑧-2 TIEZA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

단, 상단에 기술한 ①, ⑤의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될 시 12%의 세율로 과세한다.

- a. 강화된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신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291)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8. Value-added Tax on Sale of Services and Use or Lease of Propertie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 b. 2017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환급되는 경우

2. 면세

필리핀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며, 면세대상이 되는 주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아래와 같다.²⁹²⁾²⁹³⁾

- 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공급 또는 수입
- ② 비료 등의 공급 또는 수입
- ③ 필리핀 거주자 및 외국인이 필리핀에 정착하기 위해 입국 시 들여오는 가사용품 등으로 필리핀 관세법상 면제되는 물품의 수입
- ④ 필리핀에 정착하려는 자, 필리핀 국민 및 필리핀 해외 동포가 입국 시 들여오는 업무용 물품, 옷, 가축, 가사용품 등의 수입(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⑤ 비율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용역
- ⑥ 의학, 치의학, 수의학 진료를 제공하는 용역
- ⑦ 교육부 등에서 승인하는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육 용역
- ⑧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용역
- ⑨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서 관계사 관리·감독, 커뮤니케이션 수행 용역
- ⑩ 특례법 및 국제협약에 의하여 면제되는 거래
- ⑪ 협동조합개발청(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 CDA)에 등록된 농업협동조합의 공급(공급대상이 조합원, 비조합원인 경우 모두 포함)
- ⑫ CDA에 등록된 비농업, 비전자, 비금융 협동조합의 공급(단, 각 조합원의 자본금액이 1만 5천페소를 초과하지 않고, 이익을 조합원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⑬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수출

292)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09. Exempt Transaction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93)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IRC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2018, pp. 161-166.

- ⑭ 도시개발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임대 및 매매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저가 부동산 등의 공급(부지의 경우 150만페소 이하, 주택의 경우 250만페소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되며, 2021년 이후 공급가액이 200만페소 이하인 부동산)
- ⑮ 임대료가 월 1만 5천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
- ⑯ 뉴스, 잡지, 도서 등의 출판, 인쇄, 판매 용역
- ⑰ 국제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는 여객운송 용역
- ⑱ 항공기 및 선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엔진, 부품 등 물품의 판매 및 수입
- ⑲ 항공기 및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및 운송 용역 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
- ⑳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등 금융 용역
- ㉑ 연료자, 장애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㉒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 거래(합병 등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 ㉓ 협회비, 회비 및 주택보유협회, 콘도사업 운영회사에서 실비 변상으로 수금한 요금
- ㉔ 필리핀 중앙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
- ㉕ 2019년 1월 1일 이후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처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 ㉖ 상기 언급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공급가액이 연간 300만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

VI 산출세액

1.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의 계산²⁹⁴⁾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란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일환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함에 따라 납부 의무가 생긴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매출세액이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의무가 생긴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 혹은 수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매출세액이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제하는 매입세액

가. 재화거래²⁹⁵⁾

재화의 판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속품, 사업상 사용되는 재화, 감가상각비 등을 위한 재화의 구입 혹은 수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상각대상 재화의 매입가액이 100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매입가액에서 60개월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매월 상각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한다. 다만 자본재의 사용기간이 추정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매월 상각비로 본다.

TRAIN 법률 개정사항에 따르면 상각대상 재화의 감가상각비 매입세액 공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단, 기존에 구입한 재화에 대한 상각비는 상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공제한다.²⁹⁶⁾

294)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0. Tax Credit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95) Ibid.

29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3. Value Added Tax-13.9. Input tax deduction 13.9.3. Adjustment of input tax deduction, 검색일자: 2019. 11. 11.

나. 용역거래²⁹⁷⁾

용역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매입자가 임차료 및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대상 거래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과세대상 거래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대상 거래 비율만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 초과매입세액의 처리²⁹⁸⁾

공제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매입세액 초과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세를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받거나 다른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재고매입세액공제²⁹⁹⁾

자진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선택한 개인의 경우 상품, 원재료, 비품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기초재고자산 가액의 2%와 실제 납부한 매입세액 중 큰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

마. 의제매입세액공제³⁰⁰⁾

정어리, 고등어, 원유업, 설탕 및 식용유 등을 정제 및 가공하는 사업자가 원시 농작물을 매입하는 경우 총매입가액의 4%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

297)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0. Tax Credit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98)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0. Tax Credit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299)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1. Transitional/Presumptive Input Tax Credit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300)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1. Transitional/Presumptive Input Tax Credit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Ⅶ 신고·납부

1. 신고·납부 절차³⁰¹⁾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개인은 매 분기 말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는 매 월 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점에서 연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장이 속하는 주소지의 지방재무부처, 세무서, 인가 받은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다.

2. 원천징수제도³⁰²⁾³⁰³⁾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대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에서 예납적 원천징수로 변경된다.

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의 1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01)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I COMPLIANCE REQUIREMENTS, SEC. 114. Return and Payment of Value-Added Tax,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302)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I COMPLIANCE REQUIREMENTS, SEC. 114. Return and Payment of Value-Added Tax,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303)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IRC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2018, p. 175.

VIII 환급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분기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받거나 다른 소득세액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공제증명서(Tax Credit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다.³⁰⁴⁾

폐업한 자는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세액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공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 및 공제증명서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공제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신청 내용에 전체 혹은 일부가 거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거부 결정일 혹은 발급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에 항소할 수 있다.³⁰⁵⁾

IX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

가. 등록의무자³⁰⁶⁾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공급가액이 연간 300만페소를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라디오·TV 방송 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간 공급가액이 1천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12%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이전 과세연도에 연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거나, 이후 12개월간 초과할 예정이 있는 경우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는 3%의 비율세 납세 의무만을 지니게 된다.

304)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 IMPOSITION OF TAX-SEC. 112. Refunds or Tax Credits of Input Tax,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305) Ibid.

306)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817.

나. 면세사업자의 등록선택³⁰⁷⁾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아래 해당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① 연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② 연간 공급가액이 1천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라디오·TV 방송 송출업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면세사업자
- ② 연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③ 비영리기업 혹은 단체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④ 협동조합
- ⑤ 연간 공급가액이 1천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라디오·TV 방송 송출업자 중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⑥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기업으로 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⑦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에 등록된 기업으로 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거래와 과세대상 거래를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분기로부터 3년간 변경할 수 없다.³⁰⁸⁾

307) Ibid.

308)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 822.

다. 등록 절차

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 및 파트너십의 경우 BIR Form 1905(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Update/Correction/Cancellation)를 작성하여 최초 거래일 이전에 필요 서류와 함께 본점 및 지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사업자는 연간 등록비용인 500페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및 적법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라. 등록해지³⁰⁹⁾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향후 12개월간 공급가액이 300만페소를 넘지 않을 것을 국세청에 증명하는 경우
- ② 폐업 후 향후 12개월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려는 경우
- ③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해산하는 경우
- ⑤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 ⑥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세금계산서³¹⁰⁾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발생하는 모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영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 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09)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2019. 4., p. 818.

310) 필리핀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Tax Code TITLE IV VALUE ADDED TAX-CHAPTER II COMPLIANCE REQUIREMENTS, SEC. 113. Invoicing and Accounting Requirements for VAT-Registered Persons, <https://www.bir.gov.ph/index.php/tax-code.html#title4>, 검색일자: 2019. 10. 17.

- ③ 공급하는 거래의 날짜, 수량 및 단가
- ④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에게 1천페소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별첨 6] BIR Form 1905 등록 및 변경 신청서

BIR Form No.
1905
January 2018 (ENC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Update/Correction/Cancell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Internal Revenue

(To be filled out by BIR DLN)

Fill in appropriate spaces. Mark all appropriate boxes with an "X".

PART I - TAXPAYER INFORMATION

1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2 RDO Code 3 Contact Number

4 Registered Name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for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for Non-Individual)

PART II - REASON/DETAILS OF REGISTRATION INFORMATION UPDATE/CORRECTION

5 Replacements/Cancellation of FORMS	REASON/DETAILS	6 Other Updates
<input type="checkbox"/>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 <input type="checkbox"/> B. Authority to Print (ATP) Receipts/Invoices <input type="checkbox"/> C.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Liabilities (TCL1) <input type="checkbox"/> D.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Card <input type="checkbox"/> 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ransfer of Properties (TCL2)/ Certificate Authorizing Registration (CAR) <input type="checkbox"/> F. Others (specify) _____	<input type="checkbox"/> Lost/Damaged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Accredited Printer as Requested by the taxpayer <input type="checkbox"/> Correction/Change/Update of Registration of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Others (specify) _____	<input type="checkbox"/> Closure of Business (processed to Number 4)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Civil Status (processed to Number 4) <input type="checkbox"/> Update of Books of Accounts (processed to Number 10) <input type="checkbox"/> Avail of 8% Income Tax Rate Option <input type="checkbox"/> Others (specify) _____

7 Correction/Change/Update of Registration Information

A. CHANGE IN REGISTERED NAME/TRADE NAME

Registered Name Trade/Business Name

New Registered Name/Trade/Business Name

Old _____

New _____

B. CHANGE IN REGISTERED ADDRESS

Transfer within same RDO Transfer to another RDO From (Old RDO) _____ To (New RDO) _____

Lot/Block/Phase/House/Building No. Building Name/Tower

Lot/Block/Phase/House/Building No. Street Name

Subdivision/Village/Zone Barangay

Town/City Municipality/City

Province ZIP Code

C. CHANGE IN ACCOUNTING PERIOD (Applicable to Non-Individual)

From Calendar Period to Fiscal Accounting Start Month _____ Effectivity Date (MM/DD/YYYY) _____

From One Fiscal Period to Another Fiscal Period

From Fiscal to Calendar Period

D. CHANGE/ADD REGISTERED ACTIVITY/LINE BUSINESS

New Registered Activity/Line of Business _____ Effective Date of Change (MM/DD/YYYY) _____

E. CHANGE/ADD FACILITY TYPE/DETAILS (attach additional sheet, if necessary)

Additional/New Facility

Facility Code	Facility Type (check applicable facility type)	Facility Type*
PP	PP SP WH SR GG BT RP	PP - Place of Production BT - Bus Terminal
SP		SP - Storage Place RP - Real Property for Lease with No
WH		WH - Warehouse Sales Activity
SR		SR - Showroom
GG		GG - Garage

Address of Facility

Lot/Block/Phase/House/Building No. Building Name/Tower

Lot/Block/Phase/House/Building No. Street Name

Subdivision/Village/Zone Barangay

Town/City Municipality/City

Province ZIP Code

BIR Form No. 1501 - page 2

F. CHANGE/ADD INCENTIVE DETAILS/REGISTRATIO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_____ Number of Years: _____

Legal Basis: _____ Start Date (MMDDYYYY): _____

Incentives Granted: _____ End Date (MMDDYYYY): _____

Registration/Accreditation No.: _____ Registered Activity: _____

Effectivity Date (MMDDYYYY): _____ From: _____ To: _____ Tax Regime: _____

Date Issued (MMDDYYYY): _____ Activity Start Date (MMDDYYYY): _____

Activity End Date (MMDDYYYY): _____

G. CHANGE/ADD TAX TYPE DETAILS/SUSPEND TAX TYPE/RE-REGISTER TAX TYPE

Suspend/Cancelled Tax Type/s	Form Type <small>(to be filed-up by BIR)</small>	ATC	Effectivity Date of Change (MMDDYYYY)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Re-register/Added/New Tax Type/s	Form Type <small>(to be filed-up by BIR)</small>	ATC	Effectivity Date (MMDDYYYY)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H. CHANGE/UPDATE OF CONTACT TYPE

Phone Number Mobile Number Fax Number _____

Email Address (required): _____

I. CHANGE/UPDATE OF CONTACT PERSON/AUTHORIZED REPRESENTATIVE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Suffix)

Position: _____ Title: _____

J. CHANGE/UPDATE OF NAME OF STOCKHOLDERS/MEMBERS/PARTNERS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Suffix, if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if Non Individual)

	TIN
A. _____	_____
B. _____	_____
C. _____	_____

8 Closure of Business/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 CANCELLATION OF TIN

Death As a result of merger/consolidation

Multiple/identical TIN Others (specify): _____

Failure to start/commerce business (For Non-individual)

Permanent closure of a branch

Dissolution of corporation/partnership

Effective Date of Cancellation (MMDDYYYY): _____

B. DE-REGISTER/CESSATION OF REGISTRATION

Permanent closure of business (head office) of an individual

Others (please specify): _____

Trade/Business Name: _____

Effective Date of Cessation (MMDDYYYY): _____

9 Change of Civil Status From Single to Married From Married to Single

A. Old Name/Maiden Name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Suffix): _____

B. New Name/Married Name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Suffix): _____

C. Spouse Information

Employment Status of Spouse: Unemployed Employed Locally Employed Abroad Engaged in Business/Practice of Profession

Spouse Name (Last Name): _____ (First Name): _____

(Middle Name): _____ (Suffix): _____ Spouse TIN: 0 0 0 0 0 0

Spouse Employer's Name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for Individual OR Registered Name for Non-individual): _____

Spouse Employer's TIN: _____

제5장 | 기타 조세

I 상속·증여세

1. 개괄³¹¹⁾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목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필리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과세되며, 총상속재산 평가에서 관련 공제 항목을 차감한 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6%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방식을 따르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로 기부자세(donor's tax)라고 불리운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유사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세율이 적용되거나 공제 항목이 상속세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TRAIN 법률에 포섭하여 규율하는 법령(RR 12-2018)에 따라 TRAIN 법률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상속세³¹²⁾

가. 과세대상 상속재산³¹³⁾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필리핀 시민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사망 시점의 모든 유·무형 재산의 가치에 대해 총상속재산금액이 산정된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필리핀 시민이 아니어서 비거주자인 경우 사망 당시 필리핀 관할 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으로 본다. 필리핀 관할 내에 소재한 자산은 다음과 같다.

311) NIRC of the Philippines TITLE III ESTATES AND DONOR'S TAXES CHAPTER 1, ESTATE TAX SEC. 84

312)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estate-tax.html>, 검색 일자: 2020. 1. 4.

313)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6., Country Tax Guides IBFD.

- 필리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 필리핀에서 설립되거나 구성된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의 청구권적 권리
- 사업의 85% 이상이 필리핀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의 청구권적 권리
- 필리핀에서 설립된 여타의 파트너십, 사업, 산업 등에 대한 주식 또는 권리

필리핀 시민이면서 국외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무형재산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6%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예금 및 외환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시가)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관청과 지역 또는 도시 평가관이 결정한 공정가치 중에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며, 주식은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일의 주가 및 이날의 주가가 없으면 근접일의 최대 가격과 최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이 적용되며 비상장주식인 경우 보통주는 장부가액, 우선주는 액면가액이 적용된다. 단체 및 골프 등과 같은 오락 클럽의 회원권의 공정가치는 신문이나 통상적인 공개지에서 상속일에 공개한 매수호가(bid price)로 평가된다.

나. 과세면제 상속재산

다음과 같이 일부 열거된 재산은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부의료급여(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수령액/혜택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System) 수령액
-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 수령액 및 사용인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생명보험 수령액
- 전쟁상해보상금
- 진정양도재산 및 국가 또는 정치단체 기부액

다. 상속재산의 공제³¹⁴⁾

상속재산의 공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로서 실질적으로

314)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estate-tax.html>, 검색일자: 2020. 1. 4.

경제적 이익이 상속되지 않는 부분과 반복 과세 또는 최소 공제 등의 정책적인 의도로 인한 공제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상속되지 않아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
- 상속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는 사적 채무
- 선의로 약정되고 가치대비 적정하고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 채무
- 법적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발생한 채무(조세 채무 등)

이 외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500만페소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이루어지며, 상속되는 가족주택(The Family Home)은 1천만페소를 한도로 공제되고 공동재산(conjugal property)인 경우 1천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2분의 1의 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과세된 자산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부과가 확정되어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한도로 적용된다. 이 경우 공제 비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표 2-16〉 재상속 또는 기부 후 상속재산 공제 비율

피상속인 사망 이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	공제대상 비율
1년 이내	총자산 가치의 100%
1년~2년	총자산 가치의 80%
2년~3년	총자산 가치의 60%
3년~4년	총자산 가치의 40%
4년~5년	총자산 가치의 20%

자료: NIRC Tax Code. TITLE III. Estate and Donor's Taxes. Section 86.

이 외에 공공목적으로 이전되는 재산, 피상속인의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공동 파트너십 또는 사회재산의 배우자 순지분 역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한편, 필리핀의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표준공제는 5만페소로 적용되며, 부채 중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채, 조세·주택담보 등의 부채, 재상속 또는 기부 후 상속재산 공제, 공공목적의 이전·파트너십 등의 배우자 순지분 공제만이 적용된다.

라. 세율

상속세율은 2017년까지는 5~20%의 누진세율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인해 6%의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있다.

마. 상속세 신고

1) 필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또한 개별, 재산별 또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사망증명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 파산증명서(Affidavit of Self-Adjudication), 재산에 대한 법원조정 서류(Deed of Extra-Judicial Settlement of the Estate),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 명령, 모든 재산의 증명서(Sworn Declaration)
-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증빙
- 총상속재산의 가치가 500만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항목별 자산과 공제 및 납부세액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서
- 주택관리국(Barangay Captain)의 가족주택 증명서
- 차입 등에 따른 재산에 대한 청구권 공증 서류
- 상속일 이전 3년간의 차입금액 서류
- 이전에 과세, 공공목적 이전 확인 증빙

2) 신고 절차

신고대상자는 상속 집행인 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법적 상속인이 대상이며, 상속 집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 또는 소유로 의제되는 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상속세 신고양식(BIR Form 1801)이 3부 제출되어야 한다.

3) 신고기한·장소 및 납부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meritorious)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권한으로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세무서의 인가대리은행(Authorized Agent Bank)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상속인이 필리핀 법적 거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RDO No. 39, South Quezon City)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 집행인이 국세청에 등록한 지역의 인가대리은행에 신고하며, 상속 집행인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상속 집행인의 거소하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신고 시 국세청 양식의 입금표(BIR-prescribed deposit slip)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수령하였다는 확인(machine validate)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전자적 결제나 신용·선불카드, 모바일 결제도 허용된다. 과세관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납부는 2년간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적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5년(법원에서 상속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2년(사법적 형태 이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세가 부주의, 고의 및 사기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납부세액의 2배 범위내에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증여세³¹⁵⁾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과세 구조 및 신고 절차 등이 증여자과 수증자로 변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공제가 25만페소라는 점과 신고·납부 기한이 증여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신고 및 납세 의무자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란 특성을 가지고 있다.

315)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donor-s-tax.html>, 검색 일자: 2020. 1. 4.

가. 과세대상 증여재산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세와 상당 부분 동일하며, 평가 시 공정가치 등을 적용하는 것도 동일하다. 재산의 이전 시 공정가치보다 낮게 매각하는 경우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지만,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제외한다. 다만,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매각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³¹⁶⁾

나. 과세면제 증여재산

과세면제 증여재산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 국가 또는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에 속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한 증여
- 교육, 자선, 종교, 문화, 사회복지, 연구 등의 인증된 비정부 조직 등에 대한 증여로, 증여된 재산의 30% 이상이 수증자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예로 학교, 대학, 자산 기업, 인증된 비정부 조직 및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신탁 또는 단체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수탁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다. 증여재산의 공제

상속세에도 적용되는 부채 등의 공제 이외에는 별도의 공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6%의 단일세율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2만 5천페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 증여세 신고

1)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상속세 필요 서류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은 원인행위가 사망과 증여라는

316)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Individual Taxation sec. 6., Country Tax Guides IBFD.

점에 따른 관련 서류의 유무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류가 동일하고 사망증명서 대신에 증여 증명서(Duly Notarized Original Deed of Donation)로 대체되는 등의 차이만 존재한다.

2) 신고 절차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증여자로서 하며 신고서식(BIR Form No. 1800) 또는 전자적 신고(eBIRForms)를 통해 신고한다.

3) 신고기한·장소 및 납부

신고기한은 증여 건별로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도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 및 납부 장소에 대한 규정은 상속세와 동일하다. 다만, 상속은 1회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증여는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여 건별로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과세기간 내 수차례 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 증여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일자에 1회 증여이나 여러 명의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1건의 증여 신고만 이루어진다.

II 소비세³¹⁷⁾

소비세(excise tax)는 필리핀 내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상품이 국내 판매, 소비 또는 수입되는 특정 상품들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소비세는 무게, 용량 및 다른 물리적 측정 단위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x)와 판매가격 또는 특정 기준 가치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tax)로 나뉜다.

1. 세금 납부와 환급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 수입업자 등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원유·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등은 최초 구매자 또는 이전 받는 자 등이 납세자가 된다. 또한 신고기한 및 방식의 경우도 재화별, 공급형태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소비세가 부과된 광물자원 이외의 재화가 필리핀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세액공제나 환급이 이루어진다.³¹⁸⁾

가. 신고의무 및 납세자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소득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석유(indigenous petroleum), 천연가스(natural gas), 또는 액화(liquefied)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국내 매매·교환·양도 거래의 첫 번째 구매자, 매수자 혹은 양수인에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수출되는 상품의 소비세는 소유자, 임차인, 채굴 운영자 혹은 영업권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생산 재화가 과세되지 않고 매매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자 혹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나. 기한

세금 신고에 대해 서류가 작성되고 생산지로부터 국내 상품이 이전(removal)되기 이전에

317)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index.php/bir-forms/excise-tax-return.html>, 검색일자: 2020. 1. 4.

318) J. Ocampo, K. Ocampo & N. Umar,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sec. 14., Country Tax Guides IBFD.

제조업자 혹은 생산자에 의해 소비세가 신고·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광물자원 등이 국내에서 생산·추출되는 경우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신고 및 납부 장소

국세청장의 다른 승인이 없다면 인가대리은행, 세수징수 관리국, 적정하게 인가받은 시당국 또는 지방재무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세율

가. 증류 알코올(Distilled Spirits)

증류 알코올은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소매가격의 20%의 증가세와 도수당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P20.80에서 매년 4%씩 인상되는 종량세가 부과된다.

〈표 2-17〉 증류 알코올의 소비세율

(단위: 페소)

과세연도	2013	2015	2016	2020
증가세율	15%	20%	20%	20%
종량세	20.00	20.00	20.80	24.33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41.

나. 와인(Wines)

와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분류에 따라 전체 용량의 리터당 소비세가 부과되며,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 해마다 4%씩 인상된다.

〈표 2-18〉 와인의 소비세율

(단위: 페소)

와인 종류	세율 기준	과세 유효 연도별 세율			
		2013	2015	2016	2020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750ml당	총소매가격 P500 이하	250.00	270.40	281.22	328.99
	총소매가격 P500 초과	700.00	757.12	787.40	921.15
일반 와인/ 탄산 와인	알코올 14% 이하	30.00	32.45	33.75	39.48
	알코올 14~25%	60.00	64.90	67.50	78.97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42.

다. 발효주(Fermented Liquor)

라거(lager), 에일(ale), 포터(porter) 그리고 다른 발효주와 같은 맥주와 튜바(tuba), 바시(basi), 타푸이(tapuy) 그리고 유사한 국산 발효주의 경우에는 분류당 전체 용량의 리터당 소비세가 부가되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씩 인상된다.

〈표 2-19〉 발효주의 소비세율

(단위: 페소)

발효주 종류	세율 기준	과세 유효 연도별 세율			
		2013	2015	2016	2020
라거, 에일, 포터 및 국산 발효주 용량의 리터당	총소매가격 P50.60 이하	15.00	19.00	21.00	26.43
	총소매가격 P50.60 초과	20.00	22.00	23.00	26.43
총소매가격과 관계없이 펍 또는 레스토랑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발효주 (2014년 1월 1일 이후 매해마다 4%씩 증가)		28.00	30.28	31.50	36.85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43.

라. 담배 제품(Tobacco Products)

담배 제품에 대해서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킬로그램(kg)당 1.75페소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매년 세율은 4%씩 인상된다.

〈표 2-20〉 담배제품의 소비세율

(단위: 페소)

(a) 건조시키거나 가공하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손으로 말거나 태우기 위해 감소된 상태의 경우	2018	2019	2020
		2.13	2.22
(b) 기계 또는 설비를 통해 부분적으로 제조되거나, 압축 또는 당 첨가가 되지 않은 경우	2018	2019	2020
	2.13	2.22	2.30
(c) 정교하게 잘린 쇼츠(shorts) 그리고 타바코의 파편, 조각, 클리핑, 절단, 줄기 일부 그리고 가루들의 경우	2018	2019	2020
	2.13	2.22	2.30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44.

마. 엽권련과 담배(Cigars and Cigarettes)

1) 엽권련(Cigars)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소매가격의 20%에 추가적으로 담배 개수당 2013년 기준 5페소에서 매년 4%씩 인상된다. 따라서 2019년 기준 종량세는 담배 개수당 6.58페소이다.

2) 수작업 또는 기계 등으로 포장된 담배(Cigarettes)

한 포장단위(pack)당 종량세 형태로 소비세가 부과되면 2019년 기준 포장단위당 소비세는 35페소이다.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P32.50
-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P35.00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P37.50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P40.00
- 2024년 1월 1일부터 매해마다 세율 4% 증가

바. 차량 등(Automobiles and other Motor Vehicles)

〈표 2-21〉 차량 등의 소비세율

(단위: 페소, %)

총제조가격/수입자 판매가격		세율
최소 가격	최대 가격	
0	600,000	4
600,000	1,100,000	10
1,100,000	4,000,000	20
4,000,000		50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49.

사. 사치품(Non-essential Goods)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가치의 20% 세율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 혹은 상업적으로 알려진 보석(jewelry), 진품 여부와 관계되지 않는 진주, 높은 가치의 보석과 이에 준하는 보석 및 이의 모조품을 포함한다. 장식용, 부착 또는 포함되는 높은 가치의 금속 및 이의 모조품과 상아 제품을 포함하나 수술용 또는 치과용, 식기 제품(silver-plated wares), 안경테 또는 안경 제품에 부착되는 것, 치과에서 사용되는 금·합금, 다른 치과용 치료에 사용되거나 부착되는 금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향수 그리고 화장수(Perfumes and toilet waters)
- 스포츠나 레저를 위한 요트 및 기타 선박(Yachts and other vessels)

아. 광물 제품(Mineral Products)

〈표 2-22〉 광물자원 소비세율

(a) 석탄과 코크: 미터톤 당			
	2018	2019	2020
	P50.00	P100.00	P150.00
(b) 국내에서 추출, 생산된 비금속 광물과 채굴된 자원			
	판매될 때의 실제 시장가격의 전체 매출 기준의 4%		
(c) 수입된 비금속 광물과 채굴된 자원			
	관세청에서 결정하는 관세 부과를 위한 가치 기준의 4%		
(d) 국내에서 추출한 천연 가스와 액화 천연 가스			
	세금 면제		
(e) 국내에서 추출·생산된 구리, 금, 크롬철광 그리고 이외의 모든 금속 광물			
	판매될 때의 실제 시장가격의 전체 매출 기준으로 4%		
(f) 수입된 구리, 금, 크롬철광 그리고 이외의 금속 광물			
	관세청에서 결정하는 관세 부과를 위한 가치 기준의 4%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51.

자. 그 외의 과세 상품

〈표 2-23〉 당 음료 및 미용 시술 소비세율

(a) 당 음료(Sweetened Beverages): 리터당	
칼로리가 있는, 칼로리가 없는, 혹은 칼로리 있거나 없는 혼합의 당 음료	P6.00
과당의 옥수수 시럽 혹은 칼로리가 있거나 없는 당과 혼합된 당 음료	P12.00
코코넛 과즙의 설탕 혹은 스테비올 감미료	면세
(b) 침습적 미용 시술(Invasive Cosmetic Procedures)	
침습적 미용 시술 서비스: 총수입금액 기준	5%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 Excise Taxes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Section 150.

Ⅲ 비율세

1. 서론

필리핀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매 분기별 매출액 혹은 총수입금액의 3%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협동조합 및 전문직 종사자 중 총수입금액이 5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자는 3% 비율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 과세대상 및 세율

가. 운송수단에 대한 비율세

1) 국내선 운송수단 및 주차장 운영자³¹⁹⁾

차량 임대, 운전자 고용, 운송업 계약자 및 기타 국내선 운송업을 운영하는 자 및 주차장 운영자는 분기별 총 수입금액의 3%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율세는 분기별 총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한다.

〈표 2-24〉 운송수단별 비율세 과세대상 분기별 최소 수입금액

(단위: 페소)

운송수단		최소 수입금액
지프니(Jeepney) ³²⁰⁾	마닐라 및 기타 도시	2,400
	지방	1,200
공공버스	승객 30명 이하	3,600
	승객 30명 초과 50명 이하	6,000
	승객 50명 초과	7,200
택시	마닐라 및 기타 도시	3,600
	지방	2,400

자료: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17

319)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17

320) 전쟁 후 남겨진 미군의 군용 트럭을 개조해 만든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2) 국제선 운송수단³²¹⁾

필리핀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국제 항공 운송수단을 영위하는 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분기별 총수입금액의 3%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필리핀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국제 해상 운송수단을 영위하는 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분기별 총수입금액의 3%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프랜차이즈세³²²⁾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만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 라디오 및 TV 방송영업은 총수입금액의 3%, 수도와 가스 공급업은 총수입금액의 2%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단, 라디오 및 TV 방송영업자는 비율세 대신 부가가치세 납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한 경우 취소 할 수 없음).

다. 통신세³²³⁾

1) 납세의무자

필리핀에서 전화, 전신, 전화 교환기 및 무선으로 전송되는 모든 정보통신수단으로부터 얻는 서비스 수입의 10%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통신세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비율세를 징수하고 각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면제 요건

아래 기관에서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비율세 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① 정부: 필리핀 공화국 정부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의 서비스 수수료 및 정치적 활동
- ② 외교 서비스: 영사관, 외국 정부의 영사관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의 서비스 수수료

321)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18

322)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19

323)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0

- ③ 국제기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의 서비스 수수료
- ④ 뉴스 서비스: 신문, 방송매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 신문 · 방송 소속사로부터 뉴스 등을 전송하는 경우의 서비스 수수료

마. 오락세³²⁴⁾

콕핏트(Cockpits)³²⁵⁾의 소유자 · 임차인 · 진행자와 카바레, 클럽, 복싱, 전문 농구경기, 하이알라이(Jai-Alai)³²⁶⁾ 및 레이싱경기를 운영하는 경우 아래의 세율로 오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콕핏트 소유자: 18%
- ② 카바레, 클럽: 18%
- ③ 복싱: 10%
- ④ 전문 농구경기: 15%
- ⑤ 하이알라이(Jai-Alai) 및 레이싱경기: 30%

오락세 계산대상 총수입금액은 모든 소유자, 임차인 또는 진행자가 영수한 금액을 의미하며, TV, 라디오 및 영화 판권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포함한다. 소유자, 임차인 또는 진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매 분기 말에 지난 후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매 과세분기 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기한 내 적절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우승금액에 대한 비율세³²⁷⁾

경마에서 우승하여 우승금액 혹은 배당금을 수령한 자는 해당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우승자에게 티켓 가격을 공제한 후 수령한 우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단, 일부 특수한 내기에서(double, forecast, quinella and trifecta) 우승하게 된 경우, 4%의 세율로 과세함]. 더불어 경마에서 우승한 자가 상품을 수령한 경우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324)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5

325) 자동차 경주용 차에서 드라이버가 앉는 좌석 또는 항해 시 보트 조종석

326) 3면이 벽으로 된 경기장에서 교대로 공을 치며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17세기 무렵부터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행해지던 펠로타(pelota)가 개량된 월 핸드볼(wall handball) 계통의 경기

327)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6

진행자, 매니저 및 경마 운영자는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한 이후 2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서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 금융상품 등에 대한 비율세

1) 은행 및 준금융 비은행의 금융소득³²⁸⁾

은행 및 준금융 비은행이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아래 세율에 따른 비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만기가 5년 이상인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1%
만기가 5년 이하인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5%
(단, 기존의 만기 종료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변경된 실제 종료일을 만기일로 보아 대상 세율을 적용함)
- ②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수익: 0%
- ③ 사용료수익 및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등: 7%
- ④ 외화, 채무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이익: 7%

2) 기타 비은행의 금융소득³²⁹⁾

기타 비은행 등은 만기 5년 이상인 상품으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의 1%, 만기 5년 이내 상품으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의 5%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만기 종료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변경된 실제 종료일을 만기일로 보아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3)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³³⁰⁾

보험회사가 개인, 회사 및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의 2%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및 협회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료를 수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협동조합 및 협회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28)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1

329)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2

330)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3

단,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수입은 비율세가 면제된다.

- ① 보험료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환급되는 보험료
- ②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보험료
- ③ 비거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필리핀 외부에서 영업하는 내국법인, 회사 및 협회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가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 ④ 필리핀 외부의 재산을 보험대상 자산으로 하는 재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가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 ⑤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보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

4)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³³¹⁾

화재, 해상 및 기타 보험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리인은 보험료의 4%의 비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보험료의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필리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을 납부하는 보험대상 자산의 소유자는 보험료의 5%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³³²⁾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판매, 교환, 양도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자는 이를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0.6%를 비율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또는 상장을 통해 판매, 교환 및 양도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일정 세율만큼 비율세를 납부해야 한다.

〈표 2-25〉 거래지분비율별 적용세율

(단위: %)

거래지분비율	세율
25% 이하	4
25% 초과 33 1/3% 이하	2
33 1/3% 초과	1

자료: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7

331)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4

332)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7

3. 신고 및 납부³³³⁾

가.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비율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별 매출액, 총수입금액을 매 과세분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비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등록을 취소하고 비율세를 납부하기로 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율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비율세 납세의무가 있던 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국세청에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장소

국세청장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비율세 납세의무자는 매 지점 또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모든 지점을 연결하여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의 사업장이 속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한 은행 대리점, 지방 세무서, 징수 대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33) NIRC Tax Code, TITLE V. OTHER PERCENTAGE TAXES, Section. 128

IV 인지세

1. 서론

필리핀 세법에 따르면 문서, 금융상품, 대출 계약과 어음 그리고 의무, 권리 및 재산의 이전 혹은 양도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가 부과·징수되고 납부되어야 한다. 인지세는 필리핀에 소재하거나 권리가 필리핀 원천 자산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문서에 서명, 발행, 승인, 이전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³³⁴⁾

2. 과세문서 및 세액

가. 주식과 채권 판매 계약 등에 대한 인지세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³³⁵⁾

협회, 회사 및 법인이 조직 구성, 구조조정 혹은 법적인 목적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실제 발행금액의 200페소당 2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식 또는 주식 증서의 판매 및 이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³³⁶⁾

협회, 회사 및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주식 및 주식 증서를 이전하는 경우, 더불어 증권을 백지양도하거나 향후 대금 지급 및 주식 양도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의 200페소당 1.5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식의 액면금액이 없는 경우 신주 발행 시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34)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3

335)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4

336)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5

3) 외국에서 발행된 채권, 채무증서, 주식 혹은 부채의 증서인 경우³³⁷⁾

외국에서 발행된 채권, 채무증서, 주식 혹은 부채의 증서가 필리핀 내에서 발행 및 양도 되는 경우 필리핀에서 발행된 해당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나. 금융 계약 등에 대한 인지세

1) 수익 증서, 재산의 이자 및 원금 증가분에 대한 각서³³⁸⁾

협회, 회사 및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익 증서, 재산의 이자 및 원금 증가분에 대한 각서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서의 액면금의 200페소당 1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은행 수표, 은행 어음, 무이자 예금 증서 등³³⁹⁾

은행 수표, 은행 어음, 무이자 예금 증서 등 은행, 신탁회사 또는 개인, 회사, 법인 등이 발행한 지급 증서 등은 각 증서당 3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채무 증권³⁴⁰⁾

모든 채무 증권의 발행은 발행가액의 200페소당 1.5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증권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365일 중 계약일자만큼의 비율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 채무 증권에는 대차 거래에 따른 증서를 모두 포함하며, 채권, 차관 계약, 약속어음,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이 발행한 증권, 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4) 환어음, 어음³⁴¹⁾

모든 환어음 및 어음은 액면금액의 200페소당 0.6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37)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6

338)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7

339)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8

340)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79

341)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0

5) 해외 환어음 및 신용장³⁴²⁾

필리핀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해외 환어음은 액면금액의 200페소당 0.6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액면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필리핀 페소로 환산한 만큼의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본다.

다. 보험에 대한 인지세

1) 생명보험³⁴³⁾

생명보험 등 사람의 사망 혹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계약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 표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 2-26〉 생명보험 금액에 따른 세액

(단위: 페소)

보험 금액	세액
10만페소 이하	면제
10만페소 초과 30만페소 이하	20
30만페소 초과 50만페소 이하	50
50만페소 초과 75만페소 이하	100
75만페소 초과 100만페소 이하	150
100만페소 초과	200

자료: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3

2) 손해보험³⁴⁴⁾

손해보험 등 화재나 해상 사고 등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료의 4페소당 0.5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보험 계약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342)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1 · 182

343)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3

344)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4

3) 신원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 등³⁴⁵⁾

개인, 협회, 회사 및 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 종업원의 직무 불성실, 배임, 횡령 등에 대한 보험 및 기타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료의 4페소당 0.5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금 및 상조보험³⁴⁶⁾

연금 등 이와 유사한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료의 200페소당 0.5페소의 인지세를, 상조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료의 200페소당 0.4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장보험 등(Indemnity Bonds)³⁴⁷⁾

지급금액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 의무 수행, 적절한 회계처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및 이와 유사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보험료 (premium)의 4페소당 0.3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담보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인지세

1) 담보, 저당, 및 신탁증서³⁴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저당권(mortgage, pledges), 신탁증서(deeds of trust) 등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보증금액이 5천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 40페소
- ② 보증금액이 5천페소를 넘는 경우: 초과하는 5천페소당 20페소

345)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5

346)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6

347)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7

348)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5

2) 부동산의 판매와 양도³⁴⁹⁾

부동산의 양도, 증여, 계약이권양도 거래 등에 의해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 증서, 계약서 등의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거래를 통해 수령한 금액이 1천페소를 넘는 경우: 15페소
- ② 거래를 통해 수령한 금액이 1천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천페소당 15페소

단, 증여세 면제 대상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3) 기타 증권의 양도 및 갱신³⁵⁰⁾

저당계약, 보험계약의 계약이권양도 및 양도 거래, 계약증서의 갱신 및 연장, 기타 채무증서상 변경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기존 상품에 부과된 세율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마. 선박 운송 관련 인지세

1) 선하증권 등³⁵¹⁾

필리핀 내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강을 건너는 상선(ferries)은 제외함].

- ① 상품의 가격이 100페소를 초과하나 1천페소 미만인 경우: 2페소
- ② 상품의 가격이 1천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20페소

승객 수화물과 동반하여 상품 등을 운송하는 화물증권(freight ticket)의 경우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다.

349)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6

350)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8

351)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1

2) 용선계약 등³⁵²⁾

선박, 화물선, 증기선의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선박 등이 1천톤(tonnage) 이하이고, 용선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50페소(단, 6개월 초과 시 추가 1개월당 50페소)
- ② 선박 등이 1만톤(tonnage) 이하이고, 용선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천 페소(단, 6개월 초과 시 추가 1개월당 200페소)
- ③ 선박 등이 1만톤(tonnage)을 초과하며, 용선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3천페소(단, 6개월 초과 시 추가 1개월당 300페소)

바. 기타 인지세

1) 각종 증서³⁵³⁾

손실 등에 대한 증서, 세관, 해사 손해감정인(marine surveyor)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해 발행된 증서, 공증인(notary public)이 발행한 증서, 관공서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증명서 등의 각종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30페소의 인지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2) 창고증권³⁵⁴⁾

자산을 공공 혹은 사유재산인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0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산의 가치가 200페소를 넘지 않고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인지세를 면제한다.

352)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7

353)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8

354)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89

3) 경마 티켓, 로또 등의 공인된 게임³⁵⁵⁾

경마 티켓, 로또 등 공인된 게임 티켓을 발행하는 경우 0.2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티켓 가격이 1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그 가격의 매 1페소마다 0.2페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대리투표를 위한 위임장(Proxies)³⁵⁶⁾

회사, 협회 등의 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권에 대한 대리투표를 위한 위임장을 발행하는 경우 30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종교, 자선단체 또는 예술 목적의 단체에 대한 대리투표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한다.

5) 위임장³⁵⁷⁾

모든 종류의 위임장을 발행하는 경우 10페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필리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위임장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한다.

6) 고용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³⁵⁸⁾

임대차 계약서 및 고용 계약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 및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발행하는 경우 2천페소당 6페소를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금액이 2천페소를 넘는 경우 매 1천 페소 당 2페소의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과세 문서³⁵⁹⁾

아래 거래에 따른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친족모임, 협회, 조합 등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보험 및 연금

355)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0

356)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2

357)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3

358)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4

359)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199

- ②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
- ③ 등록된 증권거래소의 증권 대차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증권의 대차거래
(단, 국세청이 승인한 적법한 증권 대차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함)
- ④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구매한 주택, 토지, 자동차, 시설장치 및 가구 등의 대출계약 및 약속어음이 25만페소(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한 금액)를 넘지 않는 경우
(단, 재무부 장관이 설정하는 금액은 물가지수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며, 3년간 변동되어서는 아니 됨)
- 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판매 및 교환 거래
- ⑥ 기존 상품의 만기일 혹은 잔여기간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담보, 임대, 보험의 양도나 부채에 대한 계약, 증서의 갱신 및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⑦ 유통 시장이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fixed income) 및 기타 증권
- ⑧ 파생상품. 환매조건부채권(REPO) 및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O)의 경우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면제됨
- ⑨ 동일한 법적 실체 내 계열사 간의 선급금
- ⑩ 신용카드 및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매출 및 서비스 계약상 채권 등(단, 해당 채권이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 ⑪ 고정된 만기일이 없는 은행 예금 계좌
- ⑫ 필리핀 중앙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계약, 증서 및 서류
- ⑬ NIRC 40(c)(2)조³⁶⁰⁾에 따른 자산의 이전 거래
- ⑭ 은행 간 콜(call)대출의 만기일이 7일을 넘지 않는 경우

4. 납부³⁶¹⁾

가. 납부기간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대상 문서가 작성, 서명, 발행, 승인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60) 필리핀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산 이전 거래에 해당함
361)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200

나. 납부장소

인지세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이 속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한 은행 대리점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은행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사업장 또는 법적 거주지가 속하는 관할 세무서, 징수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무부서에서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재무부가 정한 법규에 따라 과세문서에 인지를 구매하여 붙이거나 각인하는 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³⁶²⁾

필리핀 세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대상 문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는 적절하게 인지를 붙이지 않는 한 적법한 문서로서 기록되거나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362) NIRC Tax Code TITLE VII. Documentary Stamp Tax, Section. 201

• 신흥국의 세정연구 필리핀 •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제1장 외국인 투자정책

제2장 진출확대 방안

제1장 | 외국인 투자정책

I 외국인 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법³⁶³⁾

필리핀은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과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Negative List)를 설정하여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 보유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제한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지분 100%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관련 법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업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필리핀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는 A와 B로 구분되며, 제한 및 금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³⁶⁴⁾

가. 리스트 A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업종에 따라 허용 가능한 외국인의 지분을 0%, 25%, 30%, 40%, 49%, 6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한다.

1) 외국인 지분 보유 금지 업종(0%)

- ① 대중매체(Mass media)
- ② 전문직(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립업, 지질학,

363) 필리핀 투자위원회, http://boi.gov.ph/sdm_downloads/executive-order-184-promulgating-the-tenth-regular-foreign-investment-negative-list/, 검색일자: 2019. 12. 16.

364) 코트라, 투자유치제도-제한 및 금지(업종),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 검색일자: 2019. 12. 16.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사무관, 해양엔지니어, 배관공, 설탕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중개사, 호흡치료사)

- ③ 납입자본금 250만달러 이하의 소매 기업
 - ④ 소규모 광산 개발업
 - ⑤ 다도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및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 ⑥ 조종실에 대한 소유·운영·관리권
 - ⑦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
 - ⑧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 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⑨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 2) 외국인 지분 25% 제한 업종: 국내외 인력 송출업 및 국방 관련 건설 계약
- 3) 외국인 지분 30% 제한 업종: 광고업
- 4) 외국인 지분 40% 제한 업종
- ① RA7718 법률에 따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 ②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
 - ③ 사유지 소유
 - ④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 ⑤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
 - ⑥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
 - ⑦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계약
 - ⑧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
 - ⑨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에 대한 소유
 - ⑩ 필리핀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투자사
- 5) 외국인 지분 49% 제한 업종: 임대업
- 6) 외국인 지분 60% 제한 업종: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나. 리스트 B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외국인의 지분을 40%로 제한한다.

- ① 필리핀 국립경찰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 (탄약, 화약류 등)
- ② 필리핀 국방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 ③ 유해 약물 제조, 유통
- ④ 공중보건·윤리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및 기타 유사 업종
- ⑤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

더불어 외국인의 납입자본금이 20만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단,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거나 직원을 최소 50명 이상 직접 고용할 시에는 납입자본금 10만달러 이하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2. 투자진출형태 및 절차³⁶⁵⁾

가. 법인

법인의 범위에는 주식회사, 비주식회사, 개인기업이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라 필리핀 기업 또는 외국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투자유치기관 간에 중복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된 기관에서의 인센티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1) 주식회사

필리핀에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필리핀에서 주식회사

365) 코트라,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7>, (검색일자: 2019. 12. 16.)

를 설립할 시에는 5~15인의 발기인, 5~15인의 이사가 필요하다. 발기인 및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발기인은 홀수로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이사의 교체, 정관 변경 등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한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발기인 및 이사의 과반은 필리핀 거주자(체류 일수에 관계없이 적법한 비자를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자)여야 하고, 기업 비서는 필리핀 국적자여야 한다. 재무담당자(Treasurer)의 경우 지분율 4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며 주금납입증명서에는 필리핀 내 은행에 최소 5천페소 이상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민국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62만 5천페소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업종별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 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 ② 임대차 계약
- ③ 투자유치기관 등록(해당자에 한함)
- ④ 국세청 납세자 등록
- ⑤ 사업자등록증 신청

2) 비주식회사

비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비영리법인이 대표적인 비주식회사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사하며,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 100만페소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3)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주로 산업통상부에 등록된 소규모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외국인 투자대상이 아니며, 소규모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중 외국인 지분 보유 금지 업종에 해당된다.

나. 지사

지사는 외국 기업의 현지 사무소로서 모든 법률 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형태이다. 현지 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지사의 경우 한국의 본사까지 그 책임 소재가 미치게 된다. 지사의 경우 투자유치기관 중 투자위원회(BOI)에 등록할 수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청(PEZA), 클락개발공사(CDC), 수빅자유구역관리청(SBMA)에는 등록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어, 설립 시 20만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요구된다.

지사를 설립할 시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유사하며, 업종별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 행위를 한다. 연락사무소의 영업활동 범위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에 제한되며, 본사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한 필리핀 내 직접적인 소득창출은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에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국세청에 인지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록, 영업허가서 발급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다.

II 외국인투자특례제도

1. 개관³⁶⁶⁾

필리핀은 11개 기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투자위원회(BOI)와 경제자유구역청(PEZA)이며, 여기에 특정 경제특구를 관할하는 수빅자유구역관리청(SBMA)과 클락개발공사(CDC)를 더하면 필리핀의 대표적인 4대 투자유치기관이 된다. 투자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산하기관이며, 수빅자유구역관리청과 클락개발공사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투자유치기관은 투자 신청 기업을 심사하고 해당 기업의 등록,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³⁶⁷⁾

이 중 경제자유구역청은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이나 기업의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며, 주로 IT, 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사회기반사업을 지원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³⁶⁸⁾

대체로 조세혜택은 주로 조세감면 형태이며, 그 외에 토지 장기임대 등의 입지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기관마다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어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 조세혜택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비교하여 기업에 가장 유리한 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³⁶⁹⁾

투자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수빅자유구역관리청과 클락개발공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투자혜택을 <표 3-1>과 같이 비교하였다.³⁷⁰⁾ 수빅자유구역관리청과 클락개발공사가 제공하는 투자혜택은 동일하다. 투자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제공하는 투자혜택도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경제자유구역청과 다르게 투자위원회에서는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국내나 지방세 납부를 대신하여 총수익의 5% 세율로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특별세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366) '1. 개관'은 다음의 출처에서 인용하였다.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367)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368)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369)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370)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Incentives to Investors," <http://boi.gov.ph/how-to-setup-business/incentives-to-investors/>, 검색일자: 2019. 12. 5.

〈표 3-1〉 기관별 주요 투자혜택 비교

투자혜택	투자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수빅자유구역 관리청	클락개발공사
근거규정	executive order No. 226	republic act No. 7916	R.A.7227 BCDA	
소득세 면제	법인 유형별 4~6년, 최장 8년까지 가능	법인 유형별 4~6년, 최장 8년까지 가능	모든 지방세와 국세 면세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세, 재산세, 종가세(ad valorem taxes)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일정 요건에 부합한 법인은 3년간 연장	일정 요건에 부합한 법인은 3년간 연장		
총수익의 5% 세금 납부 선택	n/a	소득세 면제기간 종료 후 국세나 지방세 대신 총수익의 5% 세율로 세금 납부	국세나 지방세 대신 총수익의 5% 세율로 세금 납부	
자본설비, 예비부품이나 소모품의 수입	0% 세율	관련 조세 및 관세 면세 (tax and duty free)	관련 조세 및 관세 면세 (tax and duty free)	
부동산용료, 수출세, 관세와 기타 수수료 면세	면세	면세	n/a	
외국인 고용 허용	가능	가능	가능	

자료: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Incentives to Investors,” <http://boi.gov.ph/how-to-setup-business/incentives-to-investors/>, 검색일자: 2019. 12. 5.

2. 투자위원회(BOI) 제공 투자특례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법인소득세’ 중 ‘VI. 조세혜택’편에서 투자위원회가 제공하는 법인세 혜택을 상술하였다.

투자위원회는 투자법에 따라 법인의 등록업무와 각종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혜택은 투자법에 따라 발표되는 ‘투자유치우선분야’를 통해 제공된다.

가. 투자법의 적용대상 법인³⁷¹⁾

투자위원회에 등록하고 투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에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발

371)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검색일자: 2019. 12. 2.

표하는 투자유치우선분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리스트에는 없으나 다음의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위원회에 등록하면, 투자혜택의 수혜대상이 된다.³⁷²⁾

- ① 외국인 지분³⁷³⁾ 40% 이하인 필리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② 외국인 지분 40% 초과한 필리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③ 외국인 지분 40% 초과하여 외국 기업이 내수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유치우선분야나 선도기업(pioneer)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경우

나. 일반적인 금전적 투자혜택

투자위원회에 등록 시 소득세 감면이나 급여에 대한 비용공제뿐만 아니라 원자재 등의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항만세나 관세에 대한 면세혜택 등이 제공된다.³⁷⁴⁾

1) 소득세(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감면과 급여에 대한 비용공제는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법인소득세' 중 'VI. 조세 혜택'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가축이나 유전물질에 대한 관세 등³⁷⁵⁾

법인의 등록일이나 사업운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번식용 가축(breeding stocks)과 유전물질(generic materials)을 수입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수입과 관련한 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372)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7. BOI, PEZA는 어떤 기관인가?, 검색일자: 2019.12.2

373) 지분은 유통주(outstanding capital stock)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74)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75)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 -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 ① 필리핀에서 해당 가축이나 유전물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거나 필리핀 내에서 유사한 품질 또는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가축이나 유전물질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② 법인이 투자위원회에 등록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한편, 법인이 번식용 가축이나 유전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입 시 면제되었을 관세와 기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100% 세액공제한다.

- ①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품목일 것
- ② 등록 법인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일 것
- ③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④ 법인의 등록일이나 사업운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매할 것

3)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세액공제³⁷⁶⁾

법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제조, 처리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소모품(supplies), 원재료(raw materials)와 반가공품(semi-manufactured products)의 관세와 관련 조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수입된 예비부품에 대한 관세 등 감면³⁷⁷⁾

보세창고를 보유한 등록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필수 소모품(supplies)이나 위탁설비(consigned equipment)의 예비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와 관련 조세가 면세된다. 여기서 일정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 ① 생산물품의 70% 이상을 수출할 것

376)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77)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 ② 필리핀 내에서 수입된 물품과 유사한 품질, 합리적 가격, 충분한 수량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것
- ③ 법인의 보세 제조 창고(the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에서만 수입된 물품이 사용될 것

5) 수출세, 부두 사용료, 각종 수수료의 면제³⁷⁸⁾

투자위원회 등록 법인은 비전통적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세, 부두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6) 위탁설비의 사용³⁷⁹⁾

법인이 재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위탁 기계, 설비, 예비부품은 기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등록 법인이 해당 위탁 설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자본설비, 예비부품이나 부속품의 수입 관세 감면³⁸⁰⁾

투자위원회에 신규로 등록한 개발기업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 자본설비, 예비부품과 부속품의 수입 시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는다. 여기서 일정 요건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한다.

- ① 관세법(the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에 따른 관세코드가 Chapters 40, 59, 68, 69, 70, 73, 76, 82, 83, 84, 85, 86, 87, 89, 90, 91, 96로 분류된 경우
- ② 수입한 물품과 유사한 품질의 물품이 합리적 가격으로 충분한 수량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경우
- ③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수입 물품을 등록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378)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79)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80)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다. 일반적인 비금전적 투자혜택³⁸¹⁾

외국인 고용 허용, 투자금이나 수익금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 보장, 수입 장비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³⁸²⁾

1) 외국인 근로자 고용³⁸³⁾

등록법인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감독(supervisory), 기술(technical)이나 자문(advisory)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에 외국인의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 가능 기간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년보다 연장될 수 있다.

2) 관세 통관 절차의 간소화³⁸⁴⁾

투자위원회는 장비, 예비 부품, 원재료와 소모품의 수입 관세 절차와 기업의 가공생산물(processed products)의 수출 관세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보세창고 시스템의 사용³⁸⁵⁾

투자위원회에 등록한 수출 법인은 투자위원회가 발행한 안내지침에 따라 필요 시 제조나 무역활동을 위해 보세창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381) 투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82)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83)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84)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85) IBFD,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1.9. Incentives-1.9.4.1. BOI-registered enterprises, 검색일자: 2019. 10. 14.

3. 경제자유구역청(PEZA) 제공 투자특례³⁸⁶⁾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이나 운영에 참여한 기업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받는 각종 투자혜택을 나눠서 설명한다.

가. 경제자유구역 개관³⁸⁷⁾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이나 경제 특구의 운영, 관리나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³⁸⁸⁾ 필리핀의 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의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업종별로 지정된 자유무역지대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조 경제 특구(manufacturing economic zone): 74개
- ② 정보통신 지역 및 센터(information technology parks and centers): 262개
- ③ 농업 관련 경제 특구(agro-industrial economics zone): 22개
- ④ 관광 경제 특구(tourism economic zone): 19개
- ⑤ 의료 관광 지역 및 센터(medical tourism parks and centers): 2개

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운영 관련 투자혜택³⁸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한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얻는다.³⁹⁰⁾

386)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387)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나. 투자입지여건,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388)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7. BOI, PEZA는 어떤 기관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89)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재인용)

390)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조세혜택

- ① 국세나 지방세 대신 총수익의 5%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 선택 가능
- ② 국내 매입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
- ③ 예납적 원천징수세 면제

기타 금전적혜택³⁹¹⁾

- ④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파이낸싱(financing) 지원
- ⑤ 외부(off-site) 인프라 시설 제공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한 법인은 다음과 같은 비금전적인 혜택도 얻는다.³⁹²⁾

- ① 외국투자자와 그 가족에 대해 영구적인 거주 자격 부여
- ② 외국인 고용 허용
- ③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대한 홍보 지원

다. 경제자유구역(PEZA)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혜택

주요 업종별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법인이 받는 투자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제조업³⁹³⁾

수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세, 관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등의 세목에서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다.

391)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92) 투자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된 FAQ(한국어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투자위원회, <http://boi.gov.ph/wp-content/uploads/2018/02/boi-faq-in-korean.pdf>,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9. 12. 2.

393)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및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 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면제
 - 선도(pioneer)기업은 6년, 비선도(non-pioneer)기업은 4년 동안 소득세 면제
 - 개발프로젝트(expansion project)는 3년 동안 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면제
- ② 다음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 면제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
 - 사업 개시 후 첫 3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이 50만달러 이상일 것
 - 소득세 면제 연장 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 비율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 면제 연장 전 등록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평균 비용이 전체 원재료 비용의 50% 이상일 것
- ③ 국세나 지방세(재산세 제외) 납부 대신 총이익(gross income)의 5%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세 납부³⁹⁴⁾
- ④ 원자재, 자본재, 기계류와 예비부품 수입 시 수입 관련 관세와 조세 면제
- ⑤ 부두사용료, 수출세, 각종 수수료 면제
- ⑥ 국세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현지 구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⑦ 지방세(재산세 제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면허발급비용 관련 조세 면제. 제조, 가공이나 산업 목적상 자유경제지대에서 사용 중인 기계류에 대해서는 작동 개시 후 3년 동안 고정자산세(real estate tax) 면제³⁹⁵⁾
- ⑧ 예납적 원천징수세(expanded withholding tax) 면제

2) IT 정보통신업³⁹⁶⁾

IT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소득세, 관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등의 세목에서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세, 관세 면제 등 대부분의 조세혜택은 수출제조업과 동일하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면제 및 면제 기간, 면제의 연장과 연장 요건, 총소득의 5% 세금 납부 선택은 수출제조업과 동일하다.

주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다.

394)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총이익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395)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세는 과세대상이다.

396)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및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 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면제
 - 선도(pioneer)기업은 6년, 비선도(non-pioneer)기업은 4년 동안 소득세 면제
 - 개발프로젝트(expansion project)는 3년 동안 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면제
- ② 다음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 면제기간을 최대 8년까지 1년 연장
 - 사업 개시 후 첫 3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이 5만달러 이상일 것
 - 소득세 면제 연장 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 비율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국세나 지방세(재산세 제외) 납부 대신 총이익(gross income)의 5%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세 납부³⁹⁷⁾
- ④ 장비 및 부품 수입 시 수입 관련 관세와 조세 면제
- ⑤ 장비 수입 선적에 부과되는 부두사용료 면제
- ⑥ 지상파 통신, 전기나 수도요금 등의 유틸리티 요금, 건물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⑦ 지방세(재산세 제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면허발급비용 관련 조세 면제. 제조, 가공이나 산업 목적상 자유경제지대에서 사용 중인 기계류에 대해서는 작동 개시 후 3년 동안 고정자산세(real estate tax) 면제³⁹⁸⁾
- ⑧ 예납적 원천징수세 면제

3) 관광경제특구³⁹⁹⁾

관광업(의료관광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도 소득세, 관세 등의 혜택을 받으나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나 라이선스비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관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4년 동안 소득세 면제
- ② 국세나 지방세(재산세 제외) 납부 대신 총이익(gross income)의 5%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⁴⁰⁰⁾

397)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총이익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398)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세는 과세대상이다.

399)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및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 ③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④ 장비 수입 선적에 부과되는 부두사용료 면제
- ⑤ 지상파 통신, 전기나 수도요금 등의 유틸리티 요건, 건물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⑥ 예납적 원천징수세 면제

4) 농림수산경제특구⁴⁰¹⁾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소득세, 관세 등의 혜택을 받으며, 지방정부부과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받는다.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4년 동안 소득세 면제
- ② 국세나 지방세(재산세 제외) 납부 대신 총이익(gross income)의 5%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⁴⁰²⁾
- ③ 생산장비, 농기구, 기계류, 부품, 가축에 대한 수입 관련 관세 및 조세 면제
- ④ 수출세, 부두사용료, 각종 수수료 면제
- ⑤ 지상파 통신, 전기나 수도요금 등의 유틸리티 요건, 건물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⑥ 각종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mayor's permit, business permit, 취업허가서, 건강확인서, 위생 검사비, 쓰레기 수거비 등)

5) 물류서비스업⁴⁰³⁾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물류서비스업(logistics services enterprise)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부 원부자재에 대한 제세금은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

400)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총이익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401)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및 경제자유구역청, "Fiscal Incentives to PEZA-Registered Economic Zone Enterprises." <http://www.peza.gov.ph/index.php/eligible-activities-incentives/fiscal-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2. 2.
402)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총이익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403)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춘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물류서비스 법인에 대한 주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판매용 원자재나 반제품, 경제자유구역청에 등록된 수출 제조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포장, 절단, 가공한 원자재나 반제품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등록된 수출법인에 위탁 판매하거나 직접 수출하는 원자재나 반제품의 경우 관련 관세나 조세를 면제
- ② 검사, 포장, 저장과 선적을 위한 원자재의 국내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 수빅자유구역청(SBMA) 제공 투자특례⁴⁰⁴⁾

수빅자유구역의 정식 명칭은 Subic Bay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줄여서 Subic Bay Freeport로 표기한다. 수빅자유구역청이 유치하는 주요 산업은 공항이나 항만의 운영, 조선, 물류, 발전, 폐수처리, 관광과 IT 등의 분야이다.

대통령이 2007년 EO 675에 서명하고 수빅자유무역항 외 인근 올롱가포(Olongapo City) 등에 투자하는 법인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혜택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수빅자유구역청은 수빅특별경제구역 및 자유구역(Subic Special Economic & Free Port Zone, SSEFPZ) 내 입주한 법인에만 소득세나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투자유치 유망 지역으로 부상한 올롱가포 수빅 지역(잠발레스, 모롱, 헤르모사) 지역도 투자혜택을 제공한다.

수빅자유구역청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투자혜택은 다음과 같다.

금전적 혜택

- ① 총이익의 5% 세금으로 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
- ② 원자재,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

비금전적 혜택

- ③ 역내 소재 법인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404)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 ④ 투자자에 대해 특별 비자 발급
- ⑤ 역내에서 제한 없이 면세품 구매 허용

5. 클락개발공사(CDC) 제공 투자특례⁴⁰⁵⁾

클락경제자유구역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의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곳이다. 클락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필리핀 정부는 1993년 4월 클락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클락자유구역은 과거 미 공군기지⁴⁰⁶⁾로 사용되어 잘 정비된 도로와 국제공항,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클락개발공사는 수빅만 자유구역과 클락자유구역을 동남아의 물류 및 서비스 제공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개발을 추진하였다. 클락개발공사는 항공, 물류, 제조, IT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수빅자유구역청과 동일하다.

405)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필리핀 > 투자환경 > 투자인센티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14&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1. 27.

406) 1991년 11월까지 공군기지로 사용하였으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정부가 경제특구로 개발하였다.

III 기타 외국 기업 특례

1. 기업의 인센티브

가. 연구와 개발의 투자 혜택

연구와 개발의 투자[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사업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주어진다.⁴⁰⁷⁾

R&D 투자의 자격이 되는 (자본 금액에 부과되는 지출을 제외하고)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어떤 투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i) 부동산 소득 또는 토지 개발을 위한 투자, 혹은 감가상각과 고갈(depreciation and depletion) 성향의 연구와 개발의 연결을 위한 자산 개발 그리고 (ii) 원석 또는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는 다른 광물의 존재, 위치, 넓이 및 질을 확인하는 목적의 투자에 해당한다. 투자 인센티브의 자격이 있는 단체는 BOI와 함께 투자 우선 계획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BOI(The Philippines Board of Investments)는 선호하는 지역의 투자 리스트를 올리는 연간 투자 우선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제공하는데, 선도자와 비선도자로 나눈다. 기업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① 필리핀 법에 의해 구성된 기업
- ② 미결제 주식 자본, 선거권을 소유하고 있는 필리핀 국민이 적어도 60%인 경우
- ③ 필리핀 시민이 이사회 구성원의 60%인 경우

등록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 ① 소득세 면제
- ② 노동 지출에 대한 추가적 공제
- ③ 수입된 자본 설비에 대한 세금과 의무 면제
- ④ 국내 자본 설비에 대한 세금 신용
- ⑤ 외국 국적의 고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

407) Global Master Tax&Business Guide, 2019, p. 770.

- ⑥ 가공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세금과 의무의 세금 신용
- ⑦ 수입된 예비품에 대한 세금과 의무 면제

나. 지역 본사의 혜택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 내에 있는 지역 본사, 혹은 지방의 운영 본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① 여러 차례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 ② 고용된 외국인의 총고용소득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15%
- ③ 기업 소득세율 감면 혹은 면제
- ④ 부가가치세율 감면 혹은 면제
- ⑤ 대부분의 지방세, 요금 그리고 비용(토지 개발과 설비에 대한 부동산세는 예외)에 대한 면제
- ⑥ 세금과 교육 자료와 설비 수입에 대한 면세 수입

국제 거래와 예비품 재고, 구성품, 재공품 그리고 비가공된 재료들이 유통업체 혹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외국 지역의 시장, 그리고 설립된 혹은 동시에 지역에 설립된 혹은 본사 그리고 필리핀 내의 지역 운영 본사, 또한 지역적 도매상 설립 혹은 특별 경제 구역의 도매상에 관여하는 다국적 기업에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 투자 인센티브와 제한(Investment Incentives and Restrictions)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는 필리핀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일부로, 필리핀 내에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로 외국 자본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지정하고 조건을 필요로 한다. 외국 자본 구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허가하지 않는다.

- ① 레코딩을 제외한 대중매체(Mass media)
- ② 전문직 수행(Practice of certain professions) (약사, 방사선 의학, 법)
- ③ 2만 5천달러보다 적은 자본의 지급을 마친(paid-up capital) 도매 거래 업체(Retail

trade enterprise)

- ④ 협동조합(Cooperative)
- ⑤ 개인 주식 에이전시(Private security agencies)
- ⑥ 작은 규모의 채광(Small-scale mining)
- ⑦ 핵무기,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방사선 무기, 지뢰의 제조(manufacture) · 수선(repair) · 스탱 파일링(stockpiling) · 배포(distribution)

외국 자본의 제한이 있는 구역(일반적으로 20~40%)

- ① 프라이빗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② 개인 구인(Private recruitment)
- ③ 국방 관련 구조 설계를 위한 계약
- ④ 광고
- ⑤ 천연자원의 탐색, 개발 그리고 활용
- ⑥ 개인 토지의 소유권
- ⑦ 공공 시설의 운영
- ⑧ 종교적 그룹 혹은 종교 위원회(mission board)에 의해 설립된 경우 이외의 교육 관련 기관
- ⑨ 필리핀 국가 경찰 혹은 국가 방위 허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조업, 수선, 저장, 제품의 배포 혹은 구성 요소
- ⑩ 위험한 약품의 제조와 배포

2. 그 외의 인센티브⁴⁰⁸⁾

수출 그리고 자유 무역 기업, IT 기업 그리고 PEZA에 등록된 특별 경제 구역 개발 · 운영 자들은 6년의 선도기업(pioneer firms)과 4년의 비선도기업(non-pioneer firms)에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혜택이 적용되고, 해외 품목이 경제 구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세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경제 구역 밖의 VAT에 등록된 공급지의 지역에서 구입된 상품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ITH(Income Tax Holiday) 기간의 경과 이후에 기업은 등록되고 운영된

408) Philippines Corporate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taxsummaries.pwc.com/ID/Philippines-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19. 11. 27.

경제구역과 수출이 이루어진 구역에서 5%의 특별세(special tax)를 총소득에 과세될 것이다.

필리핀 내의 지사 혹은 보조 기관, 회원들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허용하는 ROHQ(지역운영본부)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 ① 소득세의 10% 특별세율이 적용됨
- ② 지방 정부에 의한 지방세, 요금 혹은 부과금에 대한 면제, 토지 개발과 장비에 대한 고정자산세(real property tax)는 제외함
- ③ 장비와 자원의 면세 수입과 세금을 필요로 하고 ROHQ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며 지역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 BOI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됨
- ④ 자동차 수입은 관세와 세금에 부합한 과세대상이 됨
- ⑤ 공항세(travel tax), 이민 요금(immigration fees)은 면제됨

제2장 | 진출확대 방안

I 수출 및 투자진출 유의사항

1. 시장 및 소비자 특성⁴⁰⁹⁾

가. 소비인구와 성향

필리핀 현지 인구는 1억 873만 명이며,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그중 중산층 인구는 약 2,120만 명이다. 필리핀은 15~34세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3,280달러(US\$)이다.⁴¹⁰⁾

필리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주로 합리적인 가격의 저가제품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은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SM Mall of Asia를 비롯해 대형 쇼핑몰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지방 중소 도시에까지 폭넓게 들어서 있다.

또한, 필리핀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다수의 소비재 및 공산품이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내송금(Overseas Filipino Workers Remittance, OFW Remittance)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파견 근로자의 국내송금 규모는 2018년 기준 322억달러이다.

나. 서비스·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에 육박하나 제조업은 상대적

409)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23>, 검색일자: 2019. 12. 18.

410) IMF,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으로 취약하다. 서비스업에서는 관광, BPO, 건설 등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은 전자,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 외 농업, 의료, 건설, 소매 유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GDP의 70%를 민간 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소비 위주의 경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전자부품(반도체)을 비롯해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및 운송장비, 기타 공산품 등이며, 반도체, 전자 등은 인텔, TI, Sanyo, 삼성전자 등 다국적기업의 현지 공장이 대부분이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 외국인 투자/화교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반도체·전자 분야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금액이 필리핀 전체 수출의 60%를 넘나들 정도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필리핀도 유통·전자 분야 중심의 화교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다른 주요 산업으로까지 독과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 필리핀에 소재하는 국제기구(ADB) 또는 외국차관(일본, EU, 미국, 한국 등)에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라. 부의 편중과 소비 양극화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푸젠성 출신의 화교가 필리핀 상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위 3~5%의 상류층은 잦은 해외여행과 명품을 선호한다. 반면에 인구의 25%는 절대 빈곤층으로 하루 2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빈곤 퇴치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중산층이 미약해 소비시장도 고가시장(초대형 현대식 쇼핑몰)과 저가시장(재래시장)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다.

마.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공산품,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인 이른바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가격 결정, 시장경쟁 등에 이들 업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제한조치에 따라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2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그 외에는 법인 설립이 제한된다. 유통산업은 오래전 화교

자본이 장악하였고 필리핀 자국민의 자본은 형성되지 못해, 결국 이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제한 조치가 역으로 필리핀시장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드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기업환경⁴¹¹⁾

가. 입지

1) 외국인투자지역 종류

- ①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② 수빅만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 ③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CDC)

나. 등록비용 및 경영비용 현황

①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 및 등록비용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은 산업단지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루손(Luzon) 지역이 1m²당 평균 250페소(4.7달러)로 가장 높은 매입비용을 기록한다. 클락과 수빅 지역은 각각 100페소(1.9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

〈표 3-2〉 주요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

(단위: 페소)

구분	지역	평균 가격(1m ² 당)
PEZA	Luzon	250(4.7달러)
	Visayas	180(3.4달러)
	Mindanao	150(2.8달러)
Clark	Clark	100(1.9달러)
Subic	Subic	100(1.9달러)

주: 1달러 = 53.60페소, 서울 외국환중개소, 2018년 10월 30일 기준
 자료: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411)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 조사(코트라, 2019. 4.)

〈표 3-3〉 PEZA 등록비용

(단위: 페소)

구분	금액
새로운 프로젝트 지원(Non-Pioneer)	3,600(67.2달러)
새로운 프로젝트 지원(Pioneer ¹⁾)	6,000(111.9달러)
새로운 프로젝트 등록	6,000(111.9달러)

주: 개척분야(Pioneer Status) 필리핀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품목 제조업으로 단순조립 및 포장을 제외한 필리핀 정부의 농업자급도 향상 프로그램 관련 농업 부문, 재생에너지 생산 분야 등
 자료: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② 산업단지 내 경영비용 현황

필리핀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마닐라 지역의 경우 전기요금은 전력공급(배전) 독점사인 Meralco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필리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는 필리핀 제조업 투자 걸림돌 중 하나이다.

③ 상업용 부지 매입 및 임차료

필리핀 내 외국인 기업은 주로 Makati 와 Fort Bonifacio에 밀집되어 있음. 필리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인 Makati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의 m²당 평균 사무실 임차료는 2018년 기준 800~1,800페소(14.92~33.58달러)로 메트로 마닐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표 3-4〉 상업용 부지 임차료(메트로 마닐라 기준)

(단위: 페소)

지역	평균가격/m ²
Makati CBD	800~1,800(14.9~33.6달러)
Fort Bonifacio / BGC	850~1,500(15.9~28.0달러)
Ortigas Center	650~900(12.1~16.8달러)
Manila Bay Area	675~1,200(12.6~22.4달러)
Quezon City	650~950(12.1~17.7달러)
Alabang	650~750(12.1~14.0달러)

자료: Colliers International

〈표 3-5〉 상업용 부지 매매 비용(메트로 마닐라 기준)

(단위: 페소)

지역	평균가격/㎡
Makati CBD	266,177~289,521(4966.0~5401.5달러)
Ortigas Center	96,504~161,196(1800.0~3007.0달러)
Fort Bonifacio / BGC	150,000~220,000(2798.5~3007.4달러)

자료: Colliers International

3. 노무

가. 임금 수준

① 개황

필리핀 인건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는 다소 높다고 평가되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의 인건비 상승은 안정되어 있는 편임. 이와 더불어 인력 수준(영어 사용, 뛰어난 손기술, 가톨릭, 순종 등) 또한 상승하고 있어 인건비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급여 외 급식비(meal allowance, 하루 30~50페소, 약 0.6~0.9달러),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또는 통근버스 제공) 등의 수당 지급,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나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급식비 정도는 일반적),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② 최저임금

필리핀은 지난 20년간 거의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메트로 마닐라(NCR)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타 지역도 이를 준용해 임금을 인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필리핀은 수시로(주로 3개월~2년마다) 일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8년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일일 최저임금은 512페소(9.6달러)이다. 다국적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성장성이 높은 BPO(콜센터 등) 산업의 경우 신입 직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자의 90% 정도가 탈락할 정도로 구인 인력은 풍부한 편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전통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또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초임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은 필리핀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II 법인 설립 및 개인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1. 법인 설립 절차

가. 법인등기

필리핀의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해야 한다.

① 영문 상호명

사용하고자 하는 영문 상호명이 현지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경우 다른 상호명을 사용해야 하므로 영문 상호명을 확인해야 한다.

②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필리핀 내에 본점소재지 확정 후,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임대차 사무실의 Occupancy Permit 및 Real Property Tax(재산세) 납부 영수증(필수사항) 확보가 필요하며, 건물주와 계약 후 공증할 수 있다.

③ 정관 작성(공증필요)

- 사업목적(예: 제조업-상세한 서술적 설명문구 작성-사업 영역)
- 발기주주 구성(최대 자연인 15명 및 모회사): 자연인은 최소 1주 이상 보유
- 자본금 구성(지분 구성):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⁴¹²⁾
- 각 발기주주들의 영문 이름 및 필리핀의 현주소 및 본인 서명
- 각 발기주주들의 여권 사본 필요(한국인)
- 각 발기주주들의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세금납부용 번호로 신청인이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음)
- 주주 구성 및 배당률 분배에 관한 사항은 추후 주주 명단 확보 시 구성

412) 수권자본금: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에 대한 자본금

청약자본금: 수권자본금 중 발행 주식에 대한 자본금

납입자본금: 발행 주식 중 납입된 주식에 대한 자본금(실제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④ 은행 계좌 오픈

- 은행 계좌 개설 시 서명권자의 은행 직접 방문 필요
- 은행 지정 및 법인 계좌 작업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및 Secretary's Certificate 작성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음)

나. BIR 세금 납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청약자본금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인지세 및 BIR 등록비를 SEC 등기 완료 일자 기준 익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 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

- ① 한국의 영업허가서와 유사하며 Business Permit이라고도 한다.
- ② 법인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며 관련된 여러 허가를 취득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③ 다음은 관련 허가가 필요한 사항
 - Barangay Clearance: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Inspection: 법인 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개수와 배치 검사
 - Sanitary Clearance: 위생 점검으로 법인 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의 이상 유무 확인
 - Insurance: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라. BIR 등록 완료

- ① BIR 지역 분소에 따라 세미나 참석을 요구한다.
- ② Mayor's Permit 확보 후 BIR로부터 BIR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BIR등록증 및 ATP(Authority To Print, Receipt 프린트 허가증) 확보 후 invoice 및 Receipt를 프린트한다.
- ④ Books of account에 등록한다.

- 참고 1: 제세공과금
 - SEC 등기 관련 신청비용은 수권자본금 * 1% * 0.2를 기준으로 산출
 - BIR 인지세 관련은 청약자본금을 100으로 나눔
 - BIR 인지세 중, 다른 하나는 임차면적, 임차지역, 임차연수 등에 따라 책정됨
 - Mayor's Permit은 임차면적, 신청 도시 지역에 따라 차등

- 참고 2: 100% 외국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제한이 없는 업종인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자본금 20만달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또한 100% 외국인 법인의 경우, 이사회 전체 멤버의 과반수 이상이 현지 거주인으로 거주 증명(체류 비자)을 제출해야 함

2. 지사 설립 진행 절차

가. SEC 등록

- ① 이사회 결의서 SEC용(현지 지사 설립, Resident Agency 지정), 은행용(계좌 개설 은행 지정, 은행 인출권자 지정) 작성, 서명, 아포스티유 인증
- ② 전년도 및 최근 분기 재무제표 영문본, 아포스티유 인증
- ③ 모회사 정관 영문본, 아포스티유 인증
- ④ 신청서 작성
- ⑤ Resident Agent 수락 및 진술서 확보
- ⑥ 20만달러 송금 증명서 확보

나. BIR 세금 납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청약 자본금 및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인지세 및 BIR 등록비를 SEC 등기 완료 일자 기준 익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 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

- ① 한국의 영업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흔히 Business Permit이라고도 한다.
- ② 법인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는데 관련된 여러 허가를 취득하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③ 다음은 관련 허가가 필요한 사항

- Barangay Clearance: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Inspection: 법인 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개수와 배치 검사
- Sanitary Clearance: 위생 점검으로 법인 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의 이상 유무 확인
- Insurance: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라. BIR 등록 완료

- ① BIR 지역 분소에 따라 세미나 참석을 요구한다.
- ② Mayor's Permit 확보 후 BIR로부터 BIR등록증을 확보한다.
- ③ BIR등록증 및 ATP(Authority To Print: Receipt 프린트 허가증) 확보 후 invoice 및 Receipt를 프린트한다.
- ④ Books of account에 등록한다.

마. BSP(Bangko Sentral ng Pilipinas, 필리핀 중앙은행) 등록

- ① Application Form
- ② Certification Inward Remittance
- ③ Sworn Certification

바. 지사(Branch Office) 관련 특이 사항

- ① 외국기업의 현지 사무소로 모든 법률 행위 및 이익이 본사에 귀속
- ② 현지 법인과 달리 지사의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이 한국의 본사까지 책임소재 영향
- ③ 설립 시 자본금 20만달러 이상의 초기 투자 예치금 필요.
- ④ 각 회계연도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추가 예치금 필요(2012년 2월 개정-아래 참조)

1. 필리핀, 지사 설립/운영 요건 규정 개정 추진 지사 보증금 및 투자 요건 명료화, 공제 가능 항목 확대 등
 - 1.1 필리핀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외국기업 지사(Branch Office) 설립, 운영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2월 1일)
 - 1.1.1 동 가이드라인은 필리핀 상법(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Title XV(Foreign Corporations),

Section 126(Issuance of license for foreign corporations) 관련 1982년 SEC가 발표한 지침의 (guideline) 개정을 위한 것으로 초안 공표, 3월 26일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수정지침 확정 발표 예정

1.1.2 2월 1일 공표된 수정안에는 보증금 및 투자 요건(securities deposit and investment requirement) 명확화, 총수익(Gross Income) 대비 공제 가능 항목 확대, 외국 항공사 보증금에 대한 수정 formula와 신규 벌칙 조항 포함

1.2 외국기업 지사의 SEC에 대한 보증금 위탁 규정 명료화 및 총수익 계산 시 공제 가능 영역 확대

2. 필리핀 SEC에서 외국기업 지사(Branch Office) 인가 받은 기업은 인가 후 60일 내에 최소 10만페소 상당의 보증금을 SEC에 예탁해야 함. 특정연도 총수익(Gross Income)이 500만페소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 추가 납부 또는 위탁 보증금 가치가 10% 이상 하락 시 하락분만큼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추가 예탁 필요.

3. 단, 외국은행, 보험사, 비주식회사(종교단체) 등, 연락사무소,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of registered multinationals)는 예외.

4. SEC가 인정하는 위탁 가능 증권은 정부 채권 및 자산, 상장사 및 등록기업 주식 등

5. Lukban SEC Secretary는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기업 지사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공제 등에서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고 언급

6. Gross Income(총수익)에서 공제되는 사항은 반품 및 이에 따른 비용(allowances), 외국법인 및 관련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외국공급사와 관련해 발생한 판매비, 외국에서 발생한 직접 서비스비, 생산설비 감가상각 분 등) 포함

7. 보증금 미 위탁 시 라이선스 정지·취소 등의 벌칙 조항도 포함됨.

Note: 2019년 3월 개정된 상법에 의해 초기 국채 매입가는 50만페소로 상향 조정됨

1. 필요서류(Requirements for a Branch Office)

1.1 Name Verification to be completed

1.2 Authenticated copy of the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ranch office in the Philippines; designating the resident agent to whom summons and othe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the foreign corporation and stipulating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gent or upon cessation of its operation in the Philippines, any summons o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SEC as it the same is made upon the corporation at its home office.

- 1.3 Authenticated financial statements as of date not exceeding one (1) year immediately prior the application certified by a CPA of the home country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 1.4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 1.5 Resident Agent's acceptance of appointment
- 1.6 Affidavit of Resident Agent
- 1.7 Certification of inward remittance such as bank certificate

3. 연락사무소 설립 진행 절차

가. SEC 등록

- ① 현지 연락 사무소 영문명 예약 및 확보
- ② 통합 이사회 결의서 작성-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Resident Agency 지정 등의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 작성, 서명, 대사관 공증
- ③ 전년도 및 최근 분기 재무제표 영문본, 대사관 공증
- ④ 모회사 정관 영문본, 대사관 공증
- ⑤ 신청서 작성
- ⑥ Resident Agent⁴¹³⁾ 수락 및 진술서 확보
- ⑦ 은행 계좌좌 오픈 개설 후 3만달러 예치-송금 증명서 확보
- ⑧ SEC 등기증 확보

나. BIR 세금 납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청약자본금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인지세 및 BIR 등록비를 SEC 등기 완료 일자 기준 익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13) Resident Agent는 현지 거주 비자 소유자로 임명되어야 하고,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의 계좌개설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름

다. 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

- ① 한국의 영업허가서와 유사하며 Business Permit이라고도 한다.
- ② 법인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며 관련된 여러 허가를 취득하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③ 다음은 관련 허가가 필요한 사항

- Barangay Clearance: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Inspection: 법인 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개수와 배치 검사
- Sanitary Clearance: 위생 점검으로 법인 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의 이상 유무 확인
- Insurance: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라. BIR 등록 완료

- ① BIR 지역 분소에 따라 세미나 참석 필요
- ② Mayor's Permit 확보 후 BIR로부터 BIR등록증 확보
- ③ Books of account 등록(Disbursement Book 관련)

■ 필요서류(Requirements for a Representative Office)

1. Name Verification to be completed
2. (Authenticated) Submission of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Philippines. The board resolution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3. (Authenticated)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arent company certified by a CPA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4.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submitted to Philippin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5. Resident Agent for the representative office
6. Acceptance of Resident Agent
7. Affidavit of Resident Agent
8. Certification of inward remittance for minimum paid-up capital to local bank. 30,000 USD

■ 필리핀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법적 정의

A representative office promotes the products and/or services of the Company it represents, but cannot conclude contracts with local entities on behalf of its parent Company. Such contracts must be directly entered into between the Company head office and the local entity. Its activities are limited to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products and/or services.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사를 대신하여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있으나 본사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행위를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마케팅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By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allowed of a representative office, it cannot derive income from the Philippines. The test of whether an office is a representative office or not, is whether it derives income from its operations.

연락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필리핀 내에서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은 불가능하며, 소득 창출 여부에 의해 일반 법인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게 된다.

■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의 가능 활동 업무

1. Dissemination of foreign market information(외국시장 정보에 대한 보급)
2. Promotion for export of Philippine products specially nontraditional products(비전통적인 필리핀 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활동)
3. Acting as a message centre or a communication centre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the head office(모회사와 현지 업체와의 연락 및 통신을 위한 사무소 활동)
4. Promotion of products presently being distributed in the Philippines(최근 필리핀에 배포된 상품에 대한 홍보)

5. To render, assist and give technical know-how and training to existing and future customers of the Company's products(기존 고객, 잠재적 고객에 기술적인 노하우 및 교육에 대한 전수 및 보조 업무)
6. To provide and facilitate better communication and contact between its head office and affiliated companies on one hand and present and future customers on the other(모회사와 연계된 현지 회사 또는 예상 고객과의 원활한 업무와 연락 제공 업무)
7. To inform potential customers of price quotations of the head office and affiliated companies (모회사와 연결된 잠재적 고객에게 상품의 가격 및 견적에 관한 정보 제공)
8. To conduct and make surveys and studies of the market,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 in the Philippines(필리핀 금융 상황 및 시장 조사에 대한 연구)
9. Attend to the needs of end-users of its products in the Philippines advising them on the proper care and maintenance of their equipment and to communicate to its head office problems that call for consultations. (현지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 장비 및 제품의 유지보수 관련 문제해결 업무)

4. 외국인 개인사업자 등록

가. 필요서류(각 5부씩 제출)

- 인터뷰 Sheet(인터뷰어의 적격 유무 및 추천 내용 포함)
- Business Name Application-Form #16
- Foreign Investor's Application-Form #17
- ID Picture(여권 사이즈) 외국인, 현지인 각 7매
- 외국인 투자자의 여권 및 비자(ACR/ICR, SIRV)
- 필리핀 Resident Agent 임명확인서
- 외국인 투자자가 비거주인인 경우 현지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한 송금증명서
-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거주인인 경우 은행 잔고 증명서
- 외국인 투자자 해외 역송금 시 중앙은행 신고 확인서
- 투자금이 현물자산을 포함한 경우 중앙은행 확인서 제출
- 그 외 유관기관 클리어런스(해당 시)

나. 비용

- 등록비: 500페소
- 신고 요금(Filing Fee): 5천페소

다. 기간

-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하지 않는 이상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내 등록 가능

라. 기타

- 외국에서 서명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http://www.dti.gov.ph>로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명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가능한 사업자 등록명 3가지를 확보해야 함
- 신청양식 작성 시 확인된 3가지 사명을 명시해야 함
- 신청서류 외 DTI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승인 시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서류 검토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 승인 시 DTI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III 유관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⁴¹⁴⁾

〈표 3-6〉 유관 기관 연락처 및 주소

기관	연락처	주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63-2-856-9210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한인상공회의소(KCCP) (http://kccp.ph/)	+63-2-856-9210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re 121 Valero Street, Salcedo Village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https://www.kotra.or.kr/KBC/manila/KTMIUI010M.html)	+63-2-8894-4084	KOTRA, UNIT1, 14th FL. Ore Central, 31st Street, corner 9th Avenu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Metro Manila
한인회 (http://www.korea.com.ph/)	+63-2-886-4848	1104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Makati City, Metro Manila
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63-2-470-1853	2002_A West Tower, Philippines Stock Exchange Center, Ortigas, Pasig City, Metro Manila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63-2-403-9780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한국문화원 (http://phil.korean-culture.org/ko/6/contents/293)	+63-2-555-1711	2F Mancor Corporate Building, 32nd St., Bonifacio Global City, 1634 Taguig City, Metro Manila

414)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9&commItemSn=427&area=1#area1>, 검색일자: 2019. 12. 18.

참고문헌

[제1편 총론]

국내문헌

엄은희, 「필리핀 경제특구의 성격 변화와 까비테 지역의 한국 투자기업」, 『아시아연구』, 제21권, 제3호, 2018, pp.51-84.

외교부, 「필리핀 개황」, 외교부 동남아1과, 2019.

해외문헌

B. E. Diokno, “Philippine fiscal behavior in recent history,” *THE PHILIPPINE REVIEW OF ECONOMICS*, Vol. 47, No. 1, 2010, pp.39-87.

J. Ocampo, K. Ocampo and N. Umar,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Country Tax Guides,” IBFD Tax Research Platform, 2019.

K. Kaiser, C. Bredekamp, and R. M. Iglesias, “Sin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transforming public finance, health, and governance for more inclusive development,” *Directions in Development-Countries and Regions*, World Bank Group, 2016, p.17.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Philippines Tax Profile,” KPMG Asia Pacific Tax Centre, 2018.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by RA 10963,”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8.

_____, “Tax changes you need to know: Republic Act No. 10963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TRAIN),” Department of Financ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8.

_____, “2016 Guide to Philippines Taxes-Chapter III. VALUE ADDED TAX,”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 E. Reside, L. Burns, “Comprehensive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Principles, history and recommendations,” UPSE Discussion Paper, 2016.

- R. T. Dascil, "NIRC of the Philippines 5th Edition, Year 2018," REX Book Store, 2018.
- S. Guo, P. Karam, and J. Vlcek, "Decomposing the Inflation Dynamics in the Philippines," IMF Working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chool of Economics, "Comprehensive tax reform in the Philippines: Principles, history and recommendations," UPSE Discussion Paper, NO. 2016-10, 2016.

웹사이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
- 외교부, <http://www.mofa.go.kr>
- Bloomberg Law, <https://news.bloomberglaw.com>
- COURT of TAX APPEALS, <http://cta.judiciary.gov.ph>
- Department of Finance, <https://www.dof.gov.ph>
-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https://dilg.gov.ph>
- Houser Global Law School Program, <https://www.nyulawglobal.org>
- IBFD Tax Research Platform, <https://research.ibfd.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
- KPMG, <https://assets.kpmg>
-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http://www.neda.gov.ph>
- National Tax Research Center, <http://www.ntrc.gov.ph>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https://psa.gov.ph>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library.unimelb.edu.au>
- The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제2편 주요 세법]

해외문헌

- Congress of the Philippines, “Revised Corporation Code-REPUBLIC ACT No. 11232,” Manila Bulletin and Business Mirror, 2019.
- Deloitte, “International Tax: Philippines Highlights 2019,” 2019.
-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9,” EYGM Limited, 2019.
- Philippine Board of Investments, “Executive Order 226-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2018.
- Senate Tax Study & Research Offic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TRAIN) Law,” *TAXBITS*, Vol.9(48), 2018.
- Wolters Kluwer Editorial Staff “Global Master Tax & Business Guide,” CCH Incorporated and its affiliates-Wolters Kluwer, 2018, pp.765-777.

웹사이트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www.bsp.gov.ph>
-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
- DivinaLaw, <https://divinalaw.com>
- EY, <https://www.ey.com>
- KPMG, <https://home.kpmg>
- Official Gazette, <https://www.officialgazette.gov.ph>
- Philippine Board of Investments, <http://boi.gov.ph>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http://www.peza.gov.ph>
- PWC-Worldwide Tax Summaries, <https://taxsummaries.pwc.com>
- Republic of the Philippines-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Philippines, <http://www.sec.gov.ph>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해외문헌

D. G. Dimagiba, C. C. Jacinto, “Philippines-Manufacturing and Trading Incentives-Where Do We Stand Now in Asia?,” *Asia-Pacific Tax Bulletin*, Vol. 16, No. 2, 2010.
Philippines Board of Investments, “Executive Order 184-Promulgating the Tenth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2015.

웹사이트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신흥국의 세정연구 필리핀

발행	행	2019년 12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91-719-7	
